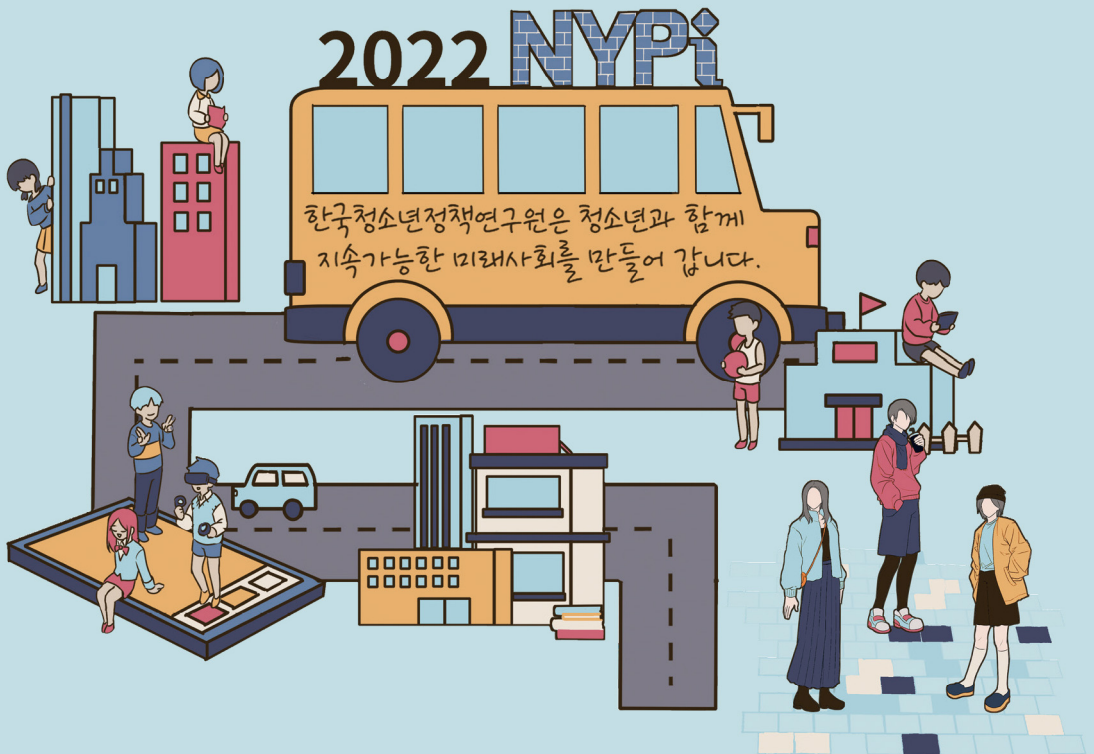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김영한 · 이유진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저 자 김영한 · 이유진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_구본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청소년사업 지원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욕구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 기반관련 「청소년 기본법」 및 지자체 조례에서 관련 내용 조사 검토 및 관련 이론 고찰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현황과 재정투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 실시 및 우수사례 발굴 분석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현황파악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
- 현행 청소년정책 추진기반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전략과 재정지원 정책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관련법과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연구내용 구성
- 226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인 인프라와 재정에 대한 현황 파악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기반인 인프라와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을 위해 우수사례 선정 및 분석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율이 70.6%로 높았으나, 군 지역은 미설치가 58.5%로 높게 나타났음.
-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는 미설치 지방자치단체가 79.4%로 높게 나타났음.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광역시·도 37.5%, 기초자치단체 시 47.2%, 기초자치단체 군 36.6%, 기초자치단체 구 39.0% 수준으로 낮은 편임.
- 청소년지도위원은 평균 57.9%로 높게 설치되어 있으나 광역시도의 경우 12.5%로 매우 낮았음.
-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운영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편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7.5%의 설립율을 보였음.
-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정책 재정 지원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예산 구성을 보면 조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대비 청소년예산은 1.9%, 청소년소관부서 예산 3.78% 수준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5.4%임을 볼 때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은 평균 64,744백만 원으로 총예산 대비 4.5%로 나타났음.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예산이 1.9%에 비교하여 볼 때 청소년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학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부지원 사업 예산은 청소년사업 총예산이 13,700백만 원 대비 여성가족부 2,132백만 원, 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 예산 1,784백만 원, 자체부담 9,887백만 원으로 나타났음.

주요 연구결과

-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평균 2백6십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음.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경우 설치 운영지자체 사례를 보면 평균3십8억1천만 원으로 운영 예산이 큰 편에 해당함. 청소년전담공무원 운영 예산은 평균1억9천7백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를 볼 때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임. 청소년지도위원 예산은 평균 2억4백만 원,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예산은 3천만 원 수준임.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은 11개 사례지역의 총액이 2022년기준 평균 3,598 백만 원 정도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52억인데 반하여 기초자치단체 구 지역의 경우 6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음.

● 추진체계의 정책 효과성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실효성 조사 결과는 광역시·도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 조성과 청소년육성 전담기공무원 확보가 정책실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 중요도 순위에서는 광역시·도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 조성과 청소년육성 전담기공무원 확보, 기초자치단체 시, 구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확보와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설립이 높았고, 기초자치단체 군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립과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확보,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확보 순으로 정책실효성이 높게 나타났음.
- 재정투입이 시급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에서는 광역시·도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와 청소년 육성기금에 재정투입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시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확보와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설립이, 기초자치단체 군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립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확보 순으로 나타났음.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인프라 강화방안
 -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담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적절한 예산 배정이 필요함.
 - 청소년정책이 점차 세분화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하고,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청소년육성 전담 기구를 전담할 필요성이 있음.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전문직위제의 도입과 청소년직렬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을 도입하여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 관련 시설의 경우 인건비·관리비·운영비 등이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이 필요함.
-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재정 강화방안
 - 매칭펀드 사업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매칭펀드비율을 조정하여 국비 부담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청소년 정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조에 학교 밖 청소년정책사업을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함.
-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
 -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정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효과가 더 클 수 있음.
 - 학교 교육 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 수립·지원과 청소년정책 예산의 확대,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함.
 -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더 이상 청소년교육만이 아닌 청소년활동 전반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22-기본05

I. 서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6
4. 연구방법	7
1) 문헌연구	7
2) 전문가자문	7
3) 사례조사	8
4) 설문조사	8
5) 청소년정책포럼	9
II. 이론적 배경	11
1. 이론적 고찰	13
2.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현황	18
1) 청소년기본법	19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2
3)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현황	23
3.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내용구성	25

III. 설문조사 결과분석 27

1. 조사개요	29
1) 조사목적	29
2) 조사설계	29
3) 조사대상	30
2. 결과분석	33
1)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성 현황	33
2) 청소년정책 재정 운영 현황	63
3)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 효과성	92

IV. 우수사례 결과분석 99

1. 조사개요	101
2. 결과분석	102
1) 대전광역시 사례분석	102
2) 경기도 사례분석	109
3) 경주시 사례분석	117
4) 완주군 사례분석	123
5) 부산진구 사례분석	131

V. 결론 및 제언 139

1. 결론	141
1) 연구개요	141
2) 설문조사 결과분석 요약	142
3) 우수사례 결과분석 요약	146
2. 정책제언	152
1)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인프라 강화방안	152
2)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재정 강화방안	158
3)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	161

참고문헌	165
부 록	169
1. 설문조사 질문지	171
2. 사례조사 질문지	181
국문초록	187
Abstract	189

표 목차

표 I-1. 설문조사 개요	8
표 II-1. 추진기반 설문내용 구성	26
표 III-1. 조사설계	29
표 III-2. 조사내용	30
표 III-3. 응답자 특성	31
표 III-4. 응답지역 특성	32
표 III-5.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여부	33
표 III-6.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유무	34
표 III-7.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위원 포함 명시 여부	35
표 III-8. 청소년육성위원회 인원 구성	36
표 III-9. 청소년육성위원회 연간 운영 횟수	37
표 III-10.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	38
표 III-11.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여부	39
표 III-12.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관련 조례 유무	40
표 III-1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유무	41
표 III-1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형태	42
표 III-15.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청소년전문자격증 보유 여부	43
표 III-16.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없는 경우 전담부서 유무	44
표 III-17.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여부	45
표 III-18.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관련 조례 유무	46
표 III-19. 청소년지도위원 연간 운영 횟수	47
표 III-20. 청소년지도위원의 주요 활동	48
표 III-21.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여부	49
표 III-22.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관련 조례 유무	50
표 III-23. 청소년단체협의회 연간 운영 횟수	51
표 III-24. 청소년단체협의회회의의 주요 활동	52
표 III-25. 비공식 운영 청소년단체협의회 유무	53
표 III-26.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여부	54
표 III-27.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관련 조례 유무	55

표 III-28. 청소년육성기금의 주 사용처	56
표 III-2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57
표 III-30.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운영현황	58
표 III-31. 청소년진로센터 운영현황	59
표 III-32. 성상담센터 운영현황	60
표 III-33. 청소년지원(운영)재단 운영현황	61
표 III-34. 청소년보호/자립 시설 운영현황	62
표 III-35. 기타 청소년 관련 조직 운영현황	63
표 III-36. 항목별 예산(평균)	64
표 III-37. 항목별 예산(청소년 천 명당 평균)	64
표 III-38. 항목별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64
표 III-39. 교육 예산(평균)	67
표 III-40. 교육 예산(청소년 천 명당 평균)	67
표 III-41. 교육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67
표 III-42.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예산(평균)	69
표 III-43.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69
표 III-44.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운영 예산(평균)	70
표 III-45.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운영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70
표 III-46.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운영 예산(평균)	72
표 III-47.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운영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72
표 III-48.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예산(평균)	73
표 III-49.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73
표 III-50.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예산(평균)	74
표 III-51.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74
표 III-52.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예산(평균)	76
표 III-53.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76
표 III-5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평균)	77
표 III-55.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운영 예산(평균)	78
표 III-56. 청소년진로센터 운영 예산(평균)	79
표 III-57. 성상담센터 운영 예산(평균)	80
표 III-58. 청소년지원(운영)재단 운영 예산(평균)	81
표 III-59. 청소년보호/자립시설 운영 예산(평균)	82
표 III-60. 기타 청소년 관련 조직 운영 예산(평균)	83
표 III-61.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받은 예산(평균)	84
표 III-62.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받은 예산(청소년 천 명당 평균)	84
표 III-63.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받은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85

표 Ⅲ-64.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유무	88
표 Ⅲ-65.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평균)	88
표 Ⅲ-66.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청소년 천 명당 평균)	88
표 Ⅲ-67.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경향 분석 (상관분석)	88
표 Ⅲ-68. 추진체계별 정책실효성(5점 평균)	92
표 Ⅲ-69. 추진체계별 정책중요도(1순위)	93
표 Ⅲ-70. 타 지자체와 협업 정책 추진 필요 여부	94
표 Ⅲ-71. 청소년단체 활동성	95
표 Ⅲ-72. 재정투입 시급한 추진체계(1순위)	96
표 Ⅲ-73. 지자체장의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 투입 의지	97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6
그림 Ⅲ-1.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여부	33
그림 Ⅲ-2.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유무	34
그림 Ⅲ-3.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위원 포함 명시 여부	35
그림 Ⅲ-4. 청소년육성위원회 인원 구성	36
그림 Ⅲ-5. 청소년육성위원회 연간 운영 횟수	37
그림 Ⅲ-6.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	38
그림 Ⅲ-7.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여부	39
그림 Ⅲ-8.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관련 조례 유무	40
그림 Ⅲ-9.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유무	41
그림 Ⅲ-10.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형태	42
그림 Ⅲ-11.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청소년전문자격증 보유 여부	43
그림 Ⅲ-12.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없는 경우 전담부서 유무	44
그림 Ⅲ-1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여부	45
그림 Ⅲ-14.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관련 조례 유무	46
그림 Ⅲ-15. 청소년지도위원 연간 운영 횟수	47
그림 Ⅲ-16. 청소년지도위원의 주요 활동	48
그림 Ⅲ-17.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여부	49
그림 Ⅲ-18.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관련 조례 유무	50
그림 Ⅲ-19. 청소년단체협의회 연간 운영 횟수	51
그림 Ⅲ-20. 청소년단체협의회 주요 활동	52
그림 Ⅲ-21. 비공식 운영 청소년단체협의회 유무	53
그림 Ⅲ-2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여부	54
그림 Ⅲ-23.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관련 조례 유무	55
그림 Ⅲ-24. 청소년육성기금의 주 사용처	56
그림 Ⅲ-2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57
그림 Ⅲ-26.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운영현황	58
그림 Ⅲ-27. 청소년진로센터 운영현황	59
그림 Ⅲ-28. 성상담센터 운영현황	60

그림 Ⅲ-29. 청소년지원(운영)재단 운영현황	61
그림 Ⅲ-30. 청소년보호/자립 시설 운영현황	62
그림 Ⅲ-31. 기타 청소년 관련 조직 운영현황	63
그림 Ⅲ-32. 항목별 예산	65
그림 Ⅲ-33. 청소년 인구 수 대비 항목별 예산	65
그림 Ⅲ-34. 재정자주도 대비 항목별 예산	66
그림 Ⅲ-35. 재정자립도 대비 항목별 예산	66
그림 Ⅲ-36. 교육 예산	68
그림 Ⅲ-37. 독립변수 대비 교육 예산	68
그림 Ⅲ-38.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예산	69
그림 Ⅲ-39. 독립변수 대비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예산	70
그림 Ⅲ-40.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운영 예산	71
그림 Ⅲ-41. 독립변수 대비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운영 예산	71
그림 Ⅲ-42.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운영 예산	72
그림 Ⅲ-43. 독립변수 대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운영 예산	72
그림 Ⅲ-44.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예산	73
그림 Ⅲ-45. 독립변수 대비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예산	74
그림 Ⅲ-46.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예산	75
그림 Ⅲ-47. 독립변수 대비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예산	75
그림 Ⅲ-48.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예산	76
그림 Ⅲ-4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	77
그림 Ⅲ-50.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운영 예산	78
그림 Ⅲ-51. 청소년진로센터 운영 예산	79
그림 Ⅲ-52. 성상담센터 운영 예산	80
그림 Ⅲ-53. 청소년지원(운영)재단 운영 예산	81
그림 Ⅲ-54. 청소년보호/자립시설 운영 예산	82
그림 Ⅲ-55. 기타 청소년 관련 조직 운영 예산	83
그림 Ⅲ-56.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받은 예산	85
그림 Ⅲ-57. 청소년 인구 수 대비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 예산	86
그림 Ⅲ-58. 재정자주도 대비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받은 예산	86
그림 Ⅲ-59. 재정자립도 대비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받은 예산	87
그림 Ⅲ-60.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유무	89
그림 Ⅲ-61.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89
그림 Ⅲ-62. 청소년 인구 수 대비 매칭펀드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90
그림 Ⅲ-63. 재정자주도 대비 매칭펀드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90
그림 Ⅲ-64. 재정자립도 대비 매칭펀드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91

그림 Ⅲ-65. 추진체계별 정책실효성(5점 평균)	92
그림 Ⅲ-66. 추진체계별 정책중요도(1순위)	93
그림 Ⅲ-67. 타 지자체와 협업 정책 추진 필요 여부	94
그림 Ⅲ-68. 청소년단체 활동성	95
그림 Ⅲ-69. 재정투입 시급한 추진체계(1순위)	96
그림 Ⅲ-70. 지자체장의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 투입 의지	97

○———— 제1장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추진하게 된다. 청소년정책에 있어서도 추진기반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법률과 제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수행된다.

정부차원에서는 위의 법률을 기반으로 5년 주기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정부의 청소년정책 추진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내용에 맞추어 비슷하게 추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지방청소년정책 추진 기반은 청소년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운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확보 및 배치,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운영,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운영, 지방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은 지방청소년정책 추진의 핵심 인프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국가정책의 총괄적 추진 방향은 큰 범위에서도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특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구소멸 지자체의 등장 등의 문제, 국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 등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체계 개선이나 재정지원 또는 분담금 배분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정책과 같은 인적자원 서비스 정책은 정책의 체감도 및 필요성 측면에서도 실효

1) 제1장은 김영한(선임연구위원)과 이유진(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 혜택을 직접 수행하고 혜택을 보게 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체감도 높은 청소년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변화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여 정책으로 연계해야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지자체 청소년정책의 추진 기반 확보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추진 기반을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 행정 조직,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을 주요 지표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528).

「청소년 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6개의 법률 조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할 기반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이 본격화되면서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비롯한 정책추진 기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005년 재정분권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영역인 사회복지비의 예산과 지출의 변화 현황과 이에 따른 영향력과 해당 요인 분석 등의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청소년 청소년정책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정책연구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일부 해당 연구 모두가 청소년정책예산의 결정요인 분석부분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정분야에서 청소년정책연구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기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된 사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며,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년~2022년)’에서도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과제의 정책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괄적 정책추진이 아닌, 지역 중심의 정책 추진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재정과 인프라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사항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추진의 가장 큰 애로점 중 하나가 바로 예산확보 문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정책예산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지방청소년육성기금 설치 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반면에 최근

의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경비 지원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있다.

이는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영역확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나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학교 교육에 대한 보조활동이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 범위와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중 하나인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한 재정확보 분야에서 교육경비의 활용성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청소년사업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인 인프라 구축 현황과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운영 효율화를 제시함으로써 지방청소년정책의 추진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새롭게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수요자 체감도 높은 지역청소년정책 실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청소년사업 지원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욕구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의 목적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현황을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하여 수요자 체감도 높은 지역청소년정책 실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한다.

1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정책 추진기반에 관련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연구내용을 구성한다.

2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기반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정 및 인프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3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기반별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설문결과를 분석한다.

4단계에서는 조사결과와 우수사례 분석 결과를 통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프라 구축 및 재정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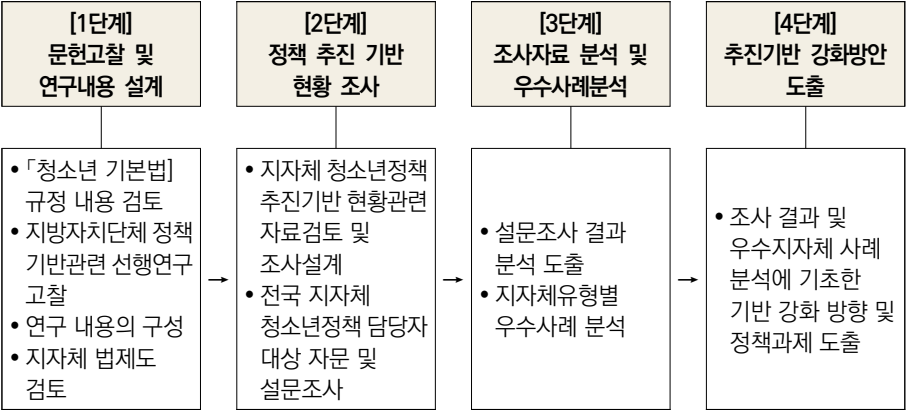


그림 III-1.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지역청소년정책 실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선정하였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 기반관련 「청소년 기본법」규정 조항 내용 및 지자체 조례를 조사 검토한다.

둘째는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설치 및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넷째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추진기반 조성 및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한다.

다섯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현황과 재정투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여섯째는 위의 연구수행을 통하여 현 청소년정책 추진기반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전략과 재정지원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를 통해 「청소년 기본법」 등에 규정된 시·도 및 시·군·구 정책추진 기반 사항으로 관련 법률 6개 조항(제1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41조, 제56조) 실질적 정책 과제를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추진관련 조례 및 인프라 연계 재정 측면에서의 문헌자료 검토를 통하여 기존 연구의 결과 및 한계에 관해 논의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연구내용의 설계 및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내용 및 방법 구성하고, 연구 추진체계 및 단계별 이행 내용을 구성하였다.

2) 전문가자문

전문가 자문은 연구설계에 대한 검토, 설문조사내용에 대한 검토, 정책과제 개발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해 학계, 현장,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쟁점 사항과 주요 사안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현황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전국 243개 광역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의 추진 기반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담당들로 광역시·도단위, 시단위, 군단위로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와 재정 지원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점과 설문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지방자치 분야에 대한 행정 및 연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추진체계와 지방재정 지원 문제를 연계한 최초의 연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고, 실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결과 조사 분석에서도 전수조사를 전제하기 때문에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안을 제시토록 하였다.

3) 사례조사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 추진 체계와 관련하여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 대한 면접 및 서면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청소년 전담공무원 구성 운영, 청소년정책전담조직 구성운영,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운영, 청소년 단체협의회 구성 운영,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6개 항목에 대한 사례와 재정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광역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 청소년전담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추진 기반 관련 사항 및 지역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설치 및 운영 현황 조사를 웹기반 또는 모바일 조사로 추진하였다.

조사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 응답율은 55.7%로 1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응답하였다.

표 I -1.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2022년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243개
표본 수	재정자립이 이루어지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표집방법	전수조사
조사시기	9월 1일 ~ 9월 30일
조사자	전문조사업체 NRS

5)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와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법·제도 분야의 전문가 1명과 교육경비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가 1명을 초청하여 법제도 분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와 교육경비의 학교 밖 청소년정책사업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제47회 청소년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일시 : 9월 21일(수) 오후 2시~오후 4시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회의실

주제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개최방식 : 오프라인 및 줌을 통한 회의참석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이론적 고찰
- 2.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 3.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내용구성

1. 이론적 고찰

이 연구는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먼저 추진기반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 정부를 이르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며, 지자체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이때 치르는 선거를 지방 선거라고 칭한다.”³⁾ 즉, 지방자치단체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의 자치 정부를 말한다. 현재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가 있다. 일부 구청의 경우는 구청장을 선출하지 않고 시에서 임명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방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청소년정책은 넓은 의미로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국가정책으로서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중앙정부 각 부처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보면,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안전과 보호, 청소년의 교육, 청소년과 노동,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등 대체로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된다”(여성가족부, 2020: 2).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토대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 제2장은 김영한(선임연구위원)과 이유진(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3) 위키백과. “지방 정부”.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B%B0%A9_%EC%A0%95%EB%B6%80에서 2022년 5월 31일 인출.

(2018~2022)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14)

청소년 정책의 기본은 청소년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책집행과 수행의 핵심수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정책의 수행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을 어떻게 투입하는가에 따라 청소년정책 서비스의 양과 질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0년 기준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을 보면 총 2,288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22억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266억원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0: 583-584).

이는 중앙정부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과제를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내용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간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과 지원에 따라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할 지역청소년의 역량개발과 서비스 이용에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로의 정책집행권한인 지방분권의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화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재정분권, 행정분권, 정치분권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재정분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핵심사항이다(김지경, 정윤미, 2013b: 124).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재정 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해 553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하고 예산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국고보조 사업,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 결과 청소년사업은 사회복지비 예산에 포함되었다(김지경, 정윤미, 2013a: 228-229).

이러한 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이에 따른 재정분권화의 지속적인 추진은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보다 지역중심의 특성을 살린 정책을 마련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야의 자주도와 자립도 그리고 청소년분야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에 따른 지자체간 차이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균형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받아야할 청소년들이 교육부분에서 부모의 역량에 따른 교육차별을 없애기 위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보조를 제공하고, EBS교육방송 실시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 받는 것과 같이 청소년분야에 있어서도 균형적 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예산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

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재정 조정제도⁴⁾를 통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시행 중이다(윤태섭, 2015: 3-17).

또한 지방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및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분석, 재정평가, 재정 진단 등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1994년 12월 지방재정법으로 도입하였고, 1999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여러 재정 운영 체계를 통일된 기준으로 정립하여 지자체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원구환, 2006: 287-302).

분석지표로는 세입관련지표, 세출관련지표, 세입·세출 관련지표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재정자립도,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등과 투자비 비중, 경상비 비중, 의회비 비중, 예비비 확보율,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교 지표 등이 있다(원구환, 2006: 287-302).

이러한 지방분권화와 재정분권화와 관련하여 청소년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나 재정 결정 요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김지경과 정윤미(2013b: 123-147) 연구에 따르면 재정분권의 개념, 재정분권 수준의 측정, 청소년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 요인 관련 선행연구고찰하고, 16개 시도 청소년복지예산 및 일반 현황, 재정분권 추이 분석, 재정분권 수준이 청소년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언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수준에 따라 청소년 복지 예산의 변화에 대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6개광역시·도의 본예산, 일반회계자료 및 시계열데이터인 청소년복지예산 자료를 GLS hetero모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평균 4년간 청소년복지예산규모는 광역시가 약 146억원으로, 광역도 약106억원보다 40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입분권에서는 재정자율성분은 광역시 0.61, 광역도 0.30으로 광역시가 광역도보다 두 배 정도 높은 편이며, 재정중요성 지표에 있어서도 광역시 지역(0.015)과 광역도 지역(0.013)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4)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가-지방, 광역-기초 간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틀로 운용되고 있다

재정분권 지수에서는 광역시의 경우 0.092, 광역도의 경우 0.063으로 광역시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재정분권수준이 청소년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분권수준을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 즉 재정자율성, 재정중요성, 재정분권지수 모두 청소년복지예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예산의 규모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분야 최초로 지방분권에 따른 청소년 정책 추진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함으로써 실제 청소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집행부분을 제외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분석 자료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재정자료에 기반 함으로써 청소년정책 분야별 재정투입 등 세부적인 효과나 영향적인 측면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김지경과 정윤미(2013a: 227-256)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16개 광역시·도 본예산, 일반회계 자료 수 집 및 시계열 데이터 (2009년~2012년)를 활용하여 실증분석(Newey-West 추정 모형)을 시도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복지예산의 개념 및 범주, 청소년복지예산 결정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하고,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예산의 일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복지예산 총액, 1인당 예산액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예산은 2009년~2012년까지 4년간 약 19억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은 5천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복지예산 결정요인에서는 전체 인구수가 많고, 지방의 재정적인 능력이 높을수록 청소년복지예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인 재정자주도가 청소년복지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반면에 국비비율은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예산 결정 변인 중 재정자주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청소년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재정 집행 사례를 구분하고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서 재정의 변화과정과 해당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 반면에 해당 연구결과의 광역시·도에 한한 분석으로 현장중심의 기초자치단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정책의 서비스 핵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연구의 제한점은 해당연구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청소년분야에서 정책적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다. 특히 재정의 한계성은 청소년 인구수에 따라 해당지역의 부담금액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이는 해당 지역 인구수를 줄이면 해결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또한 해당지역의 자수도 높고 낮음은 청소년분야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추진수단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인다.

박성문(2021: 175-208)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제반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간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의 자주재원에서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수입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격차를 완화하는 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재정여건을 진단하고 재정수요 측정단위를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기준의 지표를 다양화함으로써 재정수요에 반응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의 한계에 따른 배분 문제는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문제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 능력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의 지표 조정의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지표를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적용여부와 해석기준으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측정항목의 타당성 측면의 다양화기준을 청소년부분에서 수용가능 할 것이며, 이 경우 광역시·도의 지방양여금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에 있어서 보고 나온 정책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볼 있다. 특히 청소년분야의 재정수요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타당화 함으로써 가칭 '청소년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측정단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김학수(2021: 1-8)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관련한 연구에서 재정여력을 확충하여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의 구체적 방안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역시 넓은 의미로 보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지만, 실제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좁은 의미의 청소년정책으로 제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현황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과 관련한 정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청소년 기본법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넓은 의미의 추진 기반은 추진기반은 통상적으로 추진 인프라를 의미한다.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는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단체,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청소년정책 재정기반”(여성가족부, 2020: 52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추진 인프라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상 재정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제에서 재정을 다른 인프라와 구별하여 표기하였다.

추진기반과 유사한 개념으로 추진체계가 있다. 추진체계는 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해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엄밀하게 보면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혼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최인재 외 3인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킹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성장지원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최인재, 이윤주, 송민경, 조윤정, 2019: 368).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재정 및 인프라가 강력하게 구축되어야만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안전과 보호, 청소년의 교육, 청소년과 노동,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예방 등 청소년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개념 정의를 토대로 다음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과 관련한 정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과 관련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지방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등 6개 조문에 걸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추진 기반은 청소년기본법과 기본계획 전반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로 제한하였다.

1) 청소년기본법

(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서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국 6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만을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한 곳도 있고 청소년육성 전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매우 적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2)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법 제26조)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도이다. 관계 행정기관과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협조해야 한다.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3)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서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4)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도 될 수 없다. 청소년지도위원이 된 후에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고, 청소년육성 전반에 관해 규정하는 조례에서 청소년지도위원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 5. 19.>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5)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기본법 제41조에서는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6)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청소년기본법 제56조에서는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두 곳이 있고, 청소년육성 전반에 관해 규정한 조례에서 육성기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년~2022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와 관련되는 내용은 중점과제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중에서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이 과제가 제안된 배경을 “지역의 사회경제 여건, 단체장의 청소년정책 관심도에 따라 지역 격차 발생,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배치 확대 및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업무의 전문성 제고 필요(관계부처합동, 2018: 73)”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다음 세 가지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이하 관계부처합동, 2018: 78-79).

(1)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 확산

청소년정책이 점차 늘어나고 전문화되어 가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아동·청소년정책 전담조직을 설치 확대해야 한다. 서울시 청소년정책담당관 및 송파구 청소년정책과를 사례로 들고 있다. 또한 2년 이상 청소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배치로 청소년정책의 체계적·효과적 수행이 필요하다.

(2)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던 2017년 6월 기준으로는 168개 지자체에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모든 지자체로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3) 지자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구체적·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 간 청소년정책 격차를 해소하고, 매년 중앙부처·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정책 컨설팅 제공 및 우수지자체 시상 등을 실시한다.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청소년정책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지자체별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등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청소년 친화적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한다.

3)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현황

일반적으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구성요소로는 ‘청소년정책 관련 위원회, 청소년 업무 담당 행정조직,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유주영, 2021: 4),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역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틀 속에서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이하 유주영, 2021: 4-28 참조).

(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의 활동과 복지, 보호를 위해 지원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에 청소년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은 17개 시도 중에서 자문과 심의 기구의 역할을 겸하는 곳이 4곳이고, 심의기구로만 운영되는 곳은 7곳, 자문기구로만 운영되는 곳은 6곳이다(유주영, 2021: 5).

전국 청소년육성위원회 총 인원은 2,022명으로 당연직이 599명, 위촉직이 1,423명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만 9세~24세 청소년 인구 만 명당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수 평균은 2.39명인데, 위원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5.75), 전라남도(5.24), 경상북도(4.59), 울산광역시(3.94), 부산광역시(3.80)의 순이다. 가장 적은 곳은 대전광역시로 0.57에 불과하다.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마련한 곳은 전국에 35개 지자체가 있다. 하지만 위촉된 청소년의 수는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39명에 불과하다(유주영, 2021: 10-13).

(2)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청소년 업무 담당자, 청소년 업무 공무원, 청소년 업무 겸직 공무원,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 업무 담당자는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직제 상 정원을 의미하는 청소년 업무 공무원과 그 외의 공무원 등의 추가인력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업무 공무원은 청소년 이외의 아동이나 청년 등 업무와 겸직하는 자도 있고 청소년 업무 공무원 중 일부는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또는 일정기간(2년) 이상 청소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유주영, 2021: 6).

2021년 청소년 업무 담당자는 총 1,591명인데, 직제상 공무원은 1,001명이고, 공무원 등 추가인원은 589명이다. 이 중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은 통 281명으로 2020년 288명이었던 것에 비해 2.4% 감소했다.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의 비율은 전국 평균 17.66%인데,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76.19%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로 5.83%에 그치고 있다(유주영, 2021: 16-21).

(3)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사업 등의 활동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중고 대학의 학생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등에서 청소년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유주영, 2021: 7-8).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양성된 청소년지도사의 수는 37,535명이고, 청소년상담사는 22,780명이다.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인원수는 2021년 기준 18,622명으로 청소년 인구 만 명당 21.97명이다(유주영, 2021: 23-25).

(4)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청소년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17개 시도 중에 7곳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유주영, 2021: 8-9).

3.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내용구성

위의 이론적 논의와 법제도적 검토를 통하여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기반과 관련하여 조사내용은 크게 인프라 분야와 재정분야로 구성하였다. 인프라 분야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고 운영해야할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재정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분야 예산 구성 내용과 추진체계 예산 구성내용, 지자체 자체예산 구성내용과 상위정부기관의 매칭펀드 예산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 운영과 재정 운영 측면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셋째는 정책효율성부분으로 추진체계의 효과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정책 실효성 파악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배경변수로 행정구역별과 직위, 해당업무 담당기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산정공식 : $(\text{자체수입} \div \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재정자주도란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산정공식 : $((\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 \div \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5$

5)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https://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year=2022&ix_code=A110&reOrg=after에서 2022년 10월 17일 인출.

위의 두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역량을 제시하는 것으로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한 투입 여부나 규모를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표 II-1. 추진기반 설문내용 구성

구분	연구내용	세부내용
추진체계 인프라 영역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유무, 설치조례, 구성현황, 운영현황, 권한(자문, 심의, 의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정규채용, 계약채용, 배치지도사이용, 전담부서(과,계,팀,담당자 지정), 없음, 전담공무원의 청소년전문자격소지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설치유무, 설치조례, 설치기관명(재단, 별도조직운영)
	청소년지도위원	조례유무, 구성현황, 운영현황, 주요업무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치조례, 미설치, 비공식협의체 구성 운영, 운영현황, 주요업무내용
	지방청소년육성기금	설치조례, 운영유무, 조성금액
	지자체 자체추진 기반	제도적 기반(기타조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청소년진로센터, 성상담센터, 기타 청소년관련 운영조직
재정 역역	예산구성비	세출예산/사회복지예산/청소년예산/청소년소관부서예산
	지자체인프라 예산	청소년시설지원 예산,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지원예산, 청소년 관련 조직(센터 등) 지원 예산
	추진체계예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예산,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예산, 전담기구지원예산,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예산,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조성 예산
	청소년매칭펀드사업예산	여성가족부지원 예산-광역시·도지원예산-지자체 분담예산 매칭펀드사업 중 인프라지원 예산, 사업 지원 예산, 운영지원 예산
정책 효율성	추진체계	추진체계 중 실효성, 추진체계 중 우선 순위, 추진체계 중 타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
	재정분야	재정투입우선순위 / 지자체장의 예산 투입 의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배경변수		행정구역 / 직업 / 업무수행기간 / 지자체 청소년인구수



제3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 1. 조사개요
- 2. 결과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현황을 파악하고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2) 조사설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① 담당자의 이메일 정보를 수집, ② 이메일로 웹 설문 발송, ③ 미응답자 대상 독려 전화 실시의 총 3단계의 절차를 바탕으로,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총 1달 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126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회수율은 55.7%이다.

표 III-1.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 재정자립지방자치단체 226개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전화 독려)
조사기간	2022.09.01.~2022.09.30.
응답표본	126개

6) 제3장은 김영한(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표 III-2. 조사내용

구분	내용
응답자 배경 변수	소속현황, 청소년담당 업무경력, 청소년 인구 수,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인프라 변수	A1.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여부, 설치조례, 구성현황, 운영현황, 역할 A2.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여부, 설치조례, 설치기관 A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유무, 소속부서, 채용형태, 자격증 보유 여부, 전담부서 유무 A4.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유무, 위촉 조례, 구성현황, 운영현황, 주요 활동 A5.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여부, 설립조례, 운영현황, 주요 활동, 비공식 운영 여부 A6.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여부, 조성조례, 주 사용처 A7.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현황
청소년정책 재정 운영 변수	B1. 세출예산, 사회복지예산, 청소년 예산, 청소년 소관부서 예산 B2. 교육 예산 B3. 추진체계별 운영예산 B4. 청소년 관련 시설별 운영지원 예산 B5. 청소년 사업 지원 예산(여성가족부 지원, 광역시·도 지원, 기초자치단체 부담) B6. 매칭펀드 지원 예산(인프라구축, 사업 지원, 운영 지원)
추진 체계의 정책 효과성 변수	C1. 정책 실효성, 정책 중요도(우선순위),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필요 여부 C2. 청소년단체 활동성 C3. 재정투입 우선순위 C4.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투입 의지 C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바라는 점

분석 방법으로 기술통계를 통한 백분율과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을 하였고,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설문지와 조사과정
에 대해 IRB 심의가를 받았다.

3) 조사대상

(1) 모집단

본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모집단으로 하며 조사시점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전담부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
였다.

7) 본 조사는 2022년 8월 17일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IRB 승인번호 : 202208-HR-고유-017) 통보를
받음.

(2) 응답자 및 응답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사례 수는 126명이었으며 대상자에 대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의 <표 III-3>, <표 III-4>와 같다.

전체 지역 중 광역시·도는 8명(6.3%)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시는 36명(28.6%), 기초자치단체 군은 41명(32.5%), 기초자치단체 구는 41명(32.5%)으로 기초자치단체 군, 구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담당 업무경력의 경우 1년 미만 15명(11.9%), 1년 이상 3년 미만 88명(69.8%), 3년 이상 10년 미만 11명(8.7%), 10년 이상 12명(9.5%)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청소년 인구 수 평균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569,579명, 기초자치단체 시 52,468명, 기초자치단체 군 5,823명, 기초자치단체 구 45,142명으로 광역시·도의 청소년 인구 수가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군이 가장 적었다. 지역별 재정자립도는 광역시·도 66.0%, 기초자치단체 시 58.9%, 기초자치단체 군 60.7%, 기초자치단체 구 39.6%로 광역시·도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 구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 재정자립도의 경우 광역시·도 37.0%, 기초자치단체 시 23.6%, 기초자치단체 군 10.7%, 기초자치단체 21.7%로 광역시·도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 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126	100.0
지역	광역시·도	8	6.3
	기초자치단체 시	36	28.6
	기초자치단체 군	41	32.5
	기초자치단체 구	41	32.5
청소년담당 업무경력	1년 미만	15	11.9
	1년 이상 3년 미만	88	69.8
	3년 이상 10년 미만	11	8.7
	10년 이상	12	9.5

표 III-4. 응답지역 특성

구분		청소년 인구 수(명)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전체		67,738	53.7	19.6
지역	광역시·도	569,579	66.0	37.0
	기초자치단체 시	52,468	58.9	23.6
	기초자치단체 군	5,823	60.7	10.7
	기초자치단체 구	45,142	39.6	21.7

2. 결과분석

1)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성 현황

(1) 청소년육성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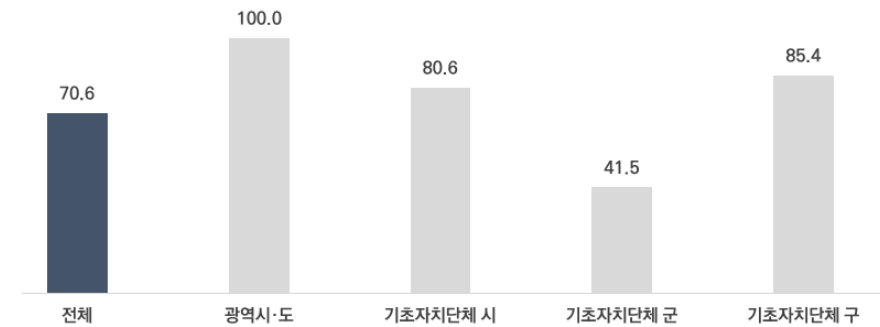
①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여부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5>와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100.0%, 기초자치단체 시는 80.6%, 기초자치단체 군은 41.5%, 기초자치단체 구는 85.4%가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는 위원회 구축이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위원회 구축이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표 III-5.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설치	미설치
전체		126	70.6	29.4
지역	광역시·도	8	100.0	0.0
	기초자치단체 시	36	80.6	19.4
	기초자치단체 군	41	41.5	58.5
	기초자치단체 구	41	85.4	14.6



* 주: '설치'의 비중임(단위: %)

그림 III-1.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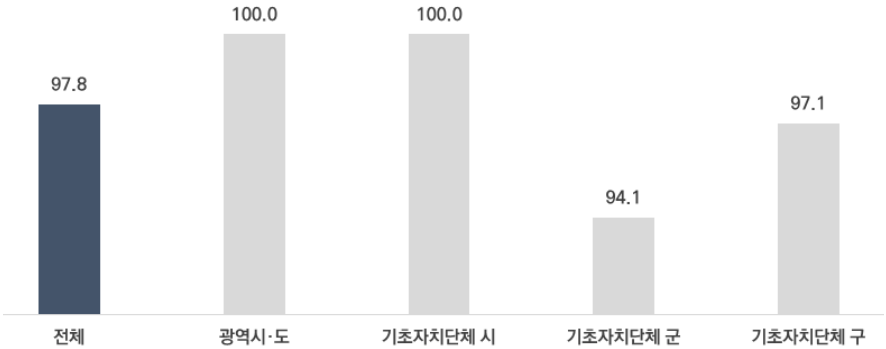
②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유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치 관련 조례가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6>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시는 100.0%, 기초자치단체 군은 94.1%, 기초자치단체 구는 97.1%가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위원회가 설치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조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6.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유무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음	없음
전체		89	97.8	2.2
지역	광역시·도	8	100.0	0.0
	기초자치단체 시	29	100.0	0.0
	기초자치단체 군	17	94.1	5.9
	기초자치단체 구	35	97.1	2.9



* 주: '있음'의 비중임(단위: %)

그림 Ⅲ-2.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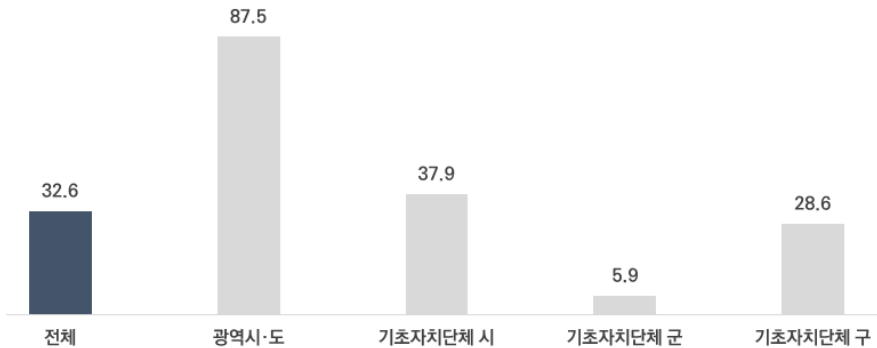
③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시 청소년 위원 포함 명시 여부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원 구성시 청소년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7>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87.5% 기초자치단체 시는 37.9%, 기초자치단체 군은 5.9%, 기초자치단체 구는 28.6%가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시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라는 항목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내용에 청소년의 관여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7.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위원 포함 명시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음	없음
전체		89	32.6	67.4
지역	광역시·도	8	87.5	12.5
	기초자치단체 시	29	37.9	62.1
	기초자치단체 군	17	5.9	94.1
	기초자치단체 구	35	28.6	71.4



* 주: '있음'의 비중임(단위: %)

그림 III-3.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위원 포함 명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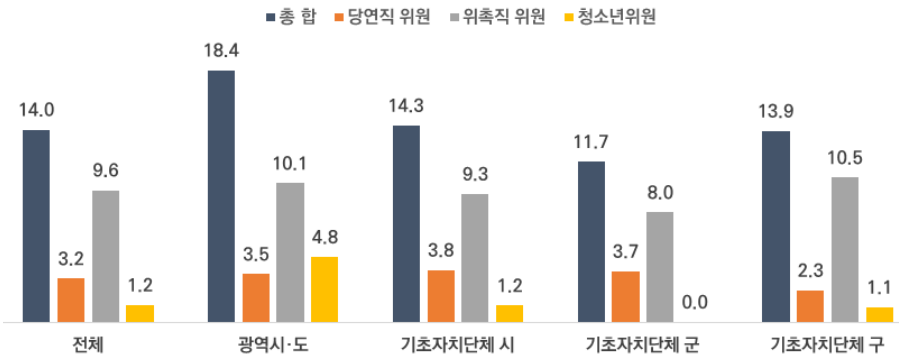
④ 청소년육성위원회 인원 구성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인원 구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8>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위원 수가 1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지역에서 위촉직 위원 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광역시·도에서는 청소년 위원이 비교적 많았다.

표 III-8. 청소년육성위원회 인원 구성

(단위: 명)

구분		사례 수(명)	총 합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청소년 위원
전체		89	14.0	3.2	9.6	1.2
지역	광역시·도	8	18.4	3.5	10.1	4.8
	기초자치단체 시	29	14.3	3.8	9.3	1.2
	기초자치단체 군	17	11.7	3.7	8.0	0.0
	기초자치단체 구	35	13.9	2.3	10.5	1.1



* 주: 각 지역 구분 내 평균 값임(단위: 명)

그림 III-4. 청소년육성위원회 인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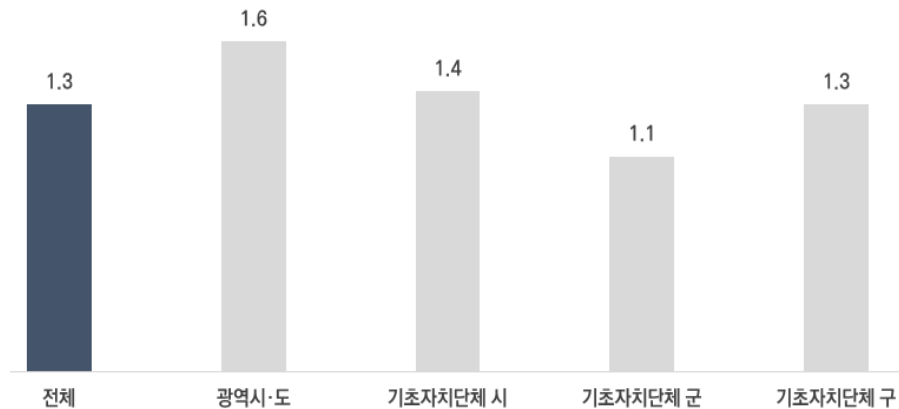
⑤ 청소년육성위원회 연간 운영 횟수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연간 운영 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9>와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운영 횟수는 1.6회, 기초자치단체 시는 1.4회, 기초자치단체 군은 1.1회, 기초자치단체 구는 1.3회로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의 운영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업계획 수립시 심의단계에서 1번, 그리고 결산보고시 1번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사업의 집행 단계에 대해 위원회의 관여가 전혀 없다고 여겨진다.

표 III-9. 청소년육성위원회 연간 운영 횟수

(단위: 회)

구분		사례 수(명)	연간 운영 횟수(평균)
전체		89	1.3
지역	광역시·도	8	1.6
	기초자치단체 시	29	1.4
	기초자치단체 군	17	1.1
	기초자치단체 구	35	1.3



* 주: 각 지역 구분 내 평균 값임(단위: 회)

그림 III-5. 청소년육성위원회 연간 운영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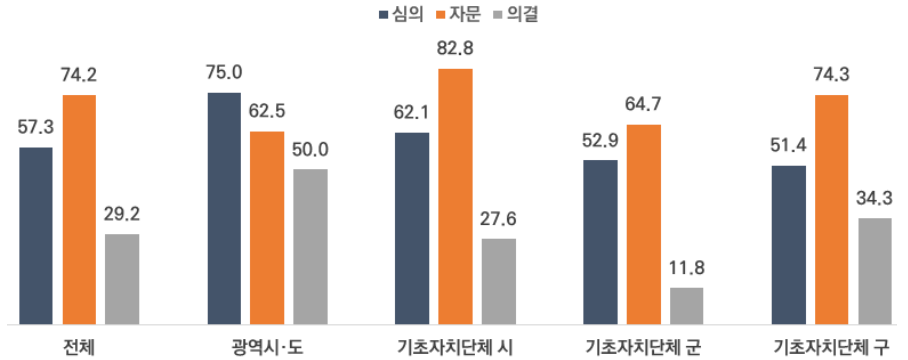
⑥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10>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심의 역할이 가장 많았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자문 역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군에서는 의결 역할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심의	자문	의결
전체		89	57.3	74.2	29.2
지역	광역시·도	8	75.0	62.5	50.0
	기초자치단체 시	29	62.1	82.8	27.6
	기초자치단체 군	17	52.9	64.7	11.8
	기초자치단체 구	35	51.4	74.3	34.3



* 주: 복수응답 문항임

그림 III-6.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

(2)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①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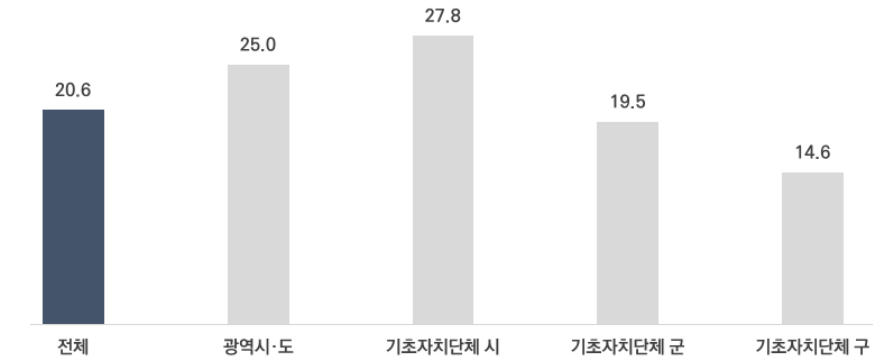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육성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11>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25.0%, 기초자치단체 시는 27.8%, 기초자치단체 군은 19.5%, 기초자치단체 구는 14.6%가 청소년육성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담기구가 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주로 ‘청소년팀’에, 재단 등 외부 기관에 설치된 경우는 ‘청소년재단’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기구의 설치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수준의 설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적극성이 매우 낮고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낮게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1.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설치	미설치
전체		126	20.6	79.4
지역	광역시·도	8	25.0	75.0
	기초자치단체 시	36	27.8	72.2
	기초자치단체 군	41	19.5	80.5
	기초자치단체 구	41	14.6	85.4



* 주: '설치'의 비중임(단위: %)

그림 Ⅲ-7.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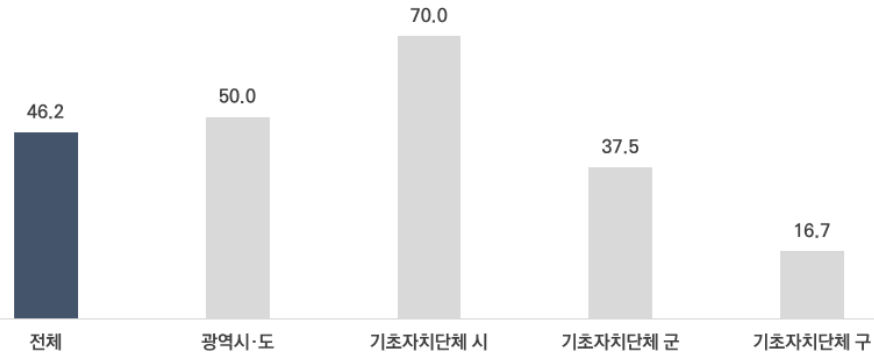
②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관련 조례 유무

청소년육성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치 관련 조례가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12>와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50.0%, 기초자치단체 시는 70.0%, 기초자치단체 군은 37.5%, 기초자치단체 구는 16.7%가 설치 관련 조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2.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관련 조례 유무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음	없음
전체		26	46.2	53.8
지역	광역시·도	2	50.0	50.0
	기초자치단체 시	10	70.0	30.0
	기초자치단체 군	8	37.5	62.5
	기초자치단체 구	6	16.7	83.3



* 주: '있음'의 비중임(단위: %)

그림 Ⅲ-8.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관련 조례 유무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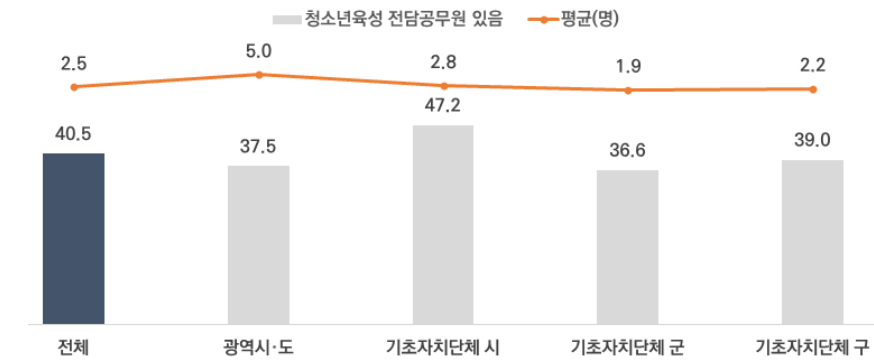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13>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37.5%, 기초자치단체 시는 47.2%, 기초자치단체 군은 36.6%, 기초자치단체 구는 39.0%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광역시·도가 평균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군이 1.9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매우 소극적이며, 현재 여성가족부의 배치지도사 활용 정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배치지도사도 1:1 매칭펀드 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한 정책이다.

표 Ⅲ-1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유무

(단위: %, 명)

구분		사례 수(명)	있음	없음	평균
전체		126	40.5	59.5	2.5
지역	광역시·도	8	37.5	62.5	5.0
	기초자치단체 시	36	47.2	52.8	2.8
	기초자치단체 군	41	36.6	63.4	1.9
	기초자치단체 구	41	39.0	61.0	2.2



* 주: '있음'의 비중임(단위: %)

그림 Ⅲ-9.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유무

②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형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채용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14>와 같다. 모든 지역에서 공무원(직제상 정원)이 가장 많은 가운데,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시에서는 계약직(공무직 등)도 비교적 많았다.

표 Ⅲ-1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형태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공무원 (직제상 정원)	계약직 (공무직 등)	배치지도사
전체		51	84.3	13.7	2.0
지역	광역시·도	3	66.7	33.3	0.0
	기초자치단체 시	17	70.6	23.5	5.9
	기초자치단체 군	15	93.3	6.7	0.0
	기초자치단체 구	16	93.8	6.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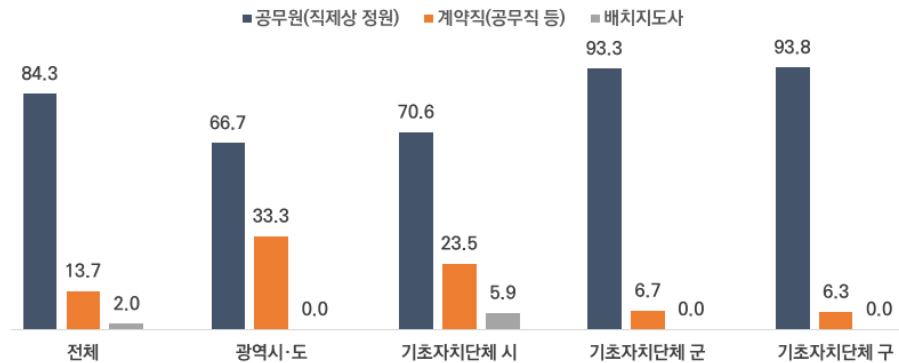


그림 Ⅲ-10.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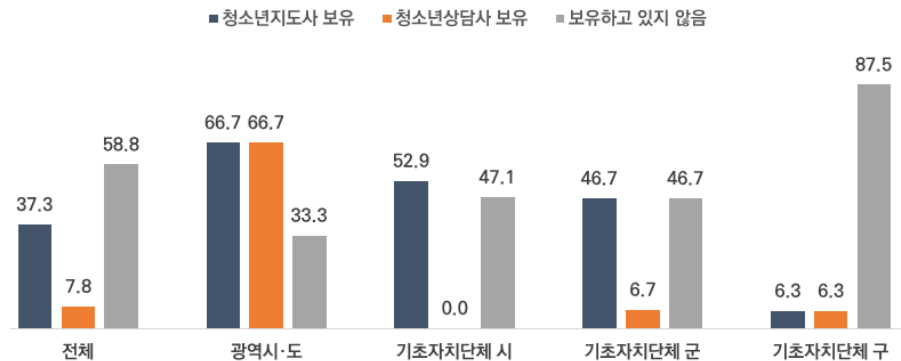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청소년전문자격증 보유 여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청소년전문자격증 보유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15>와 같다.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시, 군은 청소년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담공무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담공무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초자치단체 구는 대부분의 전담공무원이 청소년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초자치단체가 청소년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을 부서에 발령하는 순환보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청소년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5.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청소년전문자격증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청소년지도사 보유	청소년상담사 보유	보유하고 있지 않음
전체		51	37.3	7.8	58.8
지역	광역시·도	3	66.7	66.7	33.3
	기초자치단체 시	17	52.9	0.0	47.1
	기초자치단체 군	15	46.7	6.7	46.7
	기초자치단체 구	16	6.3	6.3	87.5



* 주: '복수응답' 문항임

그림 III-11.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청소년전문자격증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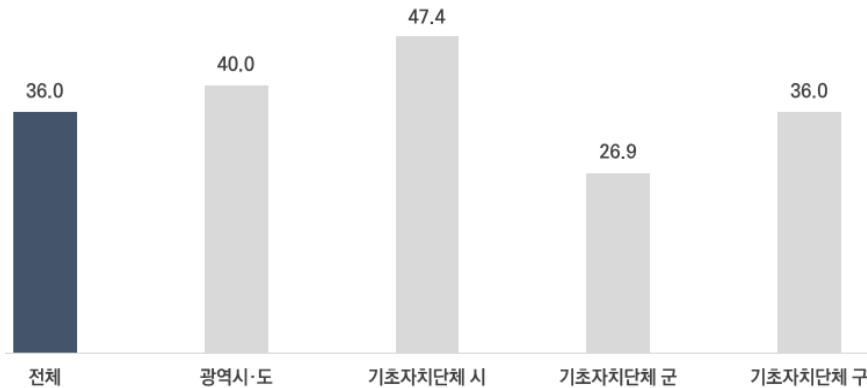
④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없는 경우 청소년정책 전담부서 유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없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전담부서가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16>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40.0%, 기초자치단체 시는 47.4%, 기초자치단체 군은 26.9%, 기초자치단체 구는 36.0%가 청소년정책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 청소년담당부서가 없는 비율이 50%가 넘고, 특히 군 단위는 73%가 청소년 담당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에서 청소년정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표 III-16.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없는 경우 전담부서 유무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음	없음
전체		75	36.0	64.0
지역	광역시·도	5	40.0	60.0
	기초자치단체 시	19	47.4	52.6
	기초자치단체 군	26	26.9	73.1
	기초자치단체 구	25	36.0	64.0



* 주: '있음'의 비중임(단위: %)

그림 III-12.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없는 경우 전담부서 유무

(4) 청소년지도위원

①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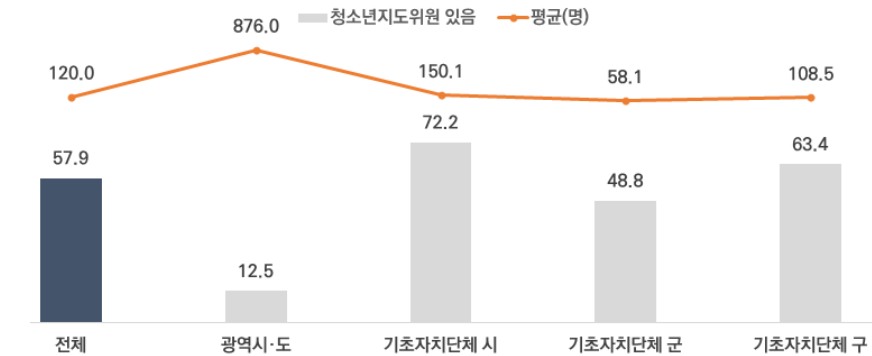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17>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12.5%, 기초자치단체 시는 72.2%, 기초자치단체 군은 48.8%, 기초자치단체 구는 63.4%가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지도위원은 광역시·도가 평균 87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군이 58.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민의 참여활동 증대 등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실제적인 운영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실정이다.

표 III-17.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여부

(단위: %, 명)

구분		사례 수(명)	있음	없음	평균
전체		126	57.9	42.1	120.0
지역	광역시·도	8	12.5	87.5	876.0
	기초자치단체 시	36	72.2	27.8	150.1
	기초자치단체 군	41	48.8	51.2	58.1
	기초자치단체 구	41	63.4	36.6	108.5



* 주: '있음'의 비중임(단위: %)

그림 III-1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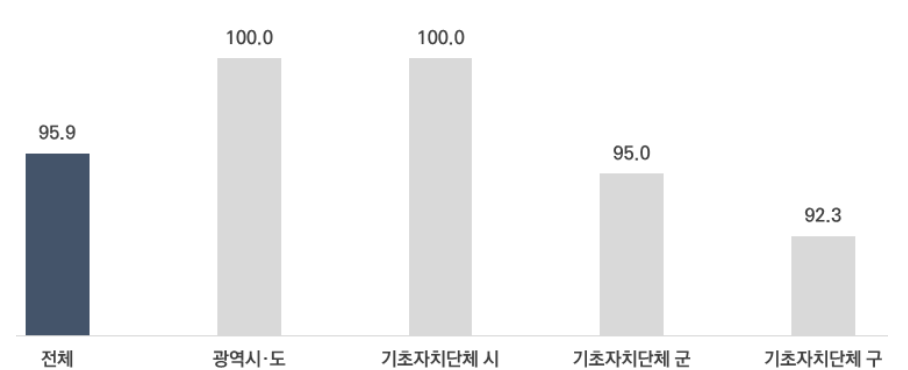
②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관련 조례 유무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촉 관련 조례가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18>과 같다.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시는 100.0%, 기초자치단체 군은 95.0%, 기초자치단체 구는 92.3%가 위촉 관련 조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해당 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 거의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III-18.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관련 조례 유무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음	없음
전체		73	95.9	4.1
지역	광역시·도	1	100.0	0.0
	기초자치단체 시	26	100.0	0.0
	기초자치단체 군	20	95.0	5.0
	기초자치단체 구	26	92.3	7.7



* 주: '있음'의 비중임(단위: %)

그림 III-14.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관련 조례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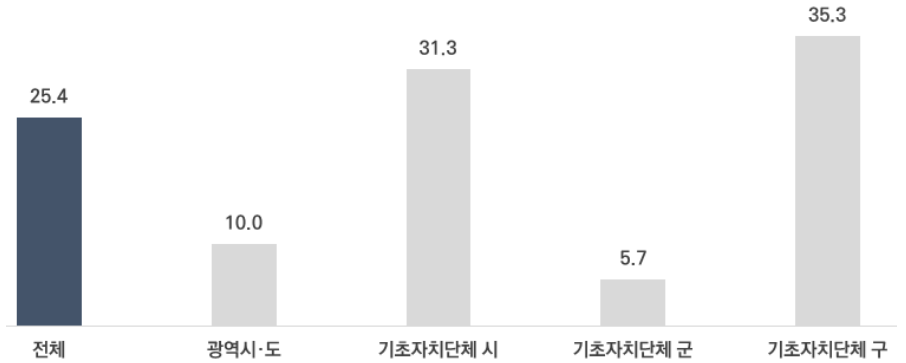
③ 청소년지도위원 연간 운영 횟수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간 운영 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19>와 같다. 광역시·도는 10.0회, 기초자치단체 시는 31.3회, 기초자치단체 군은 5.7회, 기초자치단체 구는 35.3회 운영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9. 청소년지도위원 연간 운영 횟수

(단위: 회)

구분		사례 수(명)	연간 운영 횟수(평균)
전체		73	25.4
지역	광역시·도	1	10.0
	기초자치단체 시	26	31.3
	기초자치단체 군	20	5.7
	기초자치단체 구	26	35.3



* 주: 각 지역 구분 내 평균 값임(단위: 회)

그림 Ⅲ-15. 청소년지도위원 연간 운영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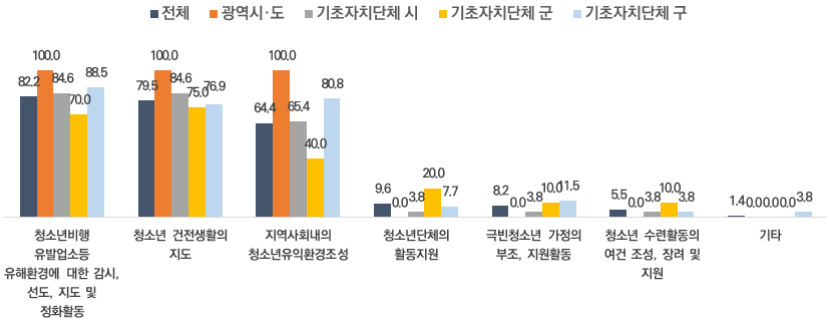
④ 청소년지도위원의 주요 활동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주요 활동을 최대 3개까지 응답받은 결과는 다음 <표 III-20>과 같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지도,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활동 내용에서 대부분 청소년보호 분야에 높게 이루어지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역량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참여를 통한 정책 사업의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I-20. 청소년지도위원의 주요 활동

(단위: 회)

구분	사례 수 (명)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기타
전체	73	82.2	79.5	64.4	9.6	8.2	5.5	1.4
지역	광역시·도	1	100.0	100.0	100.0	0.0	0.0	0.0
	기초자치단체 시	26	84.6	84.6	65.4	3.8	3.8	0.0
	기초자치단체 군	20	70.0	75.0	40.0	20.0	10.0	0.0
	기초자치단체 구	26	88.5	76.9	80.8	7.7	11.5	3.8



* 주: '복수응답' 문항임

그림 III-16. 청소년지도위원의 주요 활동

(5) 청소년단체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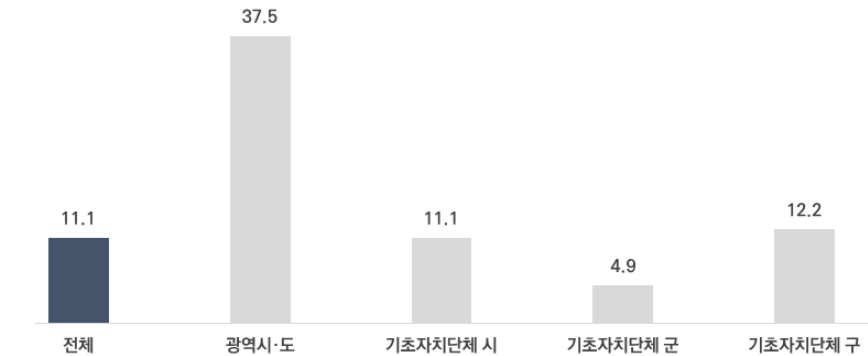
①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여부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21>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37.5%, 기초자치단체 시는 11.1%, 기초자치단체 군은 4.9%, 기초자치단체 구는 12.2%가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문제는 광역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 청소년단체나 관련 조직 등이 많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할 만큼 지역내에 청소년관련단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은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을 유도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폐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표 III-21.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음	없음
전체		126	11.1	88.9
지역	광역시·도	8	37.5	62.5
	기초자치단체 시	36	11.1	88.9
	기초자치단체 군	41	4.9	95.1
	기초자치단체 구	41	12.2	87.8



* 주: '있음'의 비중임(단위: %)

그림 III-17.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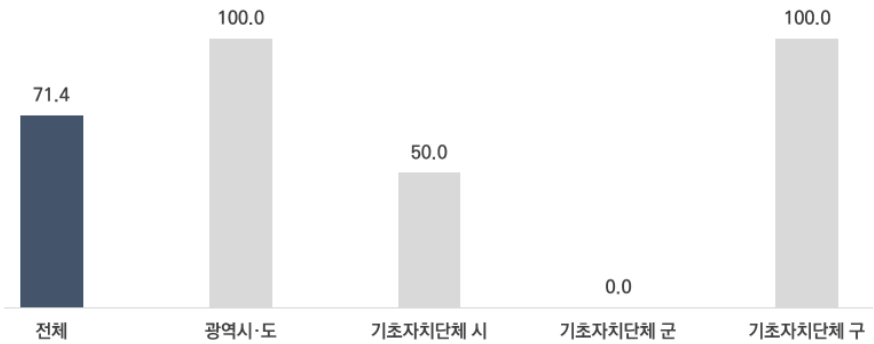
②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관련 조례 유무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립 관련 조례가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22>와 같다. 광역시·도는 100.0%, 기초자치단체 시는 50.0%, 기초자치단체 군은 0.0%, 기초자치단체 구는 100.0%가 설립 관련 조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2.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관련 조례 유무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음	없음
전체		14	71.4	28.6
지역	광역시·도	3	100.0	0.0
	기초자치단체 시	4	50.0	50.0
	기초자치단체 군	2	0.0	100.0
	기초자치단체 구	5	100.0	0.0



* 주: '있음'의 비중임(단위: %)

그림 III-18.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관련 조례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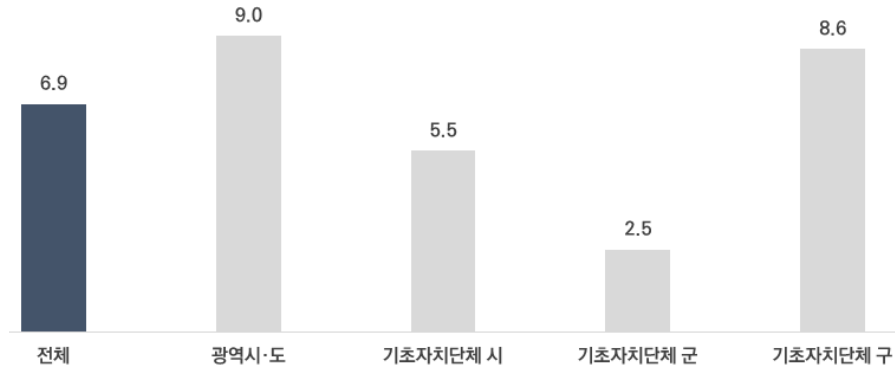
③ 청소년단체협의회 연간 운영 횟수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간 운영 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23>과 같다. 광역시·도는 9.0회, 기초자치단체 시는 5.5회, 기초자치단체 군은 2.5회, 기초자치단체 구는 8.6회 운영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3. 청소년단체협의회 연간 운영 횟수

(단위: 회)

구분		사례 수(명)	연간 운영 횟수(평균)
전체		14	6.9
지역	광역시·도	3	9.0
	기초자치단체 시	4	5.5
	기초자치단체 군	2	2.5
	기초자치단체 구	5	8.6



* 주: 각 지역 구분 내 평균 값임(단위: 회)

그림 III-19. 청소년단체협의회 연간 운영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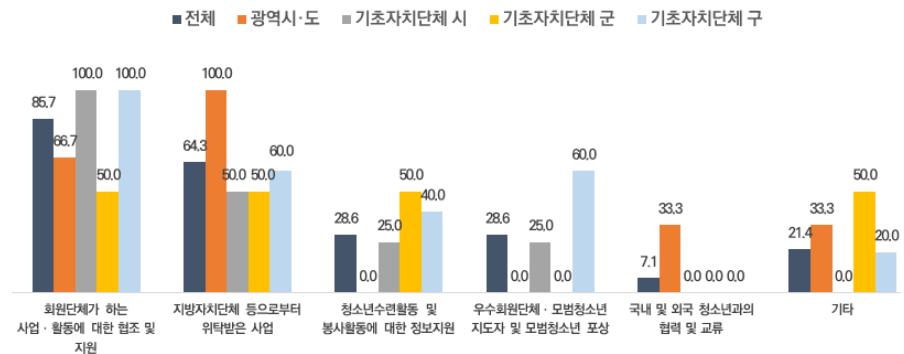
④ 청소년단체협의회회의 주요 활동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단체협의회회의의 주요 활동을 최대 3개까지 응답받은 결과는 다음 <표 III-24>와 같다. 전체적으로 회원단체가 하는 사업·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 결과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청소년단체협의회는 해당 기초자치단의 청소년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활동 정도가 높다. 이는 본래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협의회 내 청소년사업이나 연계사업 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볼 때,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표 III-24. 청소년단체협의회회의의 주요 활동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회원단체가 하는 사업·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청소년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우수회원 단체·모범 청소년 지도자 및 모범 청소년 포상	국내 및 외국 청소년과의 협력 및 교류	기타
전체		14	85.7	64.3	28.6	28.6	7.1	21.4
지역	광역시·도	3	66.7	100.0	0.0	0.0	33.3	33.3
	기초자치단체 시	4	100.0	50.0	25.0	25.0	0.0	0.0
	기초자치단체 군	2	50.0	50.0	50.0	0.0	0.0	50.0
	기초자치단체 구	5	100.0	60.0	40.0	60.0	0.0	20.0



* 주: 복수응답 문항임

그림 III-20. 청소년단체협의회회의의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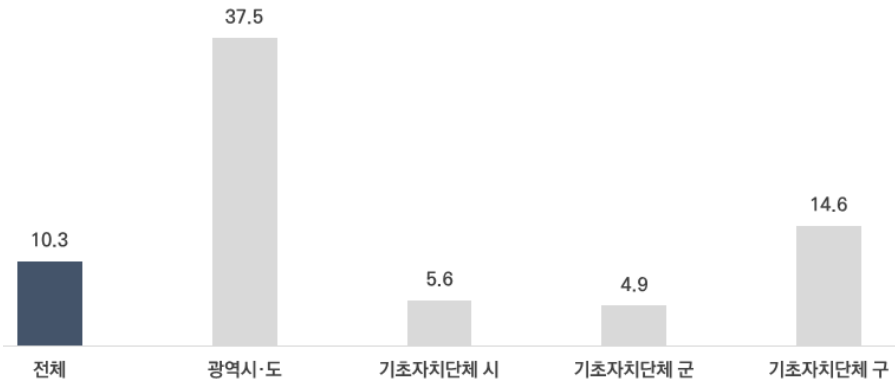
⑤ 비공식 운영 청소년단체협의회 유무

지방자치단체별 비공식 운영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25>와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37.5%, 기초자치단체 시는 5.6%, 기초자치단체 군은 4.9%, 기초자치단체 구는 14.6%가 비공식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5. 비공식 운영 청소년단체협의회 유무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음	없음
전체		126	10.3	89.7
지역	광역시·도	8	37.5	62.5
	기초자치단체 시	36	5.6	94.4
	기초자치단체 군	41	4.9	95.1
	기초자치단체 구	41	14.6	85.4



* 주: '있음'의 비중임(단위: %)

그림 Ⅲ-21. 비공식 운영 청소년단체협의회 유무

(6) 청소년육성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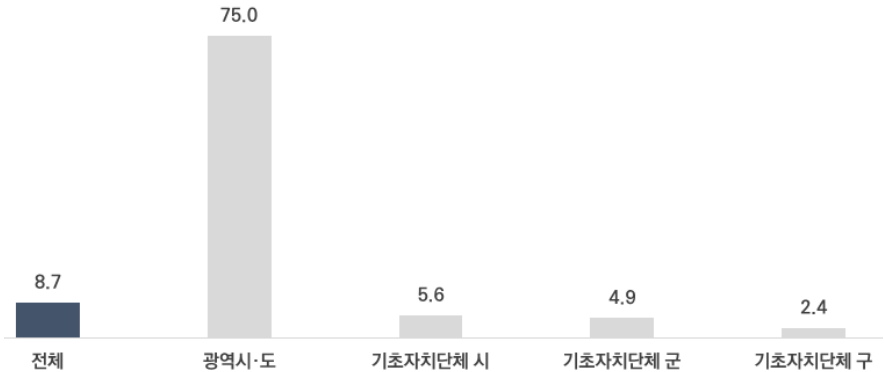
①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여부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26>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75.0%, 기초자치단체 시는 5.6%, 기초자치단체 군은 4.9%, 기초자치단체 구는 2.4%가 청소년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청소년사업 예산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은 광역시도를 제외하면 매우 낮다. 즉, 정책적 효용성 측면에서 볼 때 필요성대비 실질적 운영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영 범위를 광역시도 수준에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운영 방향에 해당 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표 III-26.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음	없음
전체		126	8.7	91.3
지역	광역시·도	8	75.0	25.0
	기초자치단체 시	36	5.6	94.4
	기초자치단체 군	41	4.9	95.1
	기초자치단체 구	41	2.4	97.6



* 주: '있음'의 비중임(단위: %)

그림 III-2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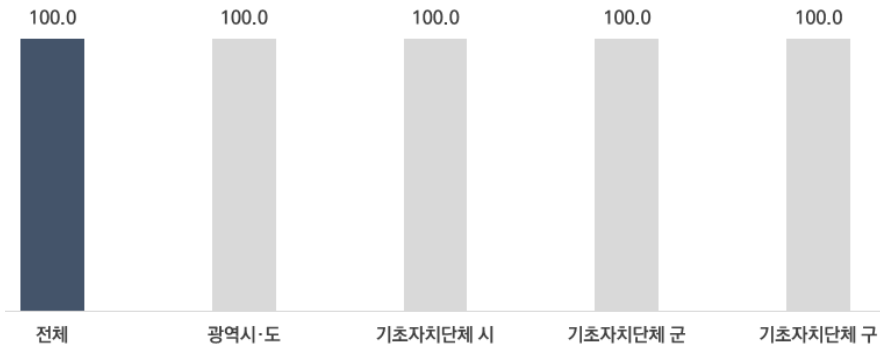
②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관련 조례 유무

청소년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가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27>과 같다. 청소년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련 조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7.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관련 조례 유무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음	없음
전체		10	100.0	0.0
지역	광역시·도	5	100.0	0.0
	기초자치단체 시	2	100.0	0.0
	기초자치단체 군	2	100.0	0.0
	기초자치단체 구	1	100.0	0.0



* 주: '있음'의 비중임(단위: %)

그림 Ⅲ-23.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관련 조례 유무

③ 청소년육성기금의 주 사용처

청소년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주 사용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28>과 같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주 사용처로는 청소년 활동 지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소년장학금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의 방향에서 어긋나는 것을 보여 준다.

표 III-28. 청소년육성기금의 주 사용처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장학금	청소년 단체 및 시설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기타
전체		11	45.5	18.2	18.2	9.1	9.1
지역	광역시·도	6	50.0	33.3	0.0	0.0	16.7
	기초자치단체 시	2	0.0	0.0	50.0	50.0	0.0
	기초자치단체 군	2	50.0	0.0	50.0	0.0	0.0
	기초자치단체 구	1	10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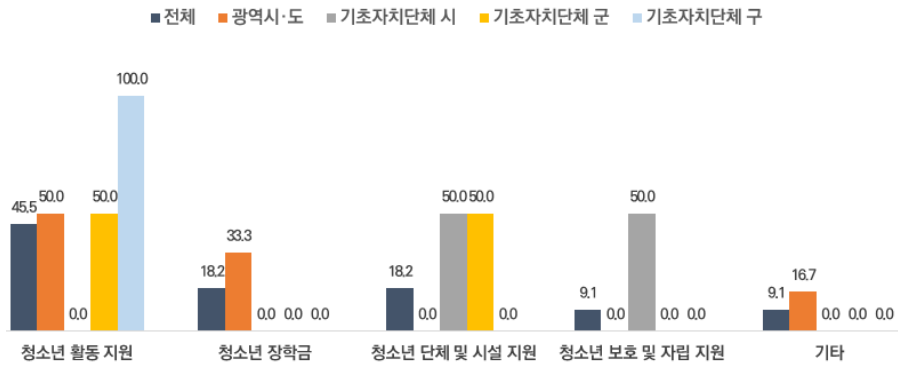


그림 III-24. 청소년육성기금의 주 사용처

(7)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현황

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29>와 같다. 청소년수련 시설은 광역시·도에서 39.6개로 월등히 많았으며, 광역시·도는 직접운영이, 기초자치단체 는 위탁운영이 많거나 동일했다.

표 Ⅲ-2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단위: 개)

구분		사례 수(명)	시설현황	직접운영	위탁운영
전체		126	4.6	2.0	2.7
지역	광역시·도	8	39.6	20.0	19.6
	기초자치단체 시	36	2.9	0.9	2.0
	기초자치단체 군	41	2.2	1.1	1.1
	기초자치단체 구	41	1.6	0.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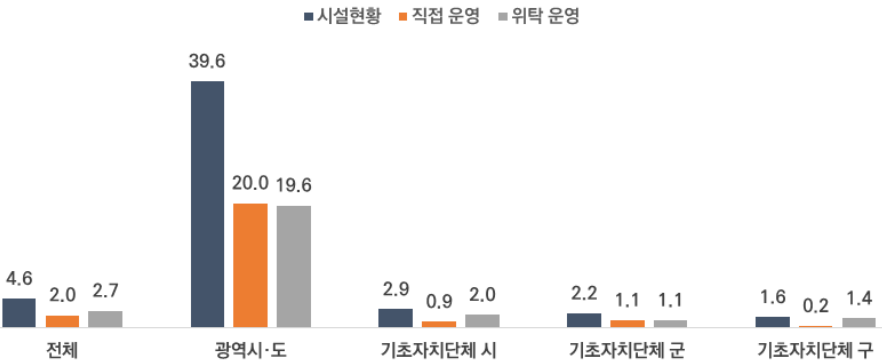


그림 Ⅲ-2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②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30>과 같다. 청소년 상담복지시설은 광역시·도에서 11.6개로 월등히 많았으며, 광역시·도는 직접운영이, 기초 자치단체는 위탁운영이 많거나 동일했다.

표 Ⅲ-30.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운영현황

(단위: 개)

구분		사례 수(명)	시설현황	직접운영	위탁운영
전체		126	1.7	0.7	1.0
지역	광역시·도	8	11.6	6.4	5.3
	기초자치단체 시	36	1.1	0.5	0.6
	기초자치단체 군	41	1.0	0.5	0.5
	기초자치단체 구	41	1.1	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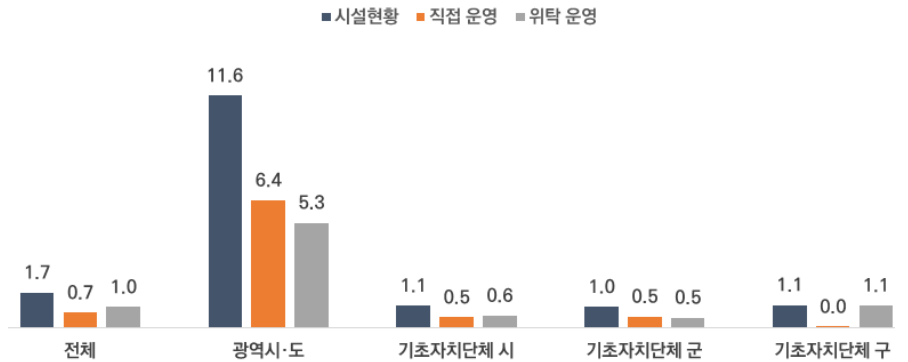


그림 Ⅲ-26.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운영현황

③ 청소년진로센터

청소년진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31>과 같다. 청소년진로센터는 광역시·도에서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1. 청소년진로센터 운영현황

(단위: 개)

구분		사례 수(명)	시설현황	직접운영	위탁운영
전체		126	0.5	0.1	0.4
지역	광역시·도	8	2.0	0.1	1.9
	기초자치단체 시	36	0.4	0.1	0.3
	기초자치단체 군	41	0.2	0.0	0.2
	기초자치단체 구	41	0.6	0.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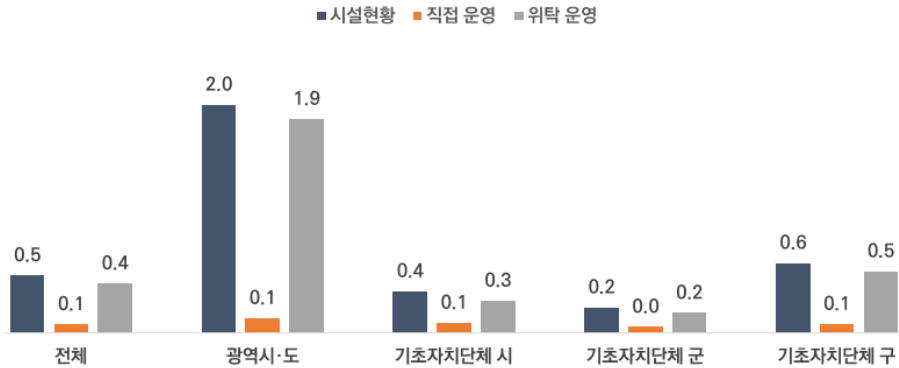


그림 Ⅲ-27. 청소년진로센터 운영현황

④ 성상담센터

성상담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32>와 같다. 성상담센터는 광역시·도에서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운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2. 성상담센터 운영현황

(단위: 개)

구분		사례 수(명)	시설현황	직접운영	위탁운영
전체		126	0.2	0.0	0.2
지역	광역시·도	8	2.0	0.3	1.8
	기초자치단체 시	36	0.2	0.0	0.2
	기초자치단체 군	41	0.1	0.0	0.0
	기초자치단체 구	41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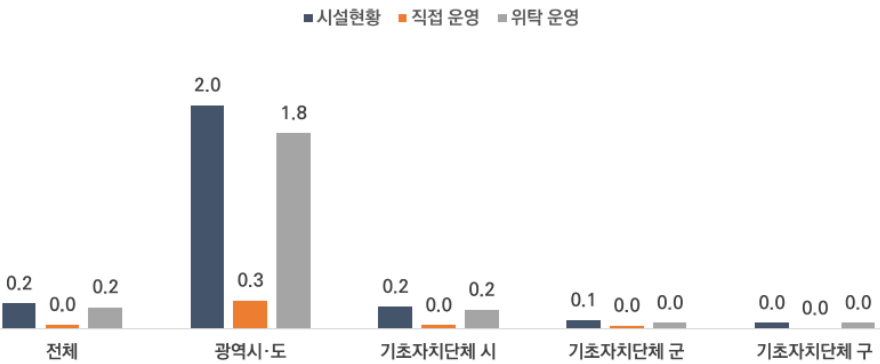


그림 Ⅲ-28. 성상담센터 운영현황

⑤ 청소년지원(운영)재단

청소년지원(운영)재단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33>과 같다. 청소년 지원(운영)재단은 광역시·도에서 0.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3. 청소년지원(운영)재단 운영현황

(단위: 개)

구분		사례 수(명)	시설현황	직접운영	위탁운영
전체		126	0.1	0.1	0.1
지역	광역시·도	8	0.4	0.4	0.0
	기초자치단체 시	36	0.2	0.1	0.1
	기초자치단체 군	41	0.1	0.0	0.0
	기초자치단체 구	41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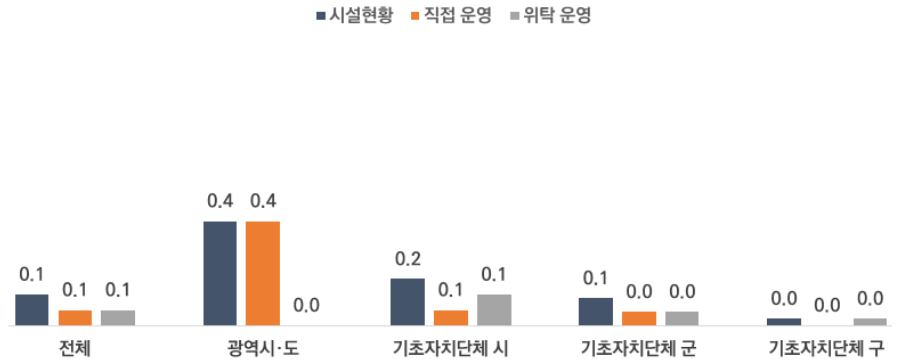


그림 Ⅲ-29. 청소년지원(운영)재단 운영현황

⑥ 청소년보호/자립 시설

청소년보호/자립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34>와 같다. 청소년 보호/자립시설은 광역시·도에서 5.1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운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4. 청소년보호/자립 시설 운영현황

(단위: 개)

구분		사례 수(명)	시설현황	직접운영	위탁운영
전체		126	0.7	0.0	0.6
지역	광역시·도	8	5.1	0.1	5.0
	기초자치단체 시	36	0.7	0.0	0.6
	기초자치단체 군	41	0.1	0.0	0.0
	기초자치단체 구	41	0.3	0.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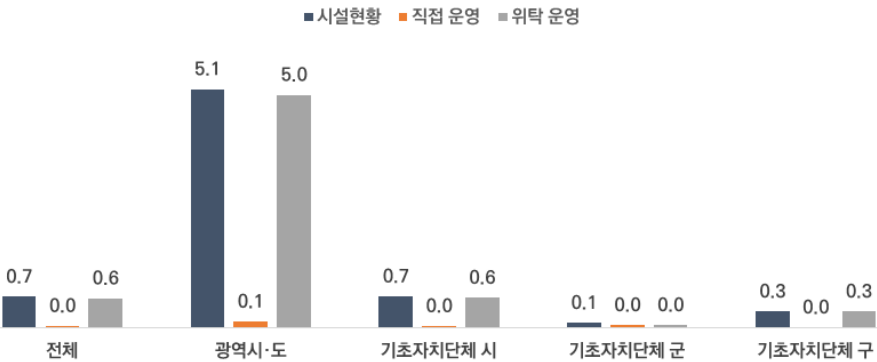


그림 Ⅲ-30. 청소년보호/자립 시설 운영현황

⑦ 기타 청소년 관련 조직

기타 청소년 관련 조직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35>와 같다. 기타 청소년 관련 조직은 광역시·도에서 3.4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기타 청소년 관련 조직 운영현황

(단위: 개)

구분		사례 수(명)	시설현황	직접운영	위탁운영
전체		126	0.8	0.1	0.7
지역	광역시·도	8	3.4	0.0	3.4
	기초자치단체 시	36	0.5	0.1	0.4
	기초자치단체 군	41	0.2	0.0	0.1
	기초자치단체 구	41	1.2	0.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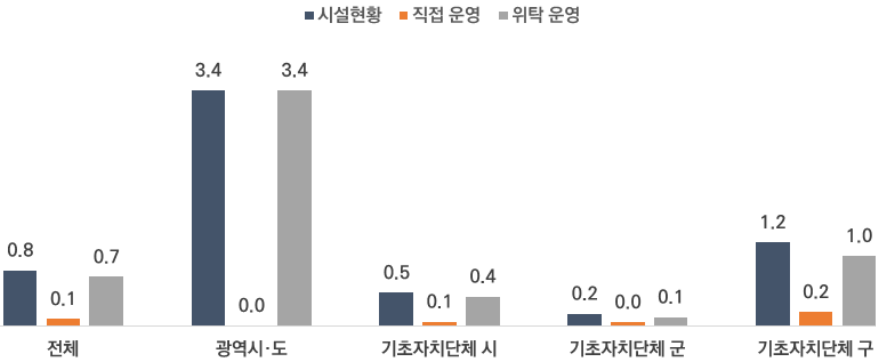


그림 III-31. 기타 청소년 관련 조직 운영현황

2) 청소년정책 재정 운영 현황

(1) 항목별 예산

지방자치단체별 항목별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36>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광역시·도의 예산이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군의 예산이 가장 적었다.

한편, 청소년 인구 수 대비 청소년 예산은 기초자치단체 구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예산과의 상관관계는 재정자립도가 상관계수 .432, 청소년 인구수 .21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조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대비 청소년예산은 1.9%, 청소년소관부서 예산 3.78% 수준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5.4%임을 볼 때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6. 항목별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구분		사례 수(명)	총 예산	사회복지 예산	청소년 예산	청소년 소관부서 예산
전체		126	1,438,385	509,184	27,394	54,405
지역	광역시·도	8	9,871,967	3,410,290	64,738	299,636
	기초자치단체 시	36	1,349,403	457,382	27,727	41,004
	기초자치단체 군	41	562,091	111,732	6,017	28,484
	기초자치단체 구	41	655,332	347,984	39,975	40,704

표 III-37. 항목별 예산(청소년 천 명당 평균)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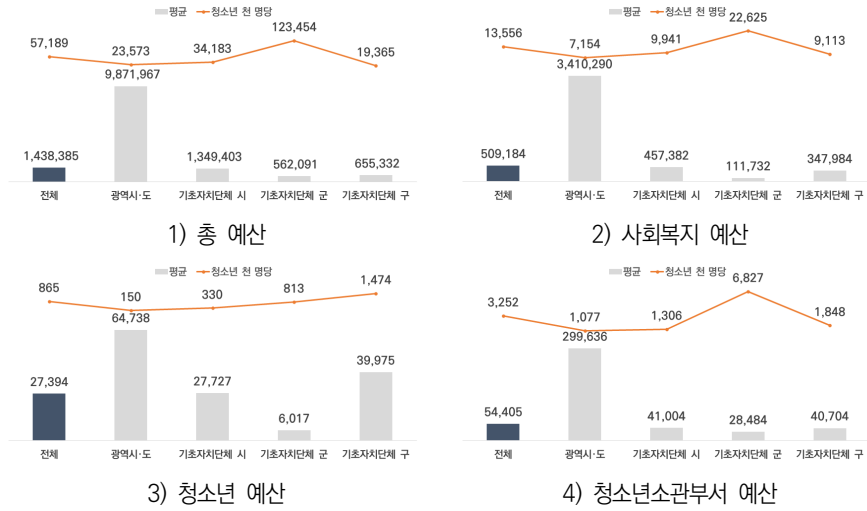
구분		청소년 인구 수(명)	총 예산	사회복지 예산	청소년 예산	청소년 소관부서 예산
전체		67,738	57,189	13,556	865	3,252
지역	광역시·도	569,579	23,573	7,154	150	1,077
	기초자치단체 시	52,468	34,183	9,941	330	1,306
	기초자치단체 군	5,823	123,454	22,625	813	6,827
	기초자치단체 구	45,142	19,365	9,113	1,474	1,848

표 III-38. 항목별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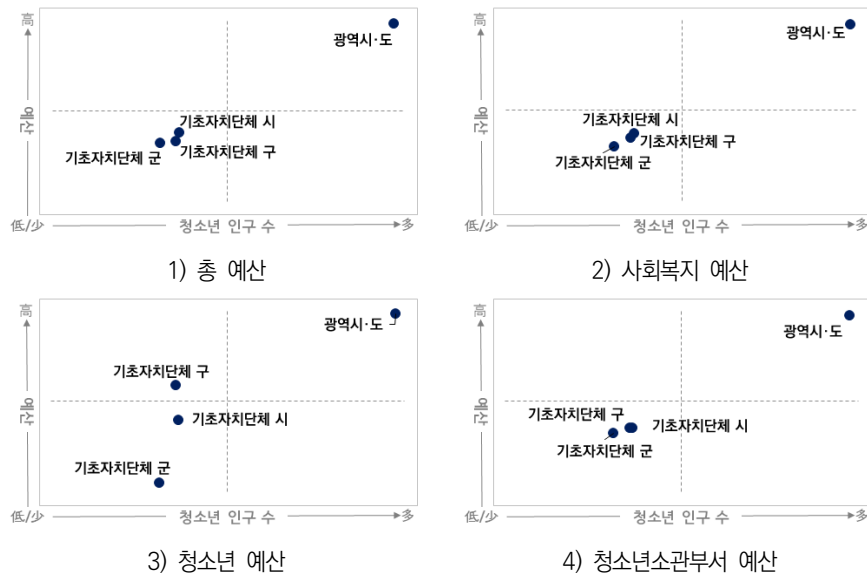
구분	총 예산	사회복지 예산	청소년 예산	청소년 소관부서 예산
청소년 인구 수	.956**	.944**	.218*	.272**
재정자주도	.236*	.156	-.053	.151
재정자립도	.469**	.496**	.432**	.228*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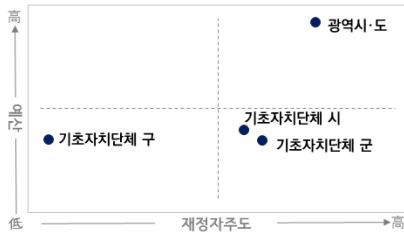
* 주: 각 지역 구분 내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III-32. 항목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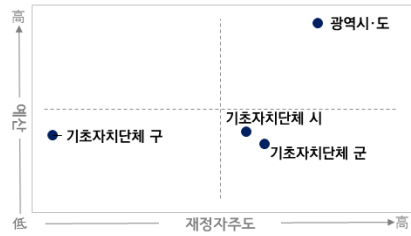


* 주: x축은 청소년 인구 수, y축은 항목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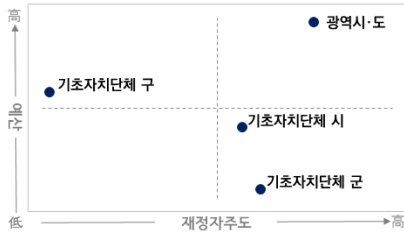
그림 III-33. 청소년 인구 수 대비 항목별 예산



1) 총 예산



2) 사회복지 예산



3) 청소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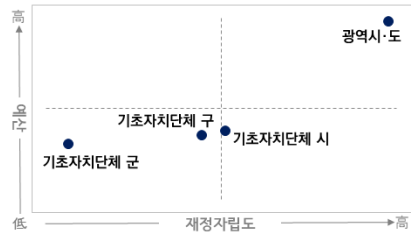
4) 청소년소관부서 예산

* 주: x축은 재정자주도, y축은 항목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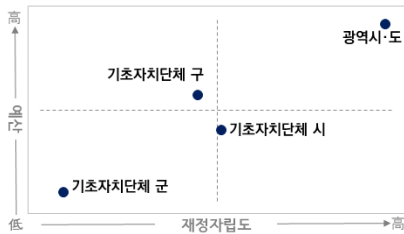
그림 III-34. 재정자주도 대비 항목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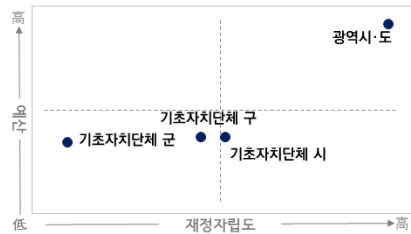
1) 총 예산



2) 사회복지 예산



3) 청소년 예산



4) 청소년소관부서 예산

* 주: x축은 재정자립도, y축은 항목별 예산

그림 III-35. 재정자립도 대비 항목별 예산

(2) 교육 예산

지방자치단체별 교육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39>와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교육 예산은 820,669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시는 18,066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군은 4,537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구는 9,264백만 원이었다. 총 예산 대비 평균 4.5%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교육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구분		사례 수(명)	교육 예산
전체		126	64,744
지역	광역시·도	8	820,669
	기초자치단체 시	36	18,066
	기초자치단체 군	41	4,537
	기초자치단체 구	41	9,264

표 III-40. 교육 예산(청소년 천 명당 평균)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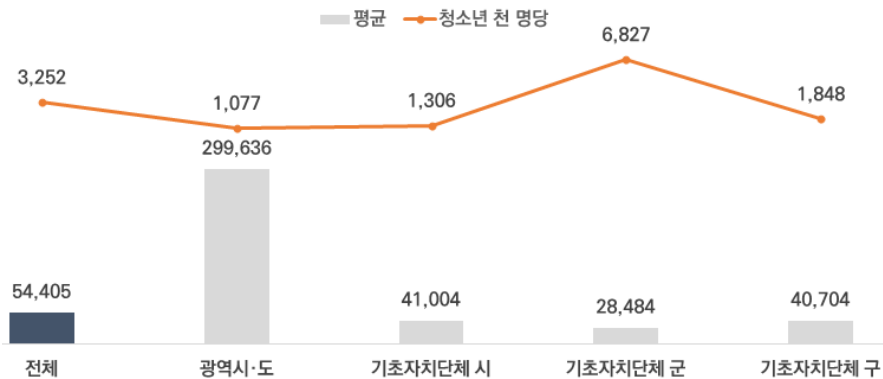
구분		청소년 인구 수(명)	교육 예산
전체		67,738	527
지역	광역시·도	569,579	1,098
	기초자치단체 시	52,468	390
	기초자치단체 군	5,823	871
	기초자치단체 구	45,142	200

표 III-41. 교육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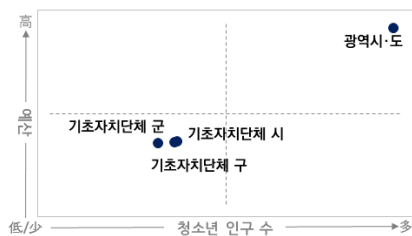
구분	교육 예산
청소년 인구 수	.979**
재정자주도	.178
재정자립도	.40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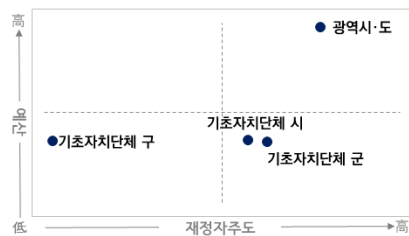


* 주: 각 지역 구분 내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III-36. 교육 예산



1) 청소년 인구 수 대비 교육 예산



2) 재정자주도 대비 교육 예산



3) 재정자립도 대비 교육 예산

* 주: x축은 독립변수, y축은 교육 예산

그림 III-37. 독립변수 대비 교육 예산

(3) 추진체계별 운영 예산

① 청소년육성위원회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42>와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예산은 4.4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시는 1.1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군은 0.2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구는 4.5백만 원이었다.

상관분석결과 재정자립도가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 구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영향이 거의없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42.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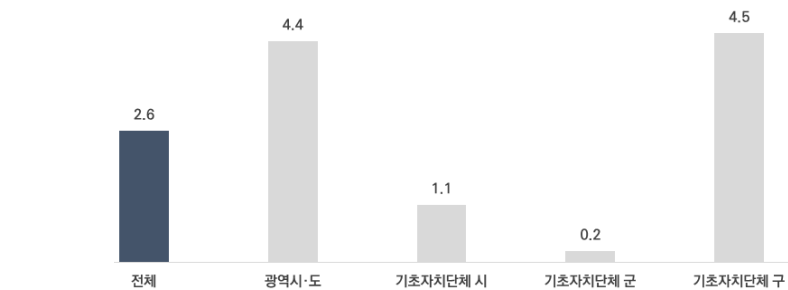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명)	운영 예산
전체		89	2.6
지역	광역시·도	8	4.4
	기초자치단체 시	29	1.1
	기초자치단체 군	17	0.2
	기초자치단체 구	35	4.5

표 III-43.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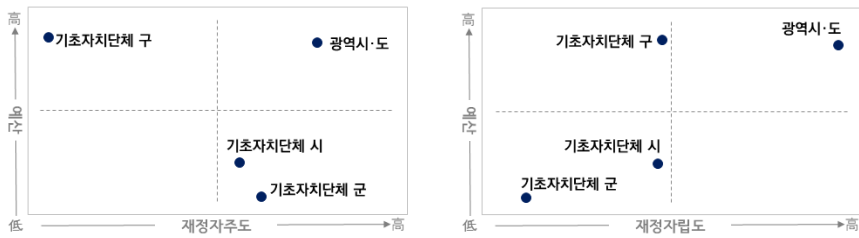
구분	운영 예산
재정자주도	.091
재정자립도	.365**

* $p < .05$, ** $p < .01$, *** $p < .001$



* 주: 각 지역 구분 내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III-38.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예산



1) 재정자주도 대비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예산 2) 재정자립도 대비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예산

* 주: x축은 독립변수, y축은 교육 예산

그림 III-39. 독립변수 대비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예산

②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운영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44>와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예산은 1.5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시는 6,253.7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군은 1,172.0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구는 4,666.8백만 원이었다.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청소년육성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44.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운영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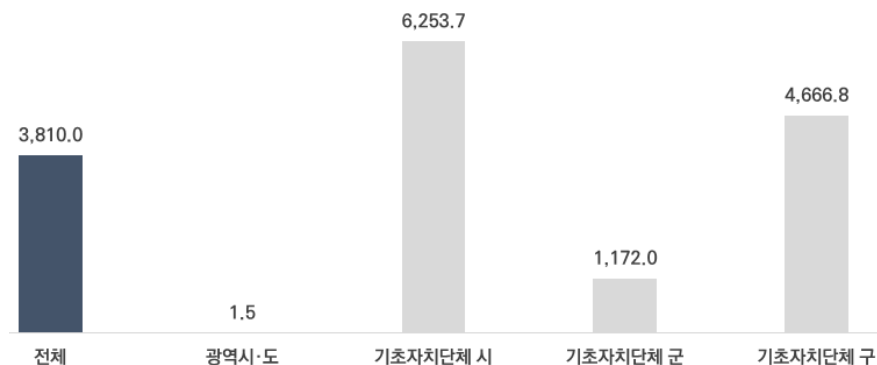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명)	운영 예산
전체	26	3,810.0
지역	광역시·도	1.5
	기초자치단체 시	6,253.7
	기초자치단체 군	1,172.0
	기초자치단체 구	4,666.8

표 III-45.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운영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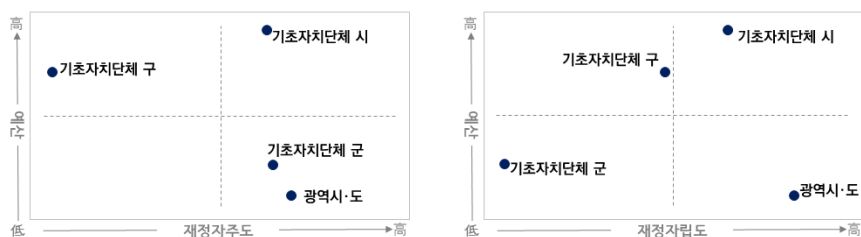
구분	운영 예산
재정자주도	.026
재정자립도	.414*

* $p < .05$, ** $p < .01$, *** $p < .001$



* 주: 각 지역 구분 내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III-40.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운영 예산



1) 재정자주도 대비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운영 예산 2) 재정자립도 대비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운영 예산

* 주: x축은 독립변수, y축은 교육 예산

그림 III-41. 독립변수 대비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운영 예산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운영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46>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예산은 60.0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시는 313.2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군은 53.2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구는 240.0백만 원이었다.

상관분석 결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담공무원 채용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 공무원의 보직 발령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46.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운영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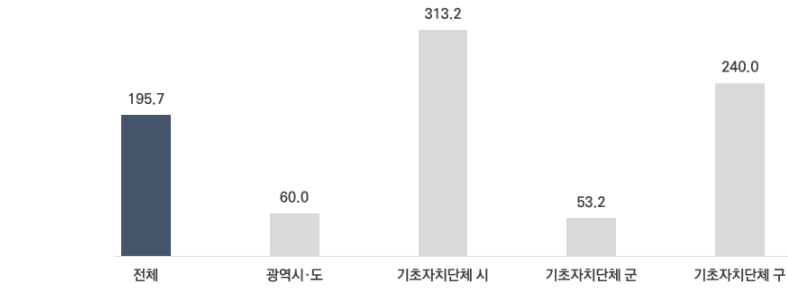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명)	운영 예산
전체		51	195.7
지역	광역시·도	3	60.0
	기초자치단체 시	17	313.2
	기초자치단체 군	15	53.2
	기초자치단체 구	16	240.0

표 III-47.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운영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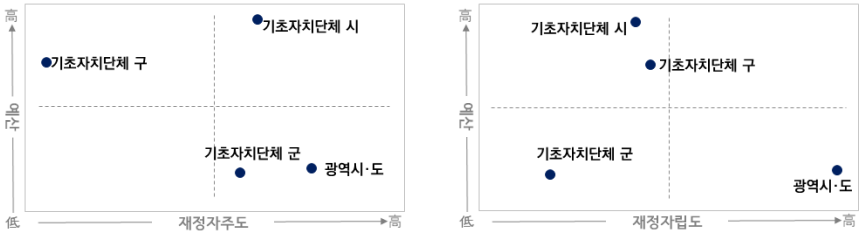
구분	운영 예산
재정자주도	-.053
재정자립도	.067

* $p < .05$, ** $p < .01$, *** $p < .001$



* 주: 각 지역 구분 내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III-42.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운영 예산



1) 재정자주도 대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운영 예산 2) 재정자립도 대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운영 예산

* 주: x축은 독립변수, y축은 교육 예산

그림 III-43. 독립변수 대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운영 예산

④ 청소년지도위원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48>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예산은 156.0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시는 15.9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군은 683.7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구는 10.2백만 원이었다.

상관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예산이 실제로 매우 낮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III-48.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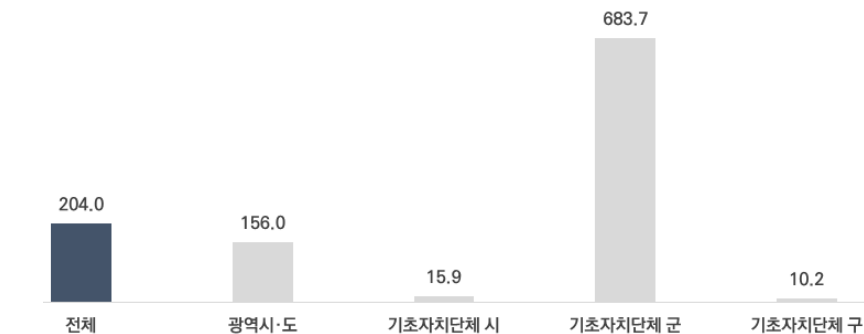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명)	운영 예산
전체		73	204.0
지역	광역시·도	1	156.0
	기초자치단체 시	26	15.9
	기초자치단체 군	20	683.7
	기초자치단체 구	26	10.2

표 III-49.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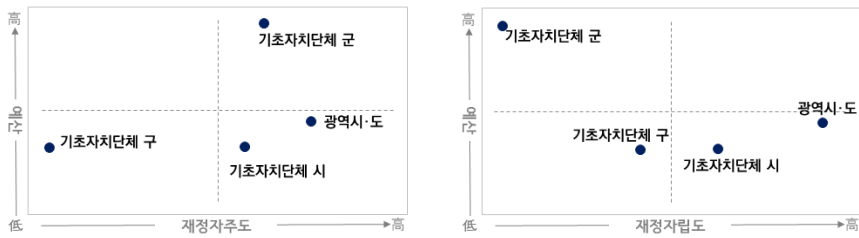
구분	운영 예산
재정자주도	.090
재정자립도	-.130

* $p < .05$, ** $p < .01$, *** $p < .001$



* 주: 각 지역 구분 내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III-44.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예산



1) 재정자주도 대비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예산 2) 재정자립도 대비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예산

* 주: x축은 독립변수, y축은 교육 예산

그림 III-45. 독립변수 대비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예산

⑤ 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50>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예산은 130.7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시는 0.0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군은 1.0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구는 5.8백만 원이었다.

표 III-50.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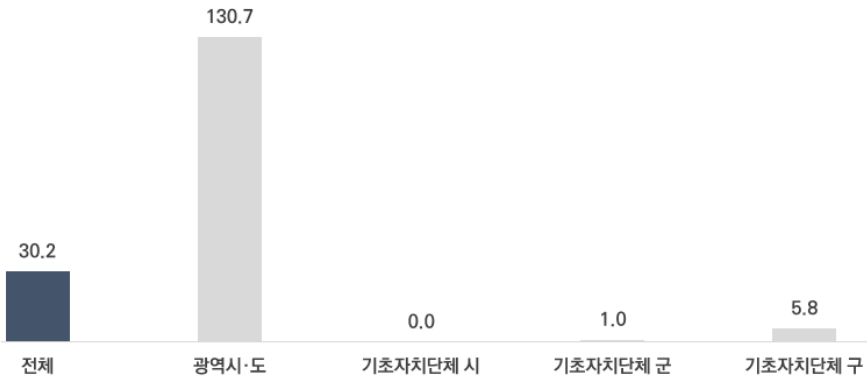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명)	운영 예산
전체		14	30.2
지역	광역시·도	3	130.7
	기초자치단체 시	4	0.0
	기초자치단체 군	2	1.0
	기초자치단체 구	5	5.8

표 III-51.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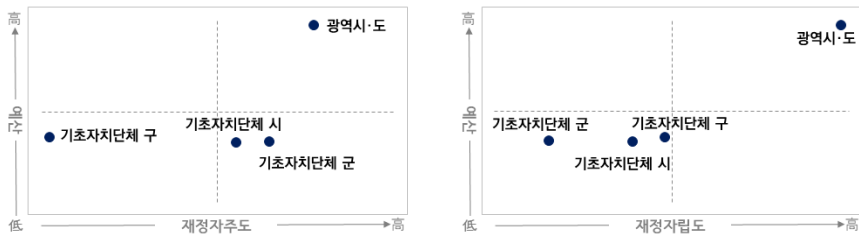
구분	운영 예산
재정자주도	.285
재정자립도	.672**

* $p < .05$, ** $p < .01$, *** $p < .001$



* 주: 각 지역 구분 내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III-46.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예산



1) 재정자주도 대비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예산 2) 재정자립도 대비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예산

* 주: x축은 독립변수, y축은 교육 예산

그림 III-47. 독립변수 대비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예산

⑥ 청소년육성기금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52>와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예산은 5,202.2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시는 1,165.0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군은 1,502.5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구는 600.0백만 원이었다.

표 III-52.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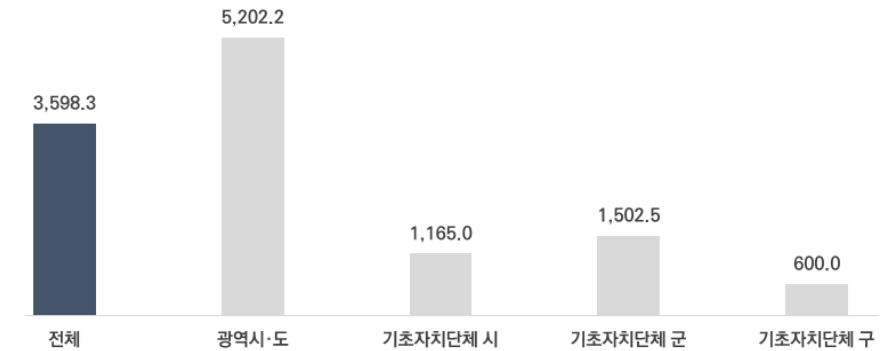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명)	초기조성액	추가조성액	2022년 총액
전체		11	1,308.7	2,319.6	3,598.3
지역	광역시·도	6	1,610.5	3,641.7	5,202.2
	기초자치단체 시	2	1,012.0	153.0	1,165.0
	기초자치단체 군	2	1,156.0	346.5	1,502.5
	기초자치단체 구	1	100.0	500.0	600.0

표 III-53.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단위: 백만 원)

구분	운영 예산
재정자주도	.620
재정자립도	.088

* $p < .05$, ** $p < .01$, *** $p < .001$



* 주: 각 지역 구분 내 2022년 총액 기준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III-48.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예산

(4) 청소년 관련 시설별 운영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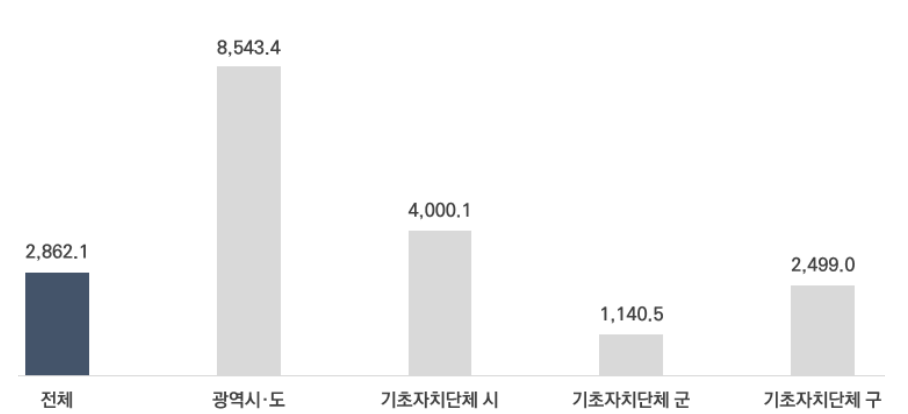
① 청소년수련시설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54>와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예산은 6,843.4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시는 4,000.1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군은 1,140.5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구는 2,499.0백만 원이었다.

표 III-5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구분		사례 수(명)	운영지원 예산	신규시설 구축 예산
전체		126	1,478.8	1,383.3
지역	광역시·도	8	2,916.5	5,626.9
	기초자치단체 시	36	2,426.5	1,573.6
	기초자치단체 군	41	792.7	347.8
	기초자치단체 구	41	1,075.3	1,423.7



* 주: 각 지역 구분 내 운영 예산(운영지원 예산+신규시설 구축 예산)의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III-4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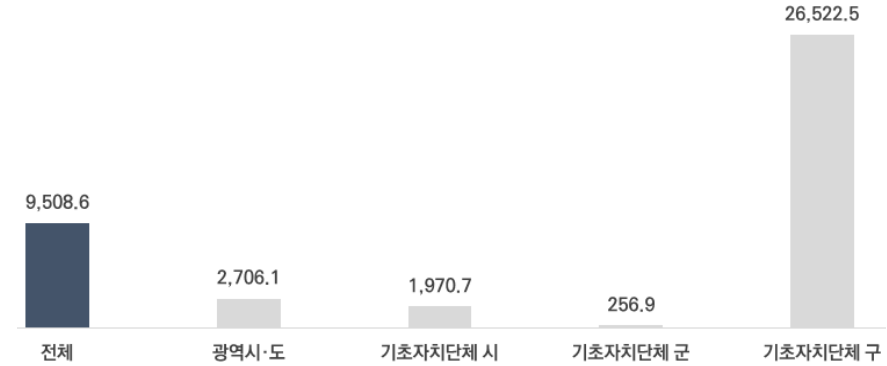
②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운영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55>와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예산은 2,706.1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시는 1,970.7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군은 256.9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구는 26,522.5백만 원이었다.

표 III-55.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운영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구분		사례 수(명)	운영지원 예산	신규시설 구축 예산
전체		126	9,476.4	32.2
지역	광역시·도	8	2,706.1	0.0
	기초자치단체 시	36	1942.9	27.8
	기초자치단체 군	41	252.8	4.0
	기초자치단체 구	41	2,6452.0	70.5



* 주: 각 지역 구분 내 운영 예산(운영지원 예산+신규시설 구축 예산)의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III-50.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운영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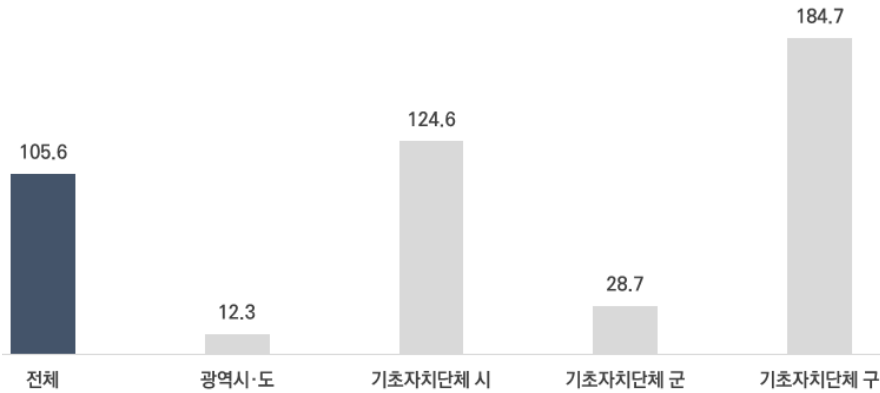
③ 청소년진로센터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진로센터 운영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56>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예산은 12.3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시는 124.6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군은 28.7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구는 184.7백만 원이었다.

표 Ⅲ-56. 청소년진로센터 운영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구분		사례 수(명)	운영지원 예산	신규시설 구축 예산
전체		126	96.4	9.2
지역	광역시·도	8	12.3	0.0
	기초자치단체 시	36	124.6	0.0
	기초자치단체 군	41	28.7	0.0
	기초자치단체 구	41	156.4	28.3



* 주: 각 지역 구분 내 운영 예산(운영지원 예산+신규시설 구축 예산)의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Ⅲ-51. 청소년진로센터 운영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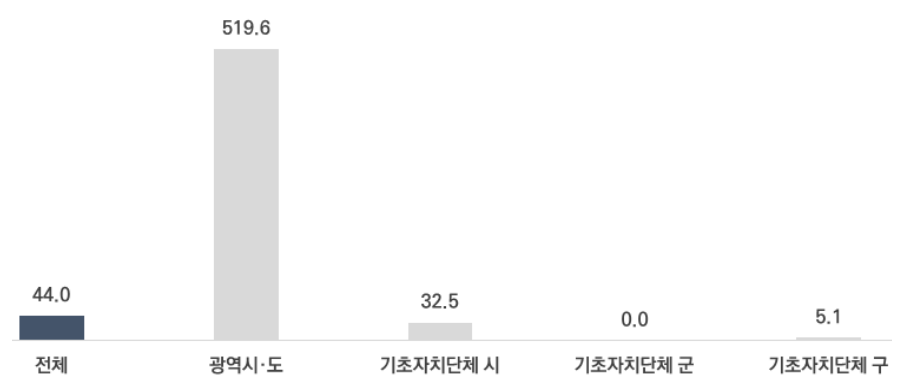
④ 성상담센터

지방자치단체별 성상담센터 운영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57>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예산은 519.6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시는 32.5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군은 0.0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구는 5.1백만 원이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7. 성상담센터 운영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구분		사례 수(명)	운영지원 예산	신규시설 구축 예산
전체		126	44.0	0.0
지역	광역시·도	8	519.6	0.0
	기초자치단체 시	36	32.5	0.0
	기초자치단체 군	41	0.0	0.0
	기초자치단체 구	41	5.1	0.0



* 주: 각 지역 구분 내 운영 예산(운영지원 예산+신규시설 구축 예산)의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III-52. 성상담센터 운영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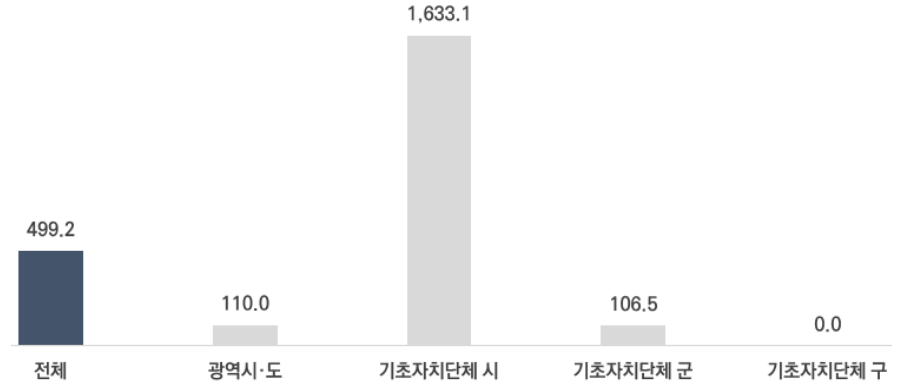
⑤ 청소년지원(운영)재단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지원(운영)재단 운영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58>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예산은 110.0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시는 1,633.1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군은 106.5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구는 0.0백만 원이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 청소년지원(운영)재단 운영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구분		사례 수(명)	운영지원 예산	신규시설 구축 예산
전체		126	499.2	0.0
지역	광역시·도	8	110.0	0.0
	기초자치단체 시	36	1,633.1	0.0
	기초자치단체 군	41	106.5	0.0
	기초자치단체 구	41	0.0	0.0



* 주: 각 지역 구분 내 운영 예산(운영지원 예산+신규시설 구축 예산)의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III-53. 청소년지원(운영)재단 운영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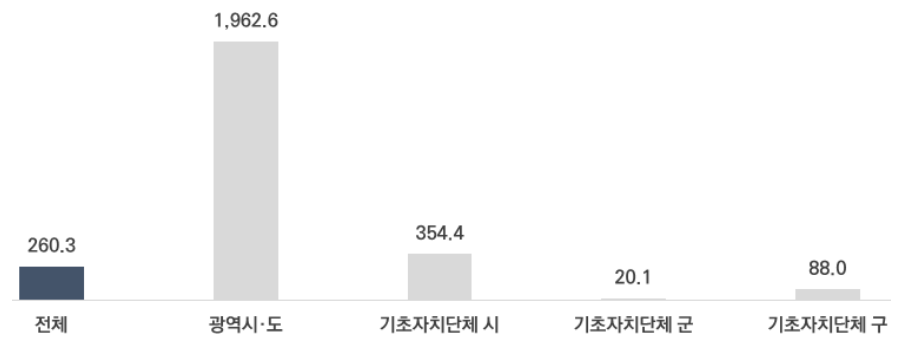
⑥ 청소년보호/자립시설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보호/자립시설 운영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59>와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예산은 1,962.6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시는 354.4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군은 20.1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구는 88.0백만 원이었다.

표 III-59. 청소년보호/자립시설 운영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구분		사례 수(명)	운영지원 예산	신규시설 구축 예산
전체		126	256.8	3.5
지역	광역시·도	8	1,916.1	46.5
	기초자치단체 시	36	354.4	0.0
	기초자치단체 군	41	20.1	0.0
	기초자치단체 구	41	86.3	1.7



* 주: 각 지역 구분 내 운영 예산(운영지원 예산+신규시설 구축 예산)의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III-54. 청소년보호/자립시설 운영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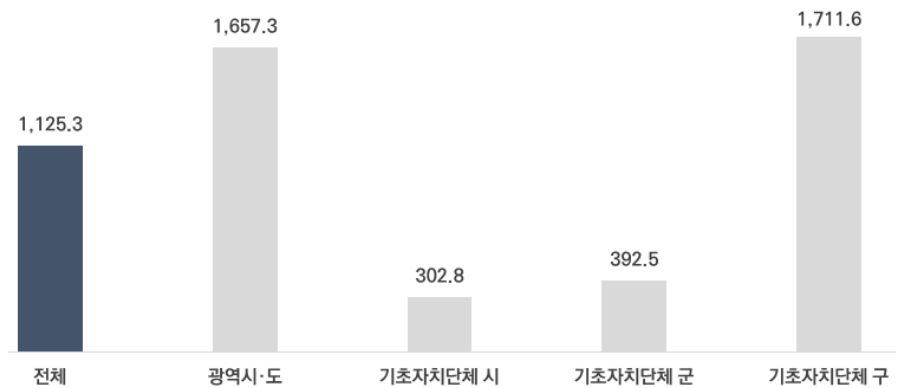
⑦ 기타 청소년 관련 조직

지방자치단체별 기타 청소년 관련 조직 운영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60>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예산은 1,657.3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시는 302.8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군은 392.5백만 원, 기초자치단체 구는 1,711.6백만 원이었다.

표 III-60. 기타 청소년 관련 조직 운영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구분		사례 수(명)	운영지원 예산	신규시설 구축 예산
전체		126	549.8	575.5
지역	광역시·도	8	1,657.3	0.0
	기초자치단체 시	36	249.3	53.5
	기초자치단체 군	41	392.5	0.0
	기초자치단체 구	41	494.9	1216.7



* 주: 각 지역 구분 내 운영 예산(운영지원 예산+신규시설 구축 예산)의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III-55. 기타 청소년 관련 조직 운영 예산

(5)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받은 예산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받은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61>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예산이 가장 많았고, 여성가족부 지원 예산과 시·도 지원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관분석에서도 청소년사업예산 지원은 여성가족부 지원이나 시·도지원, 지자체 분담 예산 모두 청소년인구 수와 재정자립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 예산의 확보가 청소년인구 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인구가 부족한 군지역의 청소년에게는 매우 낮은 청소년정책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기초서비스 내용과 양을 정하고 최소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표 III-61.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받은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구분		사례 수(명)	청소년 사업 총 예산	여성가족부 지원 예산	시·도 지원 예산	지자체 분담예산
전체		126	13,700	2,132	1,784	9,887
지역	광역시·도	8	91,892	11,263	-	80,629
	기초자치단체 시	36	13,207	2,396	2,599	8,213
	기초자치단체 군	41	2,608	451	413	1,744
	기초자치단체 구	41	11,567	2,001	2,465	7,101

표 III-62.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받은 예산(청소년 천 명당 평균)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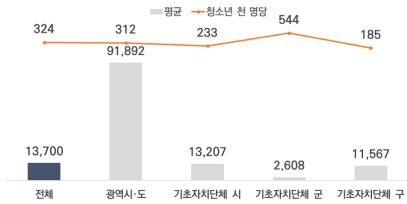
구분		청소년 인 구 수(명)	청소년 사업 총 예산	여성가족부 지원 예산	시·도 지원 예산	지자체 분담예산
전체		67,738	324	59	63	206
지역	광역시·도	569,579	312	21	-	291
	기초자치단체 시	52,468	233	51	51	132
	기초자치단체 군	5,823	544	101	96	347
	기초자치단체 구	45,142	185	31	41	113

표 III-63.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받은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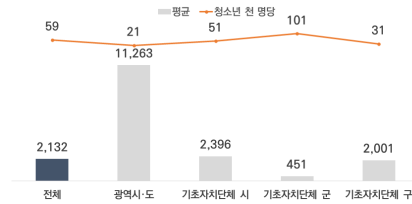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구분	청소년 사업 총 예산	여성가족부 지원 예산	시·도 지원 예산	지자체 분담예산
청소년 인구 수	.264**	.489**	.214*	.209*
재정자주도	.165	.139	.046	.158
재정자립도	.483**	.410**	.417**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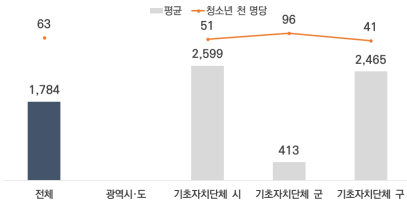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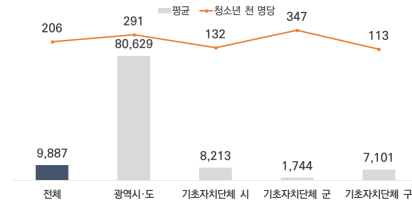
1) 청소년 사업 총 예산



2) 여성가족부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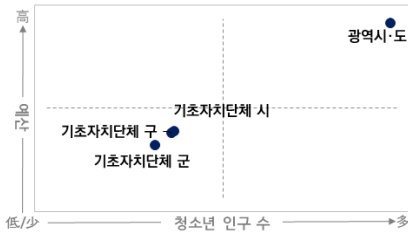
3) 시·도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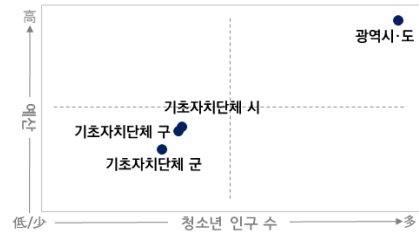
4) 지자체 분담 예산

* 주: 각 지역 구분 내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그림 III-56.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받은 예산



1) 청소년 사업 총 예산



2) 여성가족부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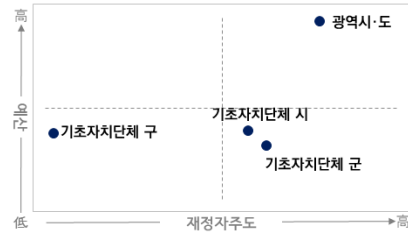
3) 시·도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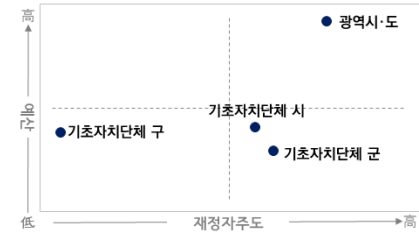
4) 지자체 분담 예산

* 주: x축은 청소년 인구 수, y축은 항목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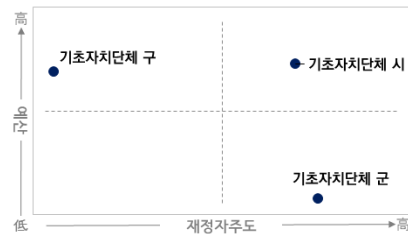
그림 III-57. 청소년 인구 수 대비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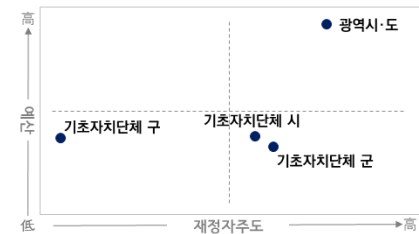
1) 청소년 사업 총 예산



2) 여성가족부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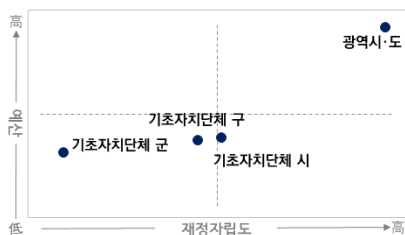
3) 시·도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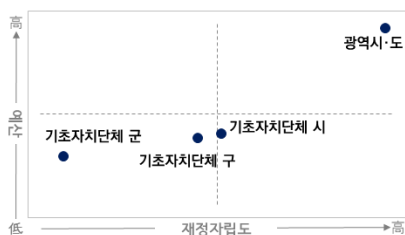
4) 지자체 분담 예산

* 주: x축은 재정자주도, y축은 항목별 예산

그림 III-58. 재정자주도 대비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받은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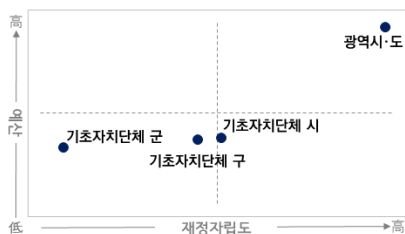
1) 청소년 사업 총 예산



2) 여성가족부 지원 예산



3) 시·도 지원 예산



4) 지자체 부담 예산

* 주: x축은 재정자립도, y축은 항목별 예산

그림 Ⅲ-59. 재정자립도 대비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받은 예산

(6)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지방자치단체별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이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64>와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12.5%, 기초자치단체 시는 16.7%, 기초자치단체 군은 9.8%, 기초자치단체 구는 2.4%가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이 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65>와 같다. 전체 지역에서 매칭펀드사업 예산 중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기초자치단체 군의 인프라 구축지원 예산이 가장 많았다.

표 III-64.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유무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있음	없음
전체		126	9.5	90.5
지역	광역시·도	8	12.5	87.5
	기초자치단체 시	36	16.7	83.3
	기초자치단체 군	41	9.8	90.2
	기초자치단체 구	41	2.4	97.6

표 III-65.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평균)

(단위: 백만 원)

구분		사례 수(명)	매칭펀드 사업 총 예산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	사업지원 예산	운영지원 예산
전체		12	35,241	28,607	4,275	2,358
지역	광역시·도	1	54,214	22,012	12,713	19,489
	기초자치단체 시	6	3,622	2,133	415	1,074
	기초자치단체 군	4	78,721	70,449	8,023	249
	기초자치단체 구	1	439	205	149	85

표 III-66.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청소년 천 명당 평균)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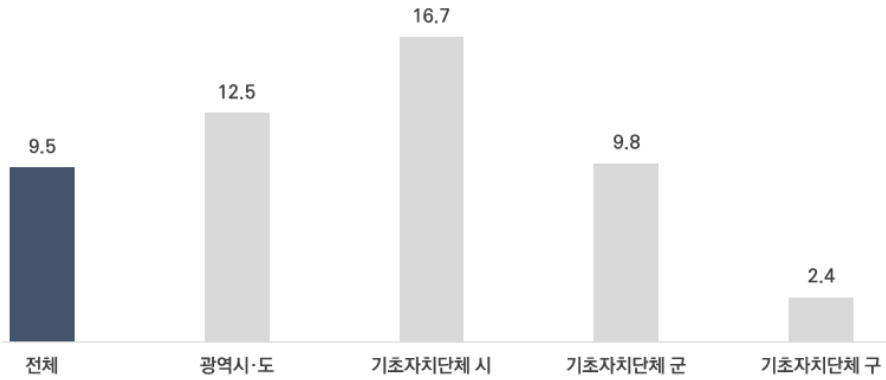
구분		청소년 인구 수(명)	매칭펀드 사업 총 예산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	사업지원 예산	운영지원 예산
전체		217,841	5,373	4,757	569	46
지역	광역시·도	2,274,510	24	10	6	9
	기초자치단체 시	47,115	85	51	11	24
	기초자치단체 군	6,135	14,660	13,016	1,550	94
	기초자치단체 구	32,357	14	6	5	3

표 III-67.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경향 분석(상관분석)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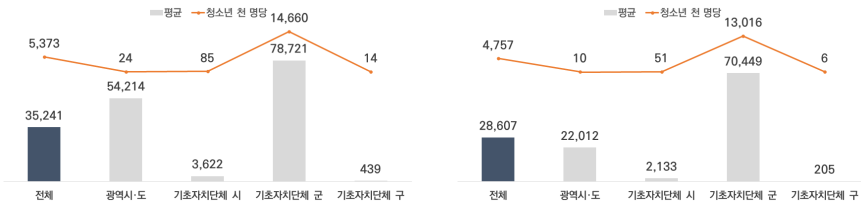
구분	매칭펀드 사업 총 예산	인프라 구축지원 예산	사업지원 예산	운영지원 예산
청소년 인구 수	.057	-.038	.292	.994**
재정자주도	.236	.190	.346	.467
재정자립도	-.052	-.132	.137	.84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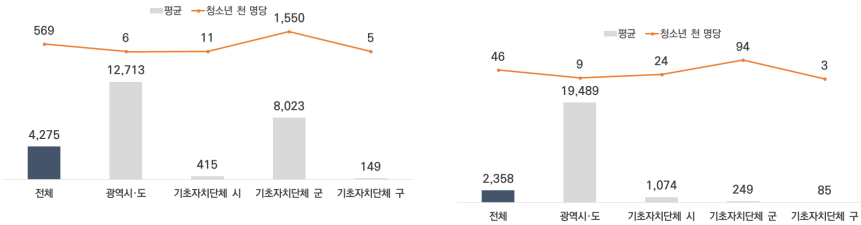
* 주: '있음'의 비중임(단위: %)

그림 III-60.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유무



1) 매칭펀드사업 총 예산

2)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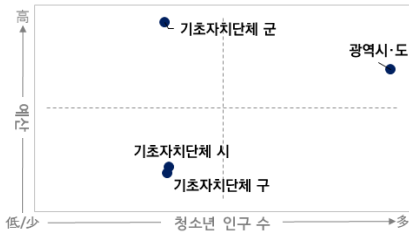


3) 사업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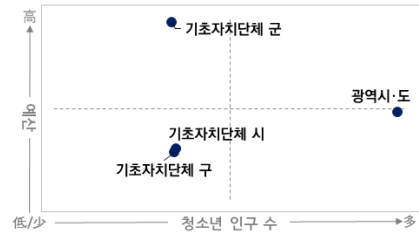
4) 운영지원 예산

* 주: 각 지역 구분 내 평균 값임(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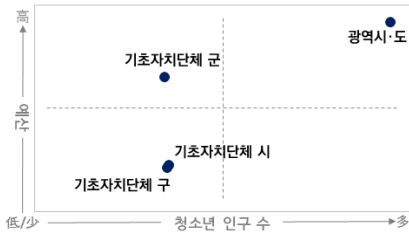
그림 III-61.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1) 매칭펀드 사업 총 예산



2)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



3) 사업지원 예산



4) 운영지원 예산

* 주: x축은 청소년 인구 수, y축은 항목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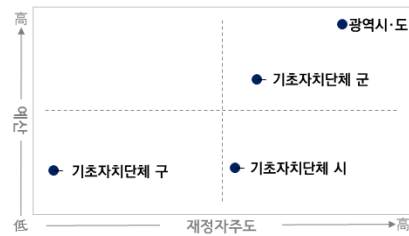
그림 III-62. 청소년 인구 수 대비 매칭펀드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1) 매칭펀드 사업 총 예산



2)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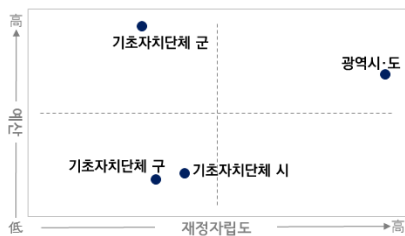
3) 사업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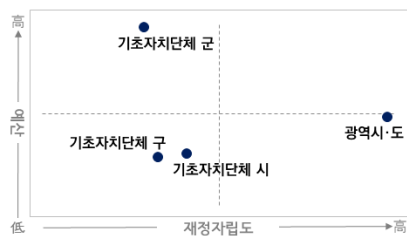
4) 운영지원 예산

* 주: x축은 재정자주도, y축은 항목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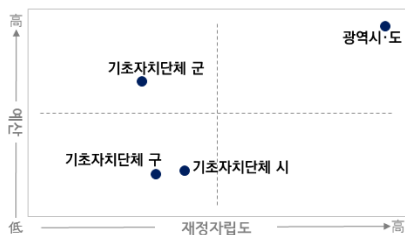
그림 III-63. 재정자주도 대비 매칭펀드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1) 매칭펀드 사업 총 예산



2)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



3) 사업지원 예산



4) 운영지원 예산

* 주: x축은 재정자립도, y축은 항목별 예산

그림 III-64. 재정자립도 대비 매칭펀드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

3)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 효과성

(1) 추진체계별 정책 효과

① 정책실효성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별 정책실효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68>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정책실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정책실효성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분야의 전문성을 교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 분야에 전문가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토록 강제해야한다.

표 III-68. 추진체계별 정책실효성(5점 평균)

(단위: 점)

구분		사례 수 (명)	청소년 육성 위원회	청소년 육성 전담기구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단체 협의회	청소년 육성기금
전체		126	2.5	2.9	3.0	2.6	2.4	2.7
지역	광역시·도	8	3.4	3.1	3.8	3.3	2.9	3.9
	기초자치단체 시	36	2.5	2.9	3.1	2.7	2.2	2.4
	기초자치단체 군	41	2.3	2.8	2.9	2.6	2.3	2.6
	기초자치단체 구	41	2.4	2.8	2.9	2.6	2.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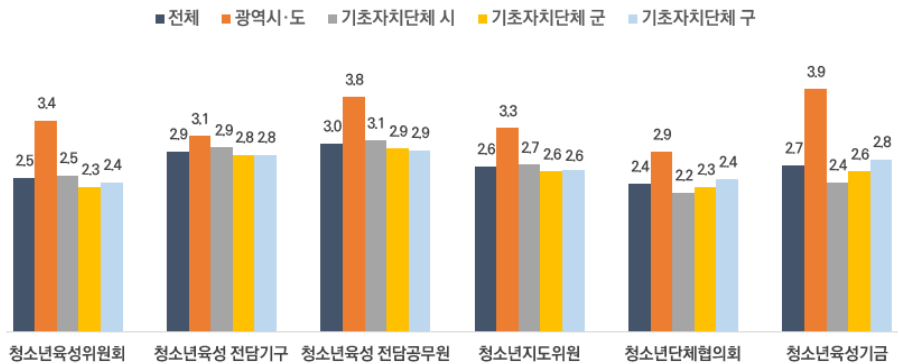


그림 III-65. 추진체계별 정책실효성(5점 평균)

② 정책중요도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별 정책중요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69>와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정책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 시, 구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기초자치단체 군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정책실효성이 가장 높았다. 전담공무원 제도와 전담기구의 설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소년정책의 추진 의지에 의해 충분히 해결가능한 분야다. 따라서 지역 내 사회적 합의와 여론 형성이 보다 필요하다.

표 III-69. 추진체계별 정책중요도(1순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청소년 육성 위원회	청소년 육성 전담기구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단체 협의회	청소년 육성기금
전체		126	10.3	29.4	38.1	6.3	0.8	15.1
지역	광역시·도	8	12.5	25.0	12.5	12.5	0.0	37.5
	기초자치단체 시	36	11.1	25.0	52.8	5.6	0.0	5.6
	기초자치단체 군	41	9.8	34.1	41.5	4.9	2.4	7.3
	기초자치단체 구	41	9.8	29.3	26.8	7.3	0.0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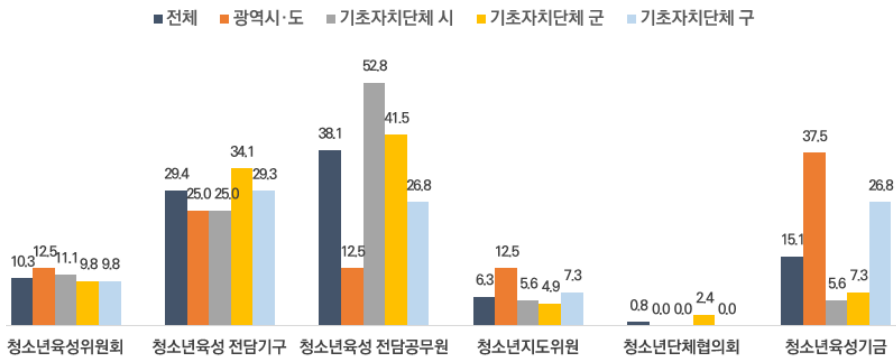


그림 III-66. 추진체계별 정책중요도(1순위)

③ 타 지자체와 협업 정책 추진 필요 여부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별 협업 정책 추진 필요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70>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에서는 청소년 지도위원과 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기초자치단체 시, 구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 기초자치단체 군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대한 협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III-70. 타 지자체와 협업 정책 추진 필요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청소년 육성 위원회	청소년 육성 전담기구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단체 협의회	청소년 육성기금
전체		126	34.9	57.1	38.1	65.9	43.7	37.3
지역	광역시·도	8	50.0	50.0	12.5	87.5	87.5	25.0
	기초자치단체 시	36	36.1	50.0	52.8	69.4	33.3	38.9
	기초자치단체 군	41	26.8	63.4	41.5	58.5	34.1	36.6
	기초자치단체 구	41	39.0	58.5	26.8	65.9	53.7	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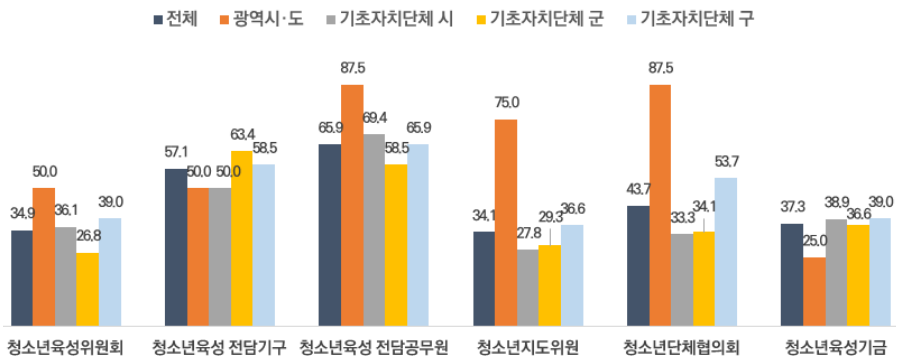


그림 III-67. 타 지자체와 협업 정책 추진 필요 여부

(2) 지자체 내 청소년단체 활동성

지방자치단체별 지자체 내 청소년단체 활동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71>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청소년단체 활동성이 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시, 기초자치단체 구, 기초자치단체 군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71. 청소년단체 활동성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활발 하지 않음	활발하지 않음	보통	활발함	매우 활발함	5점 평균
전체		126	7.9	18.3	43.7	24.6	5.6	3.0
지역	광역시·도	8	0.0	12.5	25.0	37.5	25.0	3.8
	기초자치단체 시	36	2.8	8.3	52.8	30.6	5.6	3.3
	기초자치단체 군	41	17.1	26.8	36.6	14.6	4.9	2.6
	기초자치단체 구	41	4.9	19.5	46.3	26.8	2.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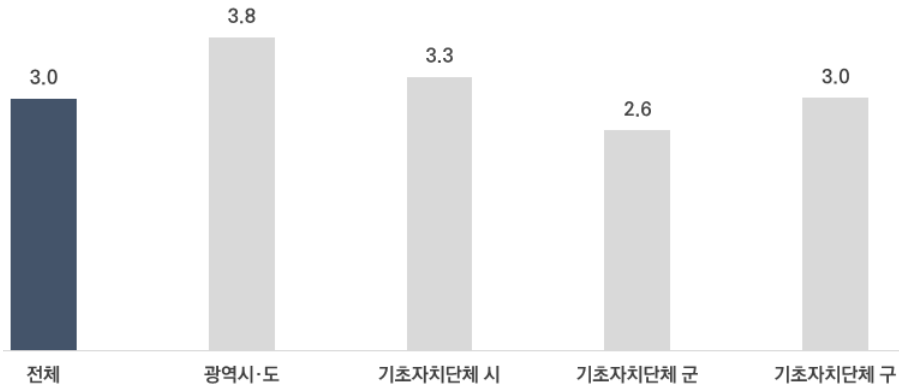


그림 III-68. 청소년단체 활동성

(3) 재정투입 시급한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투입이 가장 시급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72>와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도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와 청소년 육성기금에 재정투입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시, 군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기초자치단체 군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가 가장 많았다.

표 III-72. 재정투입 시급한 추진체계(1순위)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명)	청소년 육성 위원회	청소년 육성 전담기구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단체 협의회	청소년 육성기금
전체		126	4.8	31.0	38.1	4.0	3.2	19.0
지역	광역시·도	8	12.5	25.0	12.5	12.5	12.5	25.0
	기초자치단체 시	36	5.6	27.8	52.8	0.0	2.8	11.1
	기초자치단체 군	41	2.4	31.7	39.0	4.9	2.4	19.5
	기초자치단체 구	41	4.9	34.1	29.3	4.9	2.4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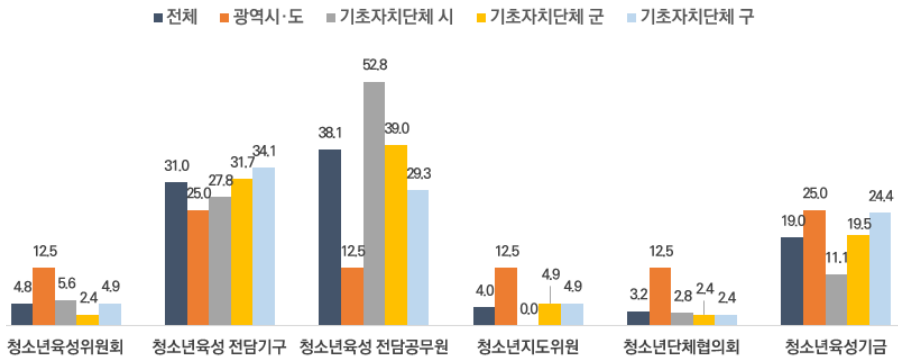


그림 III-69. 재정투입 시급한 추진체계(1순위)

(4) 지자체장의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 투입 의지

지방자치단체별 지자체장의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 투입 의지가 어떤 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I-73>과 같다.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 구의 예산 투입 의지가 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시, 군은 모두 3.3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투입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지자체 장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내 청소년정책사업의 다양성 확보와 중앙정부의 청소년사업 분야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정책 확대 전략이 요구된다.

표 III-73. 지자체장의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 투입 의지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명)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점 평균
전체		126	2.4	9.5	49.2	27.8	11.1	3.4
지역	광역시·도	8	0.0	37.5	25.0	12.5	25.0	3.3
	기초자치단체 시	36	0.0	13.9	52.8	27.8	5.6	3.3
	기초자치단체 군	41	4.9	4.9	56.1	26.8	7.3	3.3
	기초자치단체 구	41	2.4	4.9	43.9	31.7	17.1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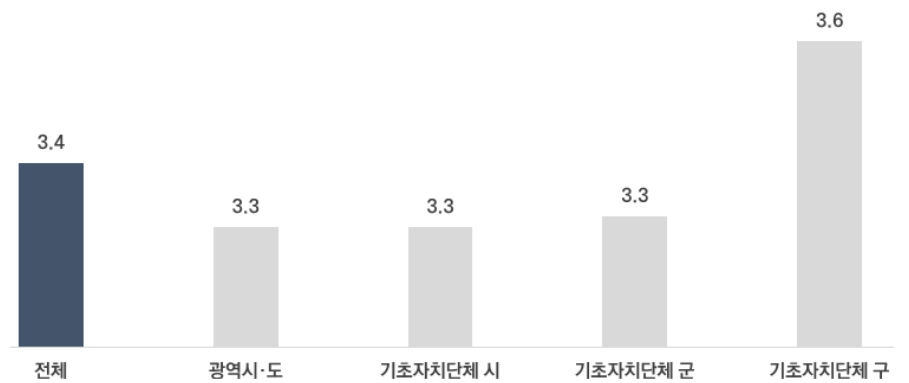


그림 III-70. 지자체장의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 투입 의지

○ — 제4장 우수사례 결과분석

- 1. 조사개요
- 2. 결과분석

1. 조사개요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수행된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현황을 알아보고, 직접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방정부 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례조사 대상 선정 목표는 광역시와 도, 시, 군, 구 각각 1개씩 총 5개 지방정부이다. 각각에 대한 선정기준은 먼저 여성가족부 주관 ‘2021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방정부이다. 이 기준에서는 광역시·도가 없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주시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전라남도 완주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만 선정할 수 있었다. 지역안배를 위해 광역시·도는 대전광역시와 경기도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된 사례는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주시, 완주군, 부산진구이다.

우수사례 조사를 위해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 담당 팀장 또는 주무관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조사는 이메일을 이용한 서면조사로 진행하였고, 서면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보충질문을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면조사는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조사내용은 청소년육성위원회·청소년육성전담기구·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청소년지도위원·청소년단체협의회·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등 인프라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정책 재정운영, 지방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했다. 사례조사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직접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였고, 질문지와 조사과정 에 대해 IRB 심의⁹⁾를 받았다.

8) 제4장은 김규리(김해시 의회사무국 입법정책 주무관)와 이유진(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9) 본 조사는 2022년 8월 17일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IRB 승인번호 : 202208-HR-고유-017) 통보를 받음.

2. 결과분석

1) 대전광역시 사례분석

(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성현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

① 운영현황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청소년위원 4명을 포함한 위촉직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했다.

연에 2회 정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상반기는 3월에 개최하였다고 한다. 상반기 회의에서는 청소년정책 결과 보고 및 5개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위원의 활동사항을 보고 했다고 답변했다. 하반기회의에서는 청소년 시설의 주요 업무를 보고 한 후 대전광역시의 청소년 주요 정책에 관해 논의 예정이었다.

② 문제점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에 대한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구상하는 것은 좋으나, 정책에 반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그치고 주요 정책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꼽았다. 특히 이런 부분은 예산 부족의 부분이 큰데, 청소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노인·아동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에 기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③ 개선방안

「청소년 기본법」 상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행정조직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예산이 없고, 회의 참석 수당뿐이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① 운영현황

대전광역시에는 2022년 1월 팀장 포함 총 인원 7명으로 구성되었던 청소년팀이 청소년활동팀과 청소년복지팀으로 분리되어, 현원 각 4명으로 두 팀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위탁기관이 15개에 달해서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② 문제점

위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업무 또한 상당한 것이 문제점으로 꼽았다. 위탁기관의 관리 및 운영비도 상당하고, 시설 운영, 민원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업무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 또한 문제점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기존에는 학교 밖 청소년 업무에 치중해왔지만 지금은 학교 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늘면서 업무가 과중된 것도 문제점 중 하나라고 답했다.

③ 개선방안

청소년교육 관련 업무를 확장시켜 팀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업무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과정 외의 업무(교복 무상지원 사업 및 급식지원 사업 등)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팀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운영현황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전담 공무원이 부재한 상황이며, 여성가족부에서는 2년 이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전담공무원으로 보는데 이마저도 없는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그 이유는 정규직 공무원일 경우 통상적으로는 1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인데, 향후에도 전담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될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② 문제점

정규 공무원은 통상적인 순환 근무 체계 때문에 한 부서에서 전담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③ 개선방안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직렬을 신설하거나 중양부처인 여성가족부 등에서 담당 공무원의 일정 비율은 전담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청소년의 보호나 청소년 활동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전담 공무원이 있다면 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위기청소년이나 청소년 인권 문제 등을 담당하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 청소년 문제에 관련해서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인권 감수성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위기청소년 등의 문제는 위탁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전담공무원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라. 청소년지도위원

① 운영현황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전무하고, 청소년 현장을 지도할 때는 방법대 봉사위원들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며 내부지도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답변했다.

② 문제점

의무사항이나 강제사항이 아닌 부분과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지도 업무가 상당부분 줄어들었으며, 현재의 인력으로는 청소년 내·외부 지도를 할 수 없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③ 개선방안

인력이나 예산이 풍부하다면 운영하는 것이 좋겠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힘들고 인원 확충 및 예산이 수반된다면 실효성이 생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역의 자원봉사자 분들과 지역 경찰과의 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마. 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운영현황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청소년육성업무와 청소년지도업무, 단체간 협의업무를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중인 청소년시설 15개 및 해당 지역의 약 40개의 청소년단체를 아우르는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② 문제점

대전광역시의 위탁시설들이 현재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이끌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전광역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 단체다 보니 시의 정책을 거스르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③ 개선방안

아무래도 위탁시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보니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와 관련된 논의만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단순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연구 등 자체사업이나 사업 계획을 진행하면 좀 더 좋은 협의체가 될 것이고, 차츰 대전광역시의 다양한 청소년단체들이 합류하여 청소년단체협의회 자체 사업이 커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바. 청소년육성기금

대전광역시는 2022년 현재 23억원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수금의 이자로만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작았다고 밝혔다.

2010년대에 전국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대전광역시도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였는데, 약 10여년이 흐른 현재는 조성된 기금이 몇 억에서 몇 십 억의 규모이다 보니 기관장의 의지로 편성 가능한 예산의 규모에 불과하여 다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에 따라 대전광역시 또한 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25년까지만 기금을 존치시키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청소년육성기금의 현재 예수금인 약 23억원으로 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상세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공간 조성 사업에 사업비로 소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 청소년 관련 시설

① 운영현황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위캔센터, 청소년수련마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15개의 위탁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② 문제점

청소년 관련 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건비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교단체(YMCA, YWCA 등) 같은 곳에 업무 위탁을 하게 되어 자생력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뽑았다. 임금이 낮다보니 전문성도 다소 낮다는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답했다.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 전문성이 낮다보니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③ 개선방안

상위법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설치를 강제했다면 시설 유지·보수비를 비롯한 인건비 또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건비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재정 운영현황

가. 청소년정책 재정

청소년정책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의 예산이 작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매칭 사업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정책 중 85%정도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나. 청소년정책 예산과 교육 예산 비교

청소년정책 중 교육 부분의 경우 정규 교육을 제외한 업무는 시청에서 담당하다 보니 업무가 상당량이라 무리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 또한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받는 예산과 대전광역시청에서 받는 예산, 두 가지로 나뉘다보니 교육청은 예산이 너무 많아서 넘치는

지경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육청에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 학교 업무 외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예컨대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에도 청소년이 사용하지만 교육청 예산이 아닌 시청에서 예산을 감당하고 있다 보니 업무뿐만 아니라 예산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 청소년정책 매칭펀드

① 운영현황

현재 대전광역시 청소년정책에 관한 거의 모든 사업이 매칭 사업인 것이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국가 예산이 더 많은 사업이 대부분이고, 시비 비율이 높은 것은 방과 후 사업을 포함한 5개 소규모 사업뿐이라고 답했다.

② 문제점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자체 조달이 가능한 시비 예산이 너무 적다는 점을 꼽았다.

③ 개선방안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자체 조달인 시비 부족분에 대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교육청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조정하거나 청소년정책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학령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시점에서 시청과 교육청을 통합·운영 방안을 꼽았다. 교육감(혹은 교육장)의 역할은 교육부시장이라는 직책이 수행하면 되며, 그 이유로서 교육청은 교육부보다는 시청과의 업무 수행 빈도가 높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이 교육부 청소년정책과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하나의 청소년정책이 중앙부처 두 곳에서 관리하다 보니 통합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3) 지방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 효과성

가. 지방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효과

대전광역시는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된 체계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이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꼽았다.

청소년 법인이 지역에도 많지만 자생력이 약하고,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유명무실한 청소년 법인이 아니라 청소년 사업이라는 고유 목적을 사업으로 하는 곳이라면 보조금이나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자생력을 늘리는 것도 지역 청소년 정책을 위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나. 지방 청소년정책의 재정투입이 시급한 영역

① 영역

대전광역시는 교육청과 시청의 중간 기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상당하고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청의 교육청소년과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이 아닌 교육청의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② 이유

시청과 교육청이 각각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어 이견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시청 공무원과 교육청 공무원이 상호 교류 배치가 된다면 청소년 업무가 융합되고, 이는 다시 대전광역시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 기관장의 청소년정책 예산투입 의지

① 수준

기관장의 의지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약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이는 대전광역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지방정부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부분은 청소년 정책보다 후발주자로 뛰어난 청년 정책보다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② 이유

기관장의 의지가 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표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가 18세부터 가능하게 되면서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많이들 가진다고 한다. 일례로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핸드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바닥 신호등도 정책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라. 기타 추진기반 강화방안

기타 추진기반에 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교육청의 교육업무가 시청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추진되기까지는 시청과 교육청 공무원을 일부 섞어 함께 실·과의 형태로 근무를 한다면 상호 이해도도 높아지고 청소년정책 또한 강화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2) 경기도 사례분석

(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성현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

① 운영현황

경기도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에 따라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및 기금운영 심의 및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② 문제점

경기도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 기능보다는 기금 운영을 위한 기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에 관한 실질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관장(청소년 정책 담당 국·과장 및 관할 교육청·경찰청 등)이 포함되는 상위법 상 위원회다 보니 상시 운영이 힘들고, 현재는 연 1회 정례 개최하고 있으며 사유가 있을 시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답변했다.

③ 개선방안

경기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개선방안으로는 청소년 정책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소년 정책 부서장 및 담당자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정책제안 및 자문 등의 본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① 운영현황

경기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평생교육국 산하 청소년과는 4개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19년 7월 개편 되어 청소년 육성 전담기구로의 위상을 갖춘 청소년과가 신설 운영 되고 있다고 한다.

② 문제점

청소년정책 또한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업무 비중의 높낮이가 있다고 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경기도 산하 시군구의 사업을 다루거나 또는 경기도의 자체사업을 전담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업무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한다. 청소년보호센터 운영 및 80억 규모의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사업 등 직접사업 또한 업무가 상당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한다.

③ 개선방안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사업뿐만 아니라 생리대 지원 사업이나 장학금 사업 등 경기도 자체사업도 많기 때문에 민원 응대 또한 상당한 문제로 꼽히는 바, 인력이 확충되는 것이 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

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운영현황

경기도는 청소년과 산하에 전담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임기제 공무원의 자격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② 문제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격무로 인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부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만큼의 업무강도와 민원업무를 감당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꼽는다.

보통 사회복지업무의 경우 사회복지직렬의 공무원이 담당하면서 업무의 전문성과 사회복지 근무 수당 등의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또한 격무의 인정과 치우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편이지만 청소년 정책 업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업무의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되어 있는 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행정직 신규 공무원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가 어렵고 이는 다시 정책의 장기화를 저해하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

③ 개선방안

따라서 청소년 정책 업무 또한 사회복지직 업무와 마찬가지로 전문성과 장기간 근무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을 추구해야 하며,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 채용 또한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합동평가 등을 통해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근무수당처럼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청소년육성 근무수당 등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검토와 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사회복지직과 같은 별도 직렬 신설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 청소년지도위원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 27조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만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운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시·군·구에는 조례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마. 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운영현황

경기도는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물론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상에는 근거 조항이 있으나, 도 내 청소년단체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회를 신설·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② 문제점

경기도 내 청소년 단체들의 대표성 및 법인형태 설립에 따른 기본 예산의 문제, 어느 단체가 경기도 청소년 관련 단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여부 등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청소년 단체협의회 설치 추진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운영 및 예산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한다.

③ 개선방안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경기도 청소년 정책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 중 대표성을 지닌 단체의 대표가 단체의 설립을 주도해야 하며 청소년단체협의회 참여 방법이나 운영 방안, 회비 등을 구체화하여 대표성을 가진다면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바. 청소년육성기금

① 운영현황

경기도의 청소년육성기금은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2022년 10월 현재 약 180억원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② 문제점

180억원의 청소년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지만, 기금의 수입을 이자수입에 의존하다보니 낮은 금리에 따라 기금 수입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은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도 추진하다보니 기금조성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한다.

③ 개선방안

청소년육성기금은 이자수입에 100%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 수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사. 청소년 관련 시설

① 운영현황

경기도의 경우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중인 청소년 시설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남부·북부),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북부) 등 총 8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② 문제점

경기도가 청소년 관련 시설의 문제점으로 밝힌 점은 총 세 가지로, 우선 청소년시설의 국비지원 부족 부분이다. 현재 국비지원이 중단 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하여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청소년시설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다 부족한 지원 때문에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청소년시설별 인건비 차이 때문에 종사자 사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시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시설별·유형별로 균등한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급여테이블이 있는 시설이 있고 없는 시설이 있다 보니 종사자 간의 급여 차이가 나고, 이는 다시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세 번째 문제점은 부족한 청소년시설 및 설치비에 대한 국비의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중 가장 많은 청소년시설이 있음에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청소년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비 지원 부족과 이미 경기도 내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규 설치에 대한 국비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③ 개선방안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회복지 분야는 현재 보건복지부 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여성가족부 내 인건비 가이드라인(급여 테이블) 같은 유행적인 인건비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원활한 시설운동을 위한 국비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경기도 내 직영 운영뿐만 아니라 도 내 시·군·구 매칭 사업의 경우에도 자체 재원이 작으면 결국 국·도비가

상당하더라도 매칭할 수 있는 만큼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청소년시설 종사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재정 운영현황

가. 청소년정책 재정

① 운영현황

경기도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의 대부분 재원을 청소년육성기금 및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상의 성평등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② 문제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도비 확보를 일반 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문제점을 꼽았다.

③ 개선방안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국비지원사업을 일반 재원으로 확보하여 청소년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 청소년정책 예산과 교육 예산 비교

① 운영현황

2022년 경기도 재정공시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29조 9,700억 원이며, 교육예산은 3조 506억 원이고 여기에서 청소년예산은 851억 원이라고 한다.

② 문제점

청소년 예산의 경우 경기도 교육예산의 0.028%의 수준으로 청소년 활동·보호·자립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③ 개선방안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의 꾸준한 확보 및 증액이 필요하며, 특히 기금 조성액이 아닌 일반 회계의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 청소년정책 매칭펀드

① 운영현황

경기도 청소년정책 매칭펀드의 운영현황은 청소년정책 재정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이 대부분 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등 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② 문제점

여성가족부의 국비지원사업의 많은 부분이 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에 대한 일반 회계 지원이 힘들다는 것을 단점으로 꼽았다.

③ 개선방안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비지원사업 또한 일반 재원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안정적으로 청소년육성 사업을 꾸릴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3) 지방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 효과성

가. 지방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효과

경기도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등에 밀려 청소년정책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관심은 적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막상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답했다.

현재 경기도의 지방청소년정책 추진 체계는 주로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부서에서 바로 청소년 및 일반 시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방법과 청소년부서에서 청소년재단 및 시설로 예산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청소년재단 및 시설에서 청소년과 시민에게 시설·센터 이용 및 운영을 하거나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한다. 경기도는 사업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위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했다.

나. 지방 청소년정책의 재정투입이 시급한 영역

① 영역

경기도는 지방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재정투입이 시급한 영역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② 이유

그 이유로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모든 범위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규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부 및 교육청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지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또한 가정 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에 차등이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한다고 한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자립지원금이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지원되는데 비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협의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에도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 기관장의 청소년정책 예산투입 의지

① 수준

기관장의 경우 공약사항에 청소년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따라서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과 연계한 정책이 그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여 청소년정책 및 사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답변했다.

전 기관장부터 진행되던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 복지의 일환인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② 이유

교육과 연계된 정책 및 공약이 다수라, 청소년 활동·보호·복지를 위한 단독사업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꼽았다.

라. 기타 추진기반 강화방안

결국 청소년 정책의 추진 및 성과는 청소년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역량과 관심, 노력에 달려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건비 처우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의 처우개선과 인식개선을 중앙부처(여성가족부 및 교육부)에서는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국비의 확충, 청소년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3) 경주시 사례분석

(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성현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

① 운영현황

경주시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위원장 경주시장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위원이 있으며, 청소년정책의 방향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자문·의결을 하고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② 문제점

경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문제점은 청소년정책에 비하여 청소년 전문가가 미약한 상황을 꼽았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등)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답했다.

③ 개선방안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청소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현직 전문가(청소년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학계 교수 등)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을 견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① 운영현황

경주시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는 시민행정국과 문화관광국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고, 시민행정국 산하 청소년정책팀 및 청소년활동팀으로 나뉘고 문화관광국(화랑마을) 산하에는 경영관리팀·활동운영팀·시설관리팀으로 나뉘져 경주시의 청소년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행정국에서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진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 관리 운영 등을 하며 문화관광국

에서는 청소년 활동 및 교육 등 청소년정책 사업 추진, 청소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로 나뉘져 있다고 답했다.

② 문제점

청소년육성 관련 부서의 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순환 근무로 인한 잦은 교체로 청소년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답변했다.

③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전담부서장 및 공공청소년시설의 운영책임자가 청소년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등 상위법에 따른 법적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정보합동평가 지표를 신설하는 등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운영현황

경주시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총 24명으로, 전문경력관은 2명이며 그 외 22명의 담당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전국 중 청소년 전담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②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청소년 전담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지만 전문경력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규직 공무원보다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임기가 정해져 있어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데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힘들다고 밝혔다.

③ 개선방안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하고, 공무원 직렬에 청소년직렬을 포함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으로 하여 업무의 지속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한다.

라. 청소년지도위원

① 운영현황

경주시는 현재 시 산하 23개 읍면동에서 구성된 전체 239명의 경주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23개 읍면동에서 각 10명 내외로 구성 된 경주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두고, 23개 읍면동에서 위원장을 각 1명씩 선출하여 경주시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를 상위 기관으로 두고 있다고 한다.

② 문제점

경주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육성과 관련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운영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다소 있는 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이·통장들의 참여로 인해 시민에게 홍보라거나 현장에서의 계도 등 유해환경을 저해하고 유익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어 청소년정책을 일선에서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한다.

③ 개선방안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70% 이상으로 하여 구성한다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경주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부 사업 매뉴얼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구성 기준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마. 청소년단체협의회

경주시는 현재 청소년단체협의회는 구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소년단체협의회가 미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예산과 전문가가 부족하고, 청소년단체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는 청소년단체가 작고, 전문가는 더욱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의 지원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한다.

바. 청소년육성기금

현재 경주시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을 미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상북도에는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쓰이는 기금이 있으나, 경주시에는 청소년에 대한 육성 기금을 따로 조성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아무래도 기금의 경우 통상 시의 출연금이나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여기에는 기관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금을 운영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청소년육성의 활발한 정책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중요성과 정책을 설파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사. 청소년 관련 시설

① 운영현황

경주시의 청소년 관련 시설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뉘는데, 공공시설은 수련원(화랑마을), 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 진로센터 등이고 민간시설에는 청소년 쉼터, 수련원, 유스호스텔이 현재 운영 중이라고 한다.

② 문제점

우선 양 기관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청소년지도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을 꼽았는데, 우선 공공시설(화랑마을, 수련관, 문화의 집, 진로센터 등)의 청소년지도사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신분 문제가 가장 크다고 꼽았다. 계약기간(임기)이 정해져있다 보니 장기적인 정책을 추구하기에 힘이 든다고 한다. 민간시설의 부족함으로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꼽았다.

③ 개선방안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개선방안으로는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인건비)이 늘어난다면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의 유입이 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재정 운영현황

가. 청소년정책 재정

① 운영현황

경주시의 청소년정책 사업비는 전체 65억원으로, 시설관리 및 인건비가 30억원이며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업비는 3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②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전체적인 청소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③ 개선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의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사업 및 청소년 시설·기관·단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청소년정책 예산과 교육 예산 비교

① 운영현황

현행으로는 교육부는 교육청으로 정책과 예산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② 문제점

이에 대한 문제점은 교육경비지원의 경우 학교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청소년시설에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이 교육장에게 예산을 교부할 경우 다양하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정해진 분야에만 예산을 써야하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이 다양해질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고 한다.

③ 개선방안

상위법을 개정하여 교육청에 교부되는 예산을 학교시설 및 청소년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다양하게 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청소년정책 매칭펀드

① 운영현황

국가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사업 및 사업비가 매칭사업으로 교부되고 있다고 한다.

② 문제점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사업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매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의 비율이 낮으면 지방 정부의 부담이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결국 청소년정책 사업은 축소되거나 생략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③ 개선방안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을 교육부의 학교 교육과 동등하게 인식한 후 청소년정책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국비) 확보와 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3) 지방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 효과성

가. 지방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효과

현재 경주시는 2명의 전문경력관을 제외하고는 해당 과의 모든 직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청소년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효과는 의도한 바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나. 지방 청소년정책의 재정투입이 시급한 영역

① 영역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비를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시설 확충에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답했다.

② 이유

학교 밖 청소년 등 정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도 상당하고, 방학 등 청소년 활동에 있어 학교가 전부가 아닌 것처럼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기관이 확충되어 여러 가지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려면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 기관장의 청소년정책 예산투입 의지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예산투입 의지는 다른 정책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낮다고 답변했다.

라. 기타 추진기반 강화방안

경주시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공무원 직렬에 추가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회복지사직렬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분야도 상당히 중요한데, 임기제 공무원이나 신규 공무원이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현장에서 철학과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사업과 청소년 시설·기관·단체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 및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4) 완주군 사례분석

(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성현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

① 운영현황

현재 완주군은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정책자문 및 심의 기능을 대신하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2016년부터 「완주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군수, 전문가 및 군민 등 20명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② 문제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문제점은 기관장(완주군수, 민간기관장, 공공기관 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발생 즉시 회의를 소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연 2회 정기회의로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20년부터 동 위원회의 실무위원회(6개 분과·각 분과별로 5명씩 구성)를 꾸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보강하여 청소년정책 제안·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③ 개선방안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실무협의회는 청소년정책을 제안(매년 약 10개정도의 정책제안) 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정책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상위법 및 조례에 따라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운영·관리에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관련 위원회·심의회·자문위원회 등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개선방안이라고 답변했다.

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① 운영현황

완주군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는 교육아동복지과 산하 아동청소년친화팀을 전담기구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아동청소년친화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청소년정책담당자(박사·임기제 공무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② 문제점

청소년정책은 현재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을 평가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전담기구 역할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한다. 청소년정책의 조정이나 평가업무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조직 개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친화팀의 팀장이나 담당자 등은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순환 근무로 인하여 청소년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③ 개선방안

㉞ 청소년정책 내부추진단 구성

완주군은 현재 청소년정책의 조정 및 평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완주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내에 내부추진단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추진단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㉟ 청소년전담공무원의 확충 및 전문성 확보

청소년전담공무원을 확충하거나 교육아동복지과장 혹은 아동청소년팀장이 바뀌게 된다면 청소년정책 및 관련 청소년 사업 등을 교육하여 정책 및 사업 이해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㊱ 청소년정책영향평가 실시

현재 완주군은 아동청소년정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정책영향평가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의 평가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답했다. 완주군은 4년마다 아동청소년영향평가의 조사 및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영향성을 측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운영현황

현재 완주군은 청소년정책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해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거나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② 문제점

그러나 군 전체의 청소년정책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기 때문에 과중한 행정업무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③ 개선방안

해당 부서 내에서 업무분장 조정과 추가적인 인력이 분배되어 완주군의 청소년정책이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 청소년지도위원

현재 완주군은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 사유로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거나 구성하지 않아도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마다 있어 청소년지도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자체로 네트워킹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청소년지도위원이 필요치 않다고 답했다.

마. 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협의회

완주군의 청소년단체는 1곳이라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② 문제점

완주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4개소인데 반하여 청소년단체협의회가 부재하고, 이는 다시 사업의 연대나 협력하는 사업에 대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물론 군청 전담부서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담당자별로 기존 사업 등에 대한 업무가 상당하여 신규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③ 개선방안

현재 완주군에 청소년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단체만을 위한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바. 청소년육성기금

완주군에서는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자체 재원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부분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사. 청소년 관련 시설

① 운영현황

완주군은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현황으로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청소년수련관,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센터 '고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② 문제점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수련시설 중심으로,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하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 다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일반 청소년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프로그램 수나 활동 등 제반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련시설마다 특색적인 사업은 없고 시설마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꼽았다.

③ 개선방안

㉞ 청소년시설에만 한정되어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수련시설의 경계를 허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즉, 도농복합도시인 특색을 살려 지역 폐교나 마을회관, 학교 운동장, 공터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시설로 확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방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욕구를 연결하여 청소년 활동이나 지원을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의견을 냈다.

㉟ 방과후아카데미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의회 등은 매년 청소년의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수련시설이나 청소년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한다. 가령 완주군은 청소년의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대상으로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심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㊱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학원을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공간이거나 청소년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운영규칙이나 규범이 많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답했다. 특히 완주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제약도 더불어 있는 바, 이를 위해 접근성을 지원하는 버스비 지원 사업이나 수련시설을 청소년에게 더 개방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재정 운영현황

가. 청소년정책 재정

① 운영현황

현재 완주군은 2021년 예산 약 7500억원 중 청소년예산은 3.4%인 258억원에 달한다고 답했다. 그 중 청소년정책에 쓰이는 재정은 국비 70억원 및 도비 41억원, 군비는 147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② 문제점

청소년정책의 대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지정하여 예산을 교부하고 지방에서 매칭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바, 중앙부처에서의 예산이 많으면 덩달아 지방정부의 부담도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정책은 국비 부담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③ 개선방안

따라서 중앙부처의 정책은 국비 부담을 늘리고, 지방정부의 특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비의 비율을 높이는 등으로 유연하고 탄력 있는 예산의 검토를 통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나. 청소년정책 예산과 교육 예산 비교

① 운영현황

완주군의 청소년정책 예산인 258억원 중 교육예산은 189억원에 달한다고 답변했다.

② 문제점

교육예산은 대부분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원활동이 학교 내에서 방과후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이거나 자치공간을 조성하는 비용에 쓰인다고 답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시설 등과 같은 방과후활동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 등이 청소년의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에서 한 지역에 몰려있는 양상을 띠고 있고, 이는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해당 지역에 접근 가능한 청소년들만 중복 이용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설이나 센터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보편적 복지가 어렵다는 단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③ 개선방안

이를 위해서는 각 센터 및 시설들의 기능과 역할, 사업과 예산 등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군청, 해당 기관장이 함께 논의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 청소년정책 매칭펀드

완주군은 현재 청소년정책에 대한 매칭펀드가 없는 실정이며, 청소년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자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특화사업을 위한 공모사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부처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개선방안이라고 한다.

(3) 지방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 효과성

가. 지방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효과

중앙부처(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면 지침에 따라 그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는데, 청소년정책의 초창기에는 지방정부마다 청소년정책과 지방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 적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top-down방식은 정책의 추진력이나 정문성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실행력은 높으나 예산의 비효율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고민 등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단체 등도 전문성이나 사업의 효과성 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준다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지방정부 주도의 청소년정책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나. 지방 청소년정책의 재정투입이 시급한 영역

청소년정책 영역은 확장되고 있는데 비해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인력은 확충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꼽았다.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청소년정책을 계획·운영한 후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일정시간이 지난 후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

또한 지방청소년정책은 일반 청소년 또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영역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보편적 정책으로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버스비 지원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학택시의 확대, 기존 청년공간으로만 사용되던 공간을 청소년공간으로 확장시키거나 청소년공간의 신설, 청소년진로체험의 확대,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확장의 일환으로서의 국제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하였다. 예컨대 청소년 관련 시설의 경우, 각각 다른 목적의 전용건물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 보다는 기 조성된 공간을 청소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것은 공공영역에서도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예산의 절감 등이라는 win-win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 기관장의 청소년정책 예산투입 의지

① 수준

민선 8기 완주군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경제도약과 인구확산 정책(일자리 및 청년정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실제로도 정책의 우선순위나 중점과제 논의도 기관장의 공약사항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② 이유

청소년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지만, 학부모나 시민 등이 청소년정책에 관심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납득할 때에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

라. 기타 추진기반 강화방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재단의 경우 청소년정책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완주군 같은 지방에서는 청소년재단과 같은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청소년단체별로 협력이나 연대가 어렵고, 공동의 계획수립이나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중간지원조직형태의 추진 전담기구가 생긴다면 청소년활동이나 시설들을 지원하고, 다른 정책과의 협력을 추진한다면 효과적인 사업 확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 외로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내용이 많아 업무가 과중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평가지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5) 부산진구 사례분석

(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성현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

부산진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 근거에 따라 구청장과 경찰서장, 교육장 당연직 3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상위법 및 조례 근거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위원회 개최가 현재까지 개최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① 운영현황

부산진구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로는 2020년 5월 청소년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기존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에서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및 평생교육과 청소년 팀으로 부서가 분리되었다고 한다.

② 문제점

청소년팀에는 팀장 1명을 포함한 총원 3명으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전무하다는 문제점을 꼽았다.

③ 개선방안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청소년 업무 수행 담당 인력에 대한 중앙부처(여성가족과)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전담부서의 유무(有無) 또는 조직 형태에 따라 인력 구성이 상이할 수는 있으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적정 담당자 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업무를 수행할 필수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운영현황

복지교육국 산하 평생교육과 청소년팀이 신설되었으나 전담공무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답했다.

② 문제점

전담기구는 있으나 구청 소속 직원 중 관련 자격 보유자(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인원이 1명 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 조정 등 부차적인 사안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특히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순환 근무라는 특성 때문에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③ 개선방안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우선은 전문직위제를 운영하여 관련 자격소지자 중 희망자를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자로 선발하여 청소년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관련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부서에 근무할 경우 동기 부여를 위한 수당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꼽았다.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특별 수당(3만원)처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를 개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라. 청소년지도위원

부산진구 청소년위원 운영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 보유자 및 유경험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위촉하며, 추천권자는 지역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동장, 경찰서장, 학교장 등이 추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위원현황은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300명이며, 주요역할은 청소년유해업소 점검 및 지역사회 캠페인 전개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원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지역현황을 아는 위원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마. 청소년단체협의회

부산진구의 청소년단체협의회는 경우 부산진구 소재 7개 청소년시설(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분기별 1회 개최를 하고 있으나 현안이 발생한다면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정책 및 현안에 대한 상호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 협의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선사항으로는 상담프로그램과 활동프로그램의 연계가 더욱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바. 청소년육성기금

현행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므로 현재 부산진구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할 수 있더라도 자체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 청소년 관련 시설

① 운영현황

부산진구의 청소년시설 현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부산진구 부전 청소년센터,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청소년복지시설 2개소(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진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 외 청소년 관련시설(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부산진구생활문화센터,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등) 등이 있다고 답했다.

위의 청소년시설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청소년단체 및 법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② 문제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서는 읍면동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운영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청소년활동 및 지원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은 확대되어야 하나 운영비 부담 등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확대가 어렵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③ 개선방안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에 대한 국비의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에 관한 국비 지원은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며,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 연간 운영비용은 약 2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재정 운영현황

가. 청소년정책 재정

① 운영현황

부산진구의 재정 운영 현황은 2021년도 전체 예산은 약 8,300억 원에 달하며, 그 중 청소년정책 예산은 160억 원을 차지하여 약 1.96%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 중 2020년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79억 원에서 2021년 160억으로 103.44%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답했다.

② 문제점

청소년정책 재정의 문제점은 해당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비율이 높아 청소년정책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③ 개선방안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일부 지원된다면 지방 정부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만으로 청소년사업을 확대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답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 사업 공모 및 국비 지원액을 증액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규모 및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청소년정책 예산과 교육 예산 비교

부산진구의 경우 청소년정책 예산에 교육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예산에 대한 판단이 사업성격등에 따라 변동이 커 적절한 답변이 힘들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지방재정 프로그램(e-호조)에 따르면 노인·청소년 예산이 같은 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청소년정책 예산만을 따로 구분하기 힘들어 파악하기가 힘들며, 부서에 따라 업무의 구분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한다. 예컨대 ‘청소년문화학교’라는 사업의 경우 이는 교육 사업인지 문화 사업인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분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다. 청소년정책 매칭펀드

① 운영현황

부산진구의 청소년정책 매칭펀드 운영현황으로, 청소년담당 소관 예산 20억 원 중 60%를 차지하는 약 12억 원이 매칭사업 예산으로 교부되었다.

② 문제점

기존 진행되던 사업의 경우도 매년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매칭사업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예측할 수 없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예컨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2021년도에는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구비의 부담이 없었으나 2021년의 경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라 1억3천만 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③ 개선방안

매칭사업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비의 부담비율 경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지방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 효과성

가. 지방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효과

청소년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추진 중인 청소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전담 부서인 청소년팀을 설치하여 각 부서 및 교육청, 산하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답했다. 이는 청소년정책의 영역 확장 및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나. 지방 청소년정책의 재정투입이 시급한 영역

① 영역

부산진구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② 이유

2022년 7월 8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에 따라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상한액이 기존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편성되었으나, 관련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러한 경우 대상자를 발굴하고 홍보해야 하지만 지원자가 예산보다 많을 경우 전체 지원액이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더불어 민원도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액의 확대는 예산 편성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 기관장의 청소년정책 예산투입 의지

① 수준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구 전체 청소년정책 분야 예산을 2020년 79억에서 2021년에는 160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고, 청소년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및 도서관 2개소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② 이유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

을 보장받음으로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라. 기타 추진기반 강화방안

청소년기는 정서적 불안과 내적 갈등을 겪는 시기로서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과 청소년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 확대에 보다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정책 추진 강화를 위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2. 정책제언

1. 결론

1) 연구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청소년사업 지원 재정에 대한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효율성과 요구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추진체계는 4단계 과정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며, 1단계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정책 추진기반에 관련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연구내용을 구성하였고, 2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기반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정 및 인프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며, 3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기반에 대한 우수사례와 226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주요조사내용은 추진체계 부분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 청소년지도위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육성기금 6대 항목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기반인 조례 및 청소년시설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정 부분에는 6대 추진체계를 지원하는 예산 지원내용으로 청소년예산의 구성비, 인프라 예산 규모, 6대 추진체계 예산, 중앙정부 매칭펀드 사업 예산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와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추진체계 부분

10) 제5장은 김영한(선임연구위원)과 이유진(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가 재정 부분에 대한 청소년실효성과 우선순위, 협업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배경 용인으로 담당자에 대한 배경변수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주요 독립 요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4단계에서는 위의 각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프라 구축 및 재정 지원 전략을 제시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분석 요약

설문조사는 재정자주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총 1달 간 조사를 진행하여 126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55.7%이다.

(1)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결과 요약

① 청소년육성위원회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율이 70.6%로 높으나 군 지역은 미설치가 58.5%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인원구성은 평균 14명 정도이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운영 조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서는 청소년의 참여가 광역시·도의 경우 87.5%로 높은 반면에 군 지역은 5.9%, 구지역은 28.6%, 시지역은 37.9%로 낮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참여기회가 없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연 1.3회 수준으로 매우 낮아 유명무실 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에서는 미설치 지방자치단체가 7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 보다는 재단과 같은 산하 기관을 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채용은 광역시·도는 37.5%, 기초자치단체 시는 47.2%, 기초자치단체 군은 36.6%, 기초자치단체 구는 39.0%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채용형태는 공무원(직제상 정원)이 84.3%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직 채용은 광역시·도의 경우가 33.3%로 비교적 높았다. 전담공무원의 청소년분야의 전문 역량에 있어서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등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비율이 58.8% 나타났으며, 특히 구 지역은 87.5%가 전문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분야의 전문성은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영역화를 이루는 데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청소년지도위원은 평균 57.9%로 높게 설치되어 있으나 광역시·도의 경우 12.5%로

매우 낮았다. 이는 청소년지도위원은 지역 내 전문자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역시·도의 경우 그 필요성이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운영은 평균 25.4회로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군 지역의 경우는 5.7회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주요 활동 내용은 청소년체험활동이나 교육지원분야가 아니라 주로 청소년보호나 복지 분야의 활동으로 보호선도나 생활지도 유해환경감시, 캠페인 등 구체적인 체험활동과는 거리가 있다.

⑤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운영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편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7.5%의 설립률을 보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단체나 조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내의 청소년단체와 연계필요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광역자치단체는 연 9회 정도로 자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이나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회원단체에 대한 협조나 지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⑥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청소년육성기금을 적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성 지방자치단체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이 75%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직접사업, 공모사업등의 필요성이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높은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는 일반회계를 통한 청소년사업 이상 정책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사용처에 있어서도 본래의 목적인 청소년육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교육경비 등으로 학교교육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소년육성기금에서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8.2%이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50%수준으로 나타나 기금이 사용에 있어서도 집행 조건을 청소년분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⑦ 기타 지방청소년시설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평균 4.6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담복지시설 1.7개소, 청소년진로센터 0.5개소, 성상담센터 0.2개소, 청소년지원재단 0.1개소, 청소년보호/자립시설 0.7개소 등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우선 추진됨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정책 재정 지원 및 운영 결과 요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예산 구성을 보면 조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대비 청소년예산은 1.9%, 청소년소관부서 예산 3.78% 수준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5.4%임을 볼 때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 예산 수립은 재정자립도와 청소년인구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은 평균 64,744백만 원으로 총예산 대비 4.5%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예산이 1.9%에 비교하여 볼 때 청소년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학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경비의 사용부분에 청소년부분을 일정부분 포함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③ 6대 추진체계별 운영 예산을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평균 2백6십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어 거의 예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경우 설치 운영지자체 사례를 보면 평균3십8억1천만 원으로 운영 예산이 큰 편에 해당하며, 상관관계 수에서도 재정자립도와 .41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청소년전담공무원 운영 예산은 평균1억9천7백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를 볼 때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의 예산 수준으로 볼 때 적절한 인력규모를 유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지도위원 예산은 평균 2억4백만 원,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예산은 3천만원 수준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은 11개 사례지역의 총액이 2022년기준 평균 3,598백만 원 정도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52억인데 반하여 기초자치단체 구 지역의 경우 6억 원 수준이다.

④ 정부지원 사업 예산은 청소년사업 총예산이 13,700백만 원대비 여성가족부 2,132백만 원, 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 예산 1,784백만 원, 자체부담 9,88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여성가족부 지원 15.6%, 광역자치단체지원 13%, 자부담 7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⑤ 매칭 펀드 사업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은 광역시·도는 12.5%, 기초자치단체 시는 16.7%, 기초자치단체 군은 9.8%, 기초자치단체 구는 2.4%가 매칭펀드 예산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재정자

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인 기초자치단체 군과 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투입예산 부담으로 인해 매칭펀드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되며, 이 결과는 지역 간 청소년정책서비스량과 질에 차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정부의 매칭펀드 지원 비율조정을 통한 형평성 유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변경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3) 추진체계의 정책 효과성

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실효성 조사 결과는 광역시·도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 조성률과 청소년육성 전담기공무원 확보가 정책실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공무원 확보와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설립이 정책실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②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 중요도 순위에서는 광역시·도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 조성률과 청소년육성 전담기공무원 확보, 기초자치단체 시, 구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확보와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설립이 높았고, 기초자치단체 군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립과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확보,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확보 순으로 정책실효성이 높게 나타났다.

③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정책에서는 광역시·도에서는 청소년 지도위원과 청소년 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기초자치단체 시, 구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 기초자치단체 군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대한 협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④ 지방자치단체내 청소년단체의 활동성에 있어서는 역시·도의 청소년단체 활동성이 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시, 기초자치단체 구, 기초자치단체 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다.

⑤ 재정투입이 시급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에서는 광역시·도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와 청소년 육성기금에 재정투입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시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확보와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립이, 기초자치단체 군에서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립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⑥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소년정책관련 예산 투입 의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 구의 예산 투입 의지가 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

도, 기초자치단체 시, 군은 모두 3.3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즉,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정책 수행에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측면으로 청소년전담공무원 제도나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청소년정책업무의 적극적 개발과 홍보가 중요한 과제로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우수사례 결과분석 요약

여성가족부 주관 ‘2021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방정부와 지역안배를 토대로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주시, 완주군, 부산진구 등 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사례 요약

① 대전광역시의 경우 특별하게 우수한 점으로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당사자인 청소년위원을 총 13명의 위원 중 4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30%에 달하는 위원 점유율 덕분에 대전광역시의 청소년정책은 중앙정부나 시청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청소년육성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하였다.

물론 위원들의 연령이 20세에서 24세의 분포율을 가진 것은 다소 아쉬우나, 추후에는 18세 이하의 청소년 위원도 위촉하여 전국 최초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한다.

② 경기도는 기존 진행하고 있던 무상교복 사업이나 무상급식 사업 외에도 생리대지원 사업이나 장학금 사업 등 선진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지원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살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 생리용품 보편 지원 등 기관장들의 꾸준한 청소년정책의 실현이 가장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청소년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 또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경주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하여 청소년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한 사례 중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총 24명으로, 가장 많은 공무원이 청소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4명의 인원 중 전문경력관은 2명이고 그 외의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공무원을 배치한 것은 기관장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주시의 앞으로의 청소년정책이 기대되는 바이다.

④ 완주군의 우수한 점은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정책영향평가는 군 조례의 개정 및 제정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향,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 나타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향, 사업의 사후 평가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하고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청소년정책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4년마다 아동청소년영향평가의 조사 및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인 부분을 조사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⑤ 부산진구의 경우 특히 기관장의 의지가 돋보였는데, 특히 구 전체 청소년정책 분야의 예산에 대해 2020년 예산 79억 원에서 2021년 예산 160억 원으로 약 두 배가 넘는 증액이 이루어졌다. 또한 청소년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및 도서관 2개소를 추가적으로 건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 사례분석의 시사점

①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 각 기관장이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현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회의를 소집하기 힘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책 개진보다는 기금운영에 대한 심의·의결에 그칠 뿐 실질적인 청소년정책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전문가가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②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전담 과를 신설하거나 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의 정책이 다양화되면서 그에 수반된 업무도 함께 늘어나 사례 조사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량에 비해 근무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여성가족부의 매칭 사업이나 자체 사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통상적인 정규직

공무원은 1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기간)가 정해져 있어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학생인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므로 청소년교육을 위한 팀의 신설 및 현재 전담부서의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고, 또한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정기 인사가 나서 청소년 담당 업무의 국장·과장·팀장이 변경 될 경우 청소년정책 및 관련 사업 등의 의무교육을 진행하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필수라는 의견도 있었다.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경우 청소년전담 공무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년 이상 청소년육성 관련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도 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담공무원은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특히 경주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전문경력관이 2명 있으나, 그를 제외하고 22명은 전부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중·장기 청소년육성 정책을 담당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육성 업무의 경우 격무로 인한 처우개선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지 않으니 기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통 사회복지업무의 경우 사회복지직렬의 공무원이 담당하면서 업무의 전문성과 사회복지 근무 수당 등의 합당한 대우 및 사회적 인식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청소년정책 업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업무의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되어 있어 행정직 신규 공무원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이는 다시 정책의 장기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첫째, 전문직위제를 운영하여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자로 선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이나 여성가족부 사업 가이드라인 등에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필수 조항을 넣어 개정하며, 둘째,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사회복지직렬처럼 청소년직렬을 추가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등 청소년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전담부서의 유무(有無) 또는 조직 형태에 따라 인력 구성이 상이할 수는 있으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적정 담당자 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면 업무를 수행할 필수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④ 청소년지도위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운영하는 곳과 운영하지 않는 곳으로 나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 사업이 주춤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만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기도 및 대전광역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의 사례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나 청소년전문가보다는 이·통장 및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지역 네트워킹이 뛰어나다 보니 청소년유익환경을 만드는데 일선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서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70% 이상으로 구성한다면 전문성이 도모될 것이나, 여기에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수반된다는 단점도 꼽았다.

⑤ 청소년단체협의회 관련해서는 각 사례별로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우선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시 산하 위탁시설들로 이루어진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고, 경기도의 경우도 내 청소년단체는 많으나 이해관계로 여여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정하지 못해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없다고 답했으며, 경주시와 완주군의 경우에는 예산과 청소년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단체가 없어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구 내 7개의 청소년시설 기관장이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1회 회의를 통해 상호 협의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⑥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측에서 설명을 잘 해주었다. 약 10여 년 전인 2010년대에 전국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조례에 따라 조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액을 보면 몇 십억 원에서 몇 백억 원 밖에 조성되지 않아, 이러한 금액은 실상 기관장의 의지로 일반 회계로 편성 가능한 금액이다 보니 점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현재 약 23억 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고, 2025년까지 청소년육성기금을 존치하기로 조례를 개정한 바 조성액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현재 180억 원 정도로 청소년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조성액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금 조성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경주시·완주군·부산진구의 경우 자체 재원의 부족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⑦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일관된 답변을 하였다. 즉,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비가 다소 지원되고는 있으나 청소년시설에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실상이다. 또한 통일된 청소년 시설 별 임금테이블이 부재하여 종사자 간 급여 차이가 나고, 이는 다시 잦은 이직으로 이루어져 사업의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운영비·인건비·시설의 유지보수비 등의 국비 지원이 필수이고, 종사자·유형별로 임금을 통일시켜 청소년시설 근무에 차등을 없애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냈다.

⑧ 청소년정책 재정에 관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중앙부처의 매칭 사업 위주로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늘리고, 중앙부처의 예산이 많으면 덩달아 지방정부의 부담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 부담 비율을 늘리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의 보조사업 범위를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사업 및 청소년 시설·기관·단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⑨ 청소년정책 예산과 교육 예산의 현황 비교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정책의 교육 부분 중 정규 교육 관련은 교육청에서, 그 외 청소년정책 업무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의 예산은 교육부에서 받는 예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는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청과의 예산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지원의 경우 사용처를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논의를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청소년정책에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교육 예산은 3조 506억 원이고 여기서 청소년예산은 851억 원으로 0.028%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 활동·보호·자립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의 꾸준한 확보 및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다.

⑩ 청소년정책 매칭펀드에 대해서는, 각 사례 모두 여성가족부와 매칭펀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청소년정책 사업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이는 청소년정책 사업은 축소되거나 생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으로는 국비 확보 및 사업 비율의 확대와 청소년 특화사업을 위한 공모사업 등을 신규 개설하고, 자체 조달인 시비

부족분에 대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교육청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조정하거나 청소년정책 재정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⑪ 지방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우선 대전 광역시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지시하는 청소년정책이 아닌 민간에서 주도하는 정책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한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청소년정책에 따라 일관적이고 꾸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경기도의 경우 자체 사업으로서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의 청소년정책 관련 자체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경주시의 경우는 2명의 전문경력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청소년정책을 위해서는 정규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완주군의 경우 청소년정책의 초창기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top-down 방식이 주를 이루어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단체 등도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실효성 있는 지방정부 주도의 청소년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팀을 설치했고, 각 부서 및 교육청, 산하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사업을 추진한 결과 청소년정책 영역의 확장 및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⑫ 지방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재정투입이 시급한 영역으로서, 정규 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들(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및 시청과 교육청의 중간 기관의 필요성, 지방의 특성에 따른 청소년 예산의 확대,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인력 확충 등을 꼽았다.

⑬ 기관장의 청소년정책 예산투입 의지 수준으로서, 기존 투표권이 없던 상태에서는 청년, 노인 등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는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조정되면서 청소년정책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존 청소년교육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2. 정책제언

1)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인프라 강화방안

(1)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 행정조직 구성

세부과제 1-1.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 행정조직 구성
기관장 참여 및 예산의 부족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청소년인 위원의 위촉과 청소년정책 전문가를 영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를 위해서는 전담 행정조직 구성 및 적절한 예산의 배치가 필수적임.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는 행정조직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기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경찰서장, 교육장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의 소집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며, 이러한 실효성 때문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하위 조직인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청소년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도 한다. 특히 동법 제5조의2에서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라는 제목 아래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조문을 지키는 사례는 광주광역시만 유일하였다.

조사결과에서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은 연 1.3회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자문과 심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이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낮았다. 또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설치수준도 36%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본래의 역할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경우 청소년정책 전문가가 부족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전문적인 정책을 내고자 한다면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전담 인력과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운영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청소년육성 전담 기구의 설치

세부과제 1-2. 청소년육성 전담 기구의 설치

청소년육성 전담 기구가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으나 청소년정책이 점차 세분화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하고,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청소년육성 전담 기구를 전담할 필요성이 있음.

청소년육성 전담 기구와 관련해서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방안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청소년 정책 전담조직의 설치 확대(관계부처합동, 2018: 78)를 강조했다. 따라서 사례들 대부분이 전반적으로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전담 과를 신설하거나 청소년 관련 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의 욕구와 사업이 다양화·고도화되면서 그에 수반된 업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량에 비해 근무하는 인원이 부족했다. 특히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통상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밖에 근무기간이 되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하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안감 및 중·장기적인 청소년정책의 수행이 어렵다는 각각의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교육을 위한 인원 보강과 전문경력관의 도입이 필요하며, 전문경력관으로 도입할 수 없다면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과장·팀장이 인사이동이 있을 시 청소년정책 및 관련 사업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여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확대

세부과제 1-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확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현재 전무하거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직위제의 도입과 청소년직렬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을 도입하여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경우 유일하게 경주시만 청소년정책 전문경력관을 2명을 두고 있다.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없고, 심지어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없는 대신 임기제 공무원으로 청소년육성 정책을 수행하

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았는데,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분상 문제로 인하여 정책의 장기화가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청소년정책의 경우 점차 청소년정책이 확대되고, 확장되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업무의 경우는 사회복지직렬의 공무원이 담당하면서 특수직무 수당도 받아가는 데 반해 청소년정책 업무의 경우 업무의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되어 있으니 일선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전문직위제를 운영하여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 담당자로 선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이나 여성가족부 사업 가이드라인 등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필수 요건을 추가하며, 둘째,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청소년직렬을 추가하여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인원을 확보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중·단기 청소년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지도위원 기능강화

세부과제 1-4. 청소년지도위원 기능강화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경우 지역 네트워킹에 뛰어난 이·통장이 주축으로 된 청소년지도위원이 많고, 시·도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하고 있지 않게 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청소년지도위원의 경우 사례들에서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로 나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만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이를 통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소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전문가가 부족한 부분이 단점으로 꼽히고,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은 부족하지만 지역 네트워킹이 뛰어난 이·통장 및 지역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일정부분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5)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및 기능강화

세부과제 1-5.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및 기능강화

청소년단체협의회는 경우 운영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청소년단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청소년단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는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1988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법인화되면서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후 지금까지 청소년현장,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제정, 청소년정책5개년계획 수립 등 많은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의 청소년단체와 청소년단체협의회는 그 규모와 기능이 많이 축소된 실정이다.

사례로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시 산하 위탁시설들로 이루어져 있어, 시책에 어긋나는 등의 청소년정책 의견을 내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내 청소년단체는 많지만, 너무 다양하다 보니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주시와 완주군의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가와 예산의 부족으로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없으며,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청소년시설 기관장이 모여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더 다양한 자체 사업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다.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잘 구성되어 운영되면 좋으나, 경기도처럼 너무 많은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해관계 때문에 협의회가 꾸려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 때문에 너무 많은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는 지역의 경우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주요 정책과 영역을 정해 별도로 구성한다면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고 민간에서 청소년정책이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6)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개선

세부과제 1-6.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개선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재원이 부족으로 설치조차 못하거나 설치이후 지속적인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장학금 등 청소년활동분야보다 교육분야에 더욱 활용되기도 함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운영에 어려움이 높은 반면에 광역시·도의 경우 설치 및 적립이 높기 때문에 운영 조례에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금(fund)은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예산제도이다(황윤원, 기노진, 1999).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부문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박종구, 1992).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 5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지원,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내 청소년에게 직접 수련활동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 비용을 위탁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현재는 없애는 추세이다. 기금 조성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충분히 배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 점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없애고 있다고 한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25년까지 유지한 후 조성액으로는 청소년 시설의 확충을, 경기도는 조성액을 포함하여 자체 사업을 진행 중이며, 경주시·완주군·부산진구의 경우에는 자체 재원의 부족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정책중요도와 정책실효성부분에서의 담당공무원의 응답에 따르면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세 번째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다만 청소년육성기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원 조달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육성기금의 구성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사업 추진수준에 맞추어 일정

부분 계속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적 여유와 더불어 자체사업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포함하는 조례제정 또는 개정이 요구되며, 특히 조례내용에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정책목표를 제언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반영해야한다.

또한 지금까지 보조금이나 양여금 또는 기금지원의 기준이 중앙정부의 경우 청소년인구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인구수에 지역청소년의 필수서비스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와의 형평성 있는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 개선

세부과제 1-7. 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 개선
청소년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인건비·관리비·운영비 등이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시설별·유형별로 종사자의 임금 차이를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기금 사업 내용에 인력부분을 추가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청소년 관련 시설에 경우에는 사례들 모두 일관된 답변을 하였다.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두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유지보수비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비가 다소 지원되고는 있으나 청소년시설에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등 운영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청소년시설별로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시설 종사자 간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다. 급여 차이로 인해 이직이 잦아지고, 이는 다시 청소년들의 혜택이 없어지거나 연기되는 불이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운영비·인건비·시설의 유지보수비 등 일정부분의 국비를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금의 재원지출에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예산의 지출에는 엄격하게 통제가 되지만, 기금은 기금운용관이 계획을 수립, 운용위원회 심의 및 자치단체장의 결재 후 의회 의결로 확정되고, 위탁관리의 행태를 취하기 때문에 재정적 책임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에 의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별·유형별 종사자 임금을 사회복지사 임금기준과 같이 청소년지도사 임금기준을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안정적 직업유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재정 강화방안

(1)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재정구조 개편

세부과제 2-1.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재정구조 개편
청소년정책은 대부분이 여성가족부와 매칭 펀드 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확보 사업을 결정하고 매칭펀드 사업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매치펀드비율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야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청소년정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조에 학교 밖 청소년정책사업을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함.

국고보조금의 매칭펀드 사업 방식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사무와 매우 밀접한관계가 있다. 이는 위임사무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무이며, 단체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사무로 볼 수 있다. 즉, 주로 외부 효과성에 한한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행정을 유지하거나 계획정비, 정부시책, 주민부담조정,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보조, 주민의 편의 향상 등이 실질적인 보조금 사업이 된다(김장기, 신윤창, 2008).

청소년사업의 경우에도 지역청소년의 부담을 낮추고 일정수준의 청소년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측면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낮아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매칭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지역 청소년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되어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간에 정책서비스의 차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칭펀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부담 기준에 대해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즉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많이 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칭 비율만큼의 일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있어서 국비 비율을 늘린다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국비 비율이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은 아예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다시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사업 및 청소년 시설·기관·단체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 제2조에 7호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체험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체험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사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교육청장과의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교육경비의 사용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일정 포함함으로써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 사례로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사업부분에 대한 보조를 교육경비에서 일정부분 지출토록 하여 지속적인 교육경비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사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협의와 필요한 조례의 내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정책 예산과 교육 예산의 비교

세부과제 2-2. 청소년정책 예산과 교육 예산의 활용 범위 확대 필요

지방정부의 경우 청소년정책분야에서 학교청소년 관련 사업이 많은 반면 예산은 부족하고, 교육청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 예산이 일정부분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정책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함.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정책의 교육 부분 중 정규 교육 관련은 교육청에서, 그 외 청소년정책 업무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의 경우 예산을 교육부에서 받는 예산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예산 두 종류로 나뉜다.

청소년정책 예산과 교육 예산의 비교에 있어서는, 광역시 및 도의 경우와 일반 시·군·구와 구별해서 봐야한다. 우선 광역시 및 도는 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와 경기도는 교육청과 시(도)청의 교류업무를 중점으로 꼽았다. 혹은 교육청을 시(도)청 산하로 편입시켜 청소년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과 시(도)청 청소년정책 담당 부서의 예산 수준 차이가 상당히 때문에

지방교육예산의 사용처를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교육사업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청소년정책분야에서 학교청소년 관련 사업이 많은 반면 예산은 부족하고, 교육청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 예산이 일정부분 확보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정책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사용처는 교직원인건비, 교육행정비, 학교시설비, 방과후 학교사업비, 학교운영비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교육수요가 산정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교육수요를 산정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지역별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결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교육재정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학교의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평생교육분야에도 차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류민정, 2013: 320).

(3) 청소년정책 매칭펀드 개선

세부과제 2-3. 청소년정책 매칭펀드 개선
청소년정책의 거의 모든 부분이 매칭펀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 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향후에는 교육청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여 예산을 분담하거나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재원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거의 모든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와의 매칭펀드로 이루어져 다. 특히 청소년정책 사업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이 높다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력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청소년정책 사업의 축소나 생략이 되기 때문에 국비의 비율을 높여달라는 것이 일관된 요청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사업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추진 방식을 세분화하여 추진해야 한다.

첫째는 정부의 핵심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육성 기본목표 사업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매칭펀드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같이 정부주도 기본추진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지역단위 특화형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중심으로 매칭펀드 비율을 조정하여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매칭펀드 비율 조정 기준이 요구된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적인 사업을 정하고 청소년육성기금 적립 등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기금 조례를 설치 운영해야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청소년 특화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을 수시로 신설하여 지방마다 특색 있는 특화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으로 재원을 확보 할수도 있을 것이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교육청 예산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사업으로 쓰거나, 청소년정책 재정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견 타당할 것이다.

3)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

(1) 지방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효과성 제고

세부과제 3-1. 지방청소년정책 추진 체계의 정책효과성 제고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정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효과가 더 클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6대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확보-청소년육성전담기구 설치-청소년육성기금 설치-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청소년지도위원 운영-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등으로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서 측면에서는 이제는 중앙부처에서 지시하는 청소년정책이 아닌 민간에서 주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청소년정책의 초창기 이루어졌던 top-down의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서의 발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지방청소년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처음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었겠지만 현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은 청소년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각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효과성을 위해서는 6대 추진체계별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구분되어 추진되어야한다.

첫째,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핵심추진체계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나타났 다. 이는 광역시·도는 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또는 양여금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직접추진사업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몇 개의 기초지방자

치단체를 연계하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이나 개별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 부담스러운 정책사업을 수행해야할 경우도 많으며, 필요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수행도 필요하다. 따라서 광역시·도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를 우선 설치를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중요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의 경우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확보가 가장 필요한 추진 체계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청소년정책이 전문성이 높은 영역으로 인해 일반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은 전담인력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공무원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상에 행정자치부와와의 협력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추진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청소년담당공무원을 별정직을 보는 것과 또는 계약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구의 경우는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가 가장 중요한 추진체제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자주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경우 대부분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역시와의 협력하여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사업이 매우 많은 편이다. 따라서 외부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수행할 기관이 우선정책으로 이루어지며 그 대안으로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대한 설치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있다.

기타사항으로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등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신청 받은 후 해당 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가령 완주군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서 청소년들의 이동권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청소년 버스비 지원이나 청소년 택시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정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춰 세밀화된 청소년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지방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재정투입 우선순위 개선

세부과제 3-2. 지방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재정투입 우선순위 개선

학교 교육 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 수립·지원과 청소년정책 예산의 확대,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함.

청소년정책 6대 추진체계에 대한 재정투입 우선순위는 전체적으로는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 확보, 청소년육성전담기구설치,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등 3대 추진체계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제적인 추진체계 운영에 있어서는 정책적 효과성이나 중요도, 시급성이 낮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청소년정책 추진체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설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필요하거나, 또는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전담인력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또는 부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설립 운영토록 해야 하며, 법인체는 가칭 ‘청소년육성재단’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전반적인 청소년정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일수록 그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공무원 부서이동으로 청소년담당부서의 경우 평균 1년을 재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무원 인력 확보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인력구성부분의 확대가 필요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정직으로 청소년전담부서에 채용되거나 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 경우도 정규일반직과 계약직으로 구분되며, 계약직의 경우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업무부서의 전문성 확보문제는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고려와 법률 확보체계가 동시에 고려되어야한다.

세 번째는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그 필요성과 중요도는 담당공무원의 경우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기금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교 교육과 같이 청소년육성정책이 명확한 필요성과 고유성에 대해 국민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서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운영 내용에 있어서도 그 운영 방향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청소년정책의 특색과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그 외에도 시급한 영역으로서 정규 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거기에 맞는 청소년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소년정책 예산투입 의지 제고

세부과제 3-3.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소년정책 예산투입 의지 제고
투표권이 18세로 하향되면서 기관장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예산 투입 의지가 높아졌으나, 아직까지는 청소년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청소년교육을 제외한 청소년활동정책에는 관심도가 낮은 상황임.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더 이상 청소년교육이 아닌 청소년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청소년정책5개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기존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던 상태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분야인 청년정책과 노인정책 등이 우세하였던 반면, 선거권이 18세로 하향조정 된 후부터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점차 우리 사회가 저출생·고령화 시대로 나아가면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세분화 되고 맞춤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청소년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청소년정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중앙정부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춘 시행계획을 매년 수행하도록하고 있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에 맞춘 청소년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 맞춤형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이 중앙정부와의 매칭펀드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고 지역의 고유한 청소년정책사업은 거의 유명무실한 측면이 높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청소년기본계획의 중요성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기본계획도 중요함을 인지하고, 현재의 청소년기본법령에 5년마다 수립하는 청소년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는 개정안을 포함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칭 ‘000 청소년정책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 조직 운영, 예산투입, 청소년기금의 투입 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서울: 관계부처합동.
- 김장기, 신윤창 (2008). 정부간 관계에서 본 매칭펀드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자치학회**, 22(2), 271-288.
- 김지경, 정윤미 (2013a).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예산의 결정 요인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1), 227-256.
- 김지경, 정윤미 (2013b). 재정분권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0(7), 123-147.
- 김학수 (20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KDI FOCUS**, 110, 1-8.
- 류민정 (20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지방정부연구**, 17(3), 315-334.
- 박성문 (2021).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5(2), 175-208.
- 박종구 (1992). 공공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재정논집**, 6, 211-282.
- 여성가족부 (2020). **202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원구환 (2006). **6대광역시의 지방재정분석: 예산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87-302.
- 유주영 (2021).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현황과 발전 방안. **청소년정책리포트**, 2021년도 제4호. 서울·세종: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윤태섭 (2015). **재정환경변화와 지방재정조정제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3-17.
- 최인재, 이윤주, 송민경, 조윤정 (2019).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윤원, 기노진 (1999). 우리나라 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논총**, 37(2), 223-253.

위키백과. “지방 정부.”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B%B0%A9_%EC%A0%95%EB%B6%80에서 2022년 5월 31일 인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https://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year=2022&ix_code=A110&reOrg=after에서 2022년 10월 17일 인출.

○ — 부 록

부 록

1. 설문조사 질문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설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지원체계와 청소년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답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질문지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기관

(주)엔알에스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답 답변 검증 및 답례품 발송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조사 당해연도(개인정보 파기 요청시 즉시 파기)

○ 응답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

② 동의하지 않음

SQ

다음은 응답기관 및 응답자의 기본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 또는 작성 바랍니다.

소속기관		① 17개 광역시·도 ()		② 기초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소속부서 (소속과/팀)		직위	_____ (직급 : 급)		
청소년업무담당 총 근무경력	년	연령	만 세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청소년인구수 (7월31일 기준)	명	재정 자주도	%	재정 자립도	%

A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성 현황

A1

귀 기관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A2번으로 이동)

관련 조례 유무	① 조례 제 호 ② 관련 조례 없음 (☞ A1-1번으로 이동)
-------------	---------------------------------------

A1-1

(A1에서 ①번 응답자만)

조례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시 청소년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A1-2

(A1에서 ①번 응답자만)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① 당연직 위원 (명)

② 위촉직 위원 (명) ☞ 청소년위원 수 (명)

A1-3

(A1에서 ①번 응답자만)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연간 몇 번 운영됩니까?
(회)

A1-4 (A1에서 ①번 응답자만)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시요.

☐ ① 심의 역할
 ☐ ② 자문 역할
 ☐ ③ 의결 역할

A2 귀 기관에는 청소년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 A3번으로 이동)

관련 조례 유무	☐ ① 조례 제 호 ☐ ② 관련 조례 없음 (☞ A2-1번으로 이동)
-------------	---

A2-1 (A2에서 ①번 응답자만)
 청소년육성 전담기구가 설치된 기관명은 어떻게 됩니까?

① 기관 내 조직/부서명	
② 재단 등의 설치 기관명	

A3 귀 기관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있습니까?

☐ ① 있음 (명) (☞ A3-1번으로 이동)
☐ ② 없음 (☞ A3-4번으로 이동)

A3-1 (A3에서 ①번 응답자만)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명은 어떻게 됩니까?

소속부서명	
-------	--

A3-2 (A3에서 ①번 응답자만)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채용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공무원(직제상 정원)
 ☐ ② 계약직(공무직 등)
 ☐ ③ 배치지도사

A3-3

(A3에서 ①번 응답자만)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청소년지도사 보유 ② 청소년상담사 보유 ③ 보유하고 있지 않음

A3-4

(A3에서 ②번 응답자만)

청소년정책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해당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① 있음 (부서명:) ② 없음 (겸임부서명:)

A4

귀 기관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위촉되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A5번으로 이동)

관련 조례
유무

- ① 조례 제 호
② 관련 조례 없음 (☞ A4-1번으로 이동)

A4-1

(A4에서 ①번 응답자만)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인원은 몇 명입니까? (명)

A4-2

(A4에서 ①번 응답자만)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연간 몇 번 활동합니까? (회)

A4-3

(A4에서 ①번 응답자만)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해주시요.

- ①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②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③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④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조성
⑤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⑥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⑦ 기타 ()

A5

귀 기관에는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A5-3번으로 이동)

관련 조례
유무① 조례 제 호
② 관련 조례 없음 (☞ A5-1번으로 이동)

A5-1

(A5에서 ①번 응답자만)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연간 몇 번 활동합니까? (회)

A5-2

(A5에서 ①번 응답자만)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주로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해주시시오.

① 회원단체가 하는 사업·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원② 국내 및 외국 청소년과의 협력 및
교류③ 청소년 관련 도서·간행물의 발간 및
홍보

④ 청소년 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⑤ 청소년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⑥ 우수회원단체·모범청소년 지도자 및
모범청소년 포상⑦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⑧ 기타 ()

A5-3

귀 기관에서 인가한 청소년단체협의회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단체협의회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A6

귀 기관에는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청소년육성기금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A7번으로 이동)

관련 조례
유무① 조례 제 호
② 관련 조례 없음 (☞ A6-1번으로 이동)

A6-1

(A6에서 ①번 응답자만)

청소년육성기금의 주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사용한적 없음(기금조성 만 함)
- ② 청소년 장학금
- ③ 청소년 활동 지원
- ④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 ⑤ 청소년 단체 및 시설 지원
- ⑥ 기타 ()

A7

다음 청소년 관련 시설별로 운영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A7-1. 시설현황	A7-2. 운영유형	
		직접 운영	위탁 운영
1. 청소년수련시설	개	개	개
2. 청소년상담복지시설	개	개	개
3. 청소년진로센터	개	개	개
4. 성상담센터	개	개	개
5. 청소년지원(운영)재단	개	개	개
6. 청소년보호/자립 시설	개	개	개
7. 기타 청소년관련 조직	개	개	개

B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재정 운영 현황

B1

귀 기관의 각 항목별 예산액 및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2022년 기준)

총예산(세출예산)	① 총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② 총예산 중 청소년 예산 비중	③ 총예산 중 청소년소관부서 예산 비중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100%	%	%	%

B2

귀 기관의 교육 예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2022년 기준)

()백만 원

B3

다음 청소년정책 관련 추진체계별로 운영예산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구분	B3-1. 운영예산	구분	B3-1. 운영예산
(A1에서 ①번 응답자만) 1. 청소년육성위원회	백만 원	(A2에서 ①번 응답자만) 2.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백만 원
(A3에서 ①번 응답자만)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백만 원	(A4에서 ①번 응답자만) 4. 청소년지도위원	백만 원
(A5에서 ①번 응답자만) 5. 청소년단체협의회	백만 원		
(A6에서 ①번 응답자만) 6. 청소년육성기금	초기조성액: 백만 원 추가조성액: 백만 원 2022년 총액: 백만 원		

B4

다음 청소년 관련 시설별로 운영지원예산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구분	B4-1. 운영지원예산	B4-2. 신규 시설 구축 예산
1. 청소년수련시설	백만 원	백만 원
2. 청소년상담복지시설	백만 원	백만 원
3. 청소년진로센터	백만 원	백만 원
4. 성상담센터	백만 원	백만 원
5. 청소년지원(운영)재단	백만 원	백만 원
6. 청소년보호/자립 시설	백만 원	백만 원
6. 기타 청소년 관련 조직()	백만 원	백만 원

B5

귀 기관의 청소년 사업 관련 지원받은 예산액 및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2022년 기준)

청소년 사업 총 예산	① 청소년사업 예산대비 여성가족부지원 예산 및 비중	② 청소년사업 예산대비 시·도지원 예산 및 비중	③ 청소년사업 예산대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분담 예산 및 비중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100%	%	%	%

B6

귀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예산 액수에 따라 비례로 지원) 형태로 시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 인프라 지원 예산이 있습니까?

① 있음 (☞ B6-1번으로 이동)

② 없음 (☞ C1번으로 이동)

B6-1

(B6에서 ①번 응답자만)

매칭펀드(예산 액수에 따라 비례로 지원) 형태로 시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 관련 인프라지원 예산, 사업 지원 예산, 운영지원 예산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관련 매칭펀드사업 예산 총액	① 인프라 구축지원 예산 및 비중	② 사업 지원 예산 및 비중	③ 운영지원 예산 및 비중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100%	%	%	%

C

지방청소년정책 추진 체계의 정책 효과성

C1

다음은 지방청소년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체계	C1-1. 정책 실효성					C1-2. 정책 중요도 우선 순위 선정	C1-3. 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업 정책추진여부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필요	불필요
1. 청소년육성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2.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4. 청소년지도위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5. 청소년단체협의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6. 청소년육성기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C2

지자체 내 청소년단체의 활동성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전혀 활발하지 않음	활발하지 않음	보통	활발	매우 활발
①	②	③	④	⑤

C3

지방청소년정책 추진체계별로 재정투입이 시급한 순서대로 나열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 ① 청소년육성위원회

②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 ④ 청소년지도위원

⑤ 청소년단체협의회

⑥ 청소년육성기금

C4

귀 기관장(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청소년정책 관련하여 예산 투입 의지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C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사례조사 질문지

작성일 : 2022년 월 일

ID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를 위한 사례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질문지는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지원체계와 청소년예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사례조사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모든 질문은 **2022년을 기준으로** 예산 및 정책추진체계에 관해 응답 부탁드립니다.

※ 응답해주신 분들에게 응답료 **100,000원**을 송금해 드립니다.

2022년 8월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응답자 정보는 오류 답변 확인을 위한 용도이니 반드시 기재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 | | |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 응답 답변 검증 및 답례품 발송 | - 조사 당해연도(개인정보 파기 요청시 즉시 파기) |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응답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등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

① 동의

② 동의하지 않음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SQ

다음은 응답기관 및 응답자의 기본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 또는 작성 바랍니다.

소속기관	① 17개 광역시·도 ()		② 기초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소속부서 (소속과/팀)		직위	_____ (직급 : 급)		
청소년업무담당 총 근무경력	년	연령	만 세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청소년인구수 (7월31일 기준)	명	재정 자주도	%	재정 자립도	%

A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성 현황

A1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현황, 지원형태, 구성절차 및 방법,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현황	
지원 형태	
구성 절차 및 방법	
개선 방안	

A2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자체부서운영구성, 별도운영 구성) 운영 현황, 지원형태, 구성절차 및 방법,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현황	
지원 형태	
구성 절차 및 방법	
개선 방안	

A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채용현황, 운영형태, 실질적인 전담공무원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채용 현황	
운영 형태	
필요 지원	

A4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현황, 지원형태, 구성절차 및 방법,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현황	
지원 형태	
구성 절차 및 방법	
개선 방안	

A5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현황, 지원형태, 구성절차 및 방법,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현황	
지원 형태	
구성 절차 및 방법	
개선 방안	

A6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현황, 주요사용처, 절차 및 방법,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현황	
사용처	
기금 운용 절차 및 방법	
개선 방안	

A7

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지원방식,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현황	
지원 방식	
개선 방안	

B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재정 운영 현황

B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예산의 구분, 효과적인 예산의 확보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현황	
예산의 구분	
효과 적인 예산 확보	
효과 적인 예산 지원	

B2

지방정부 교육지원 예산 현황, 주요사용처, 관여정도 및 청소년분야로 포함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현황	
주요 사용처	
관여도	
청소년부 분 포함 방안	

B3

청소년정책 매칭펀드 예산 현황, 주요매칭펀드사업, 매칭펀드사업의 효율성, 매칭펀드사업 운영에서의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현황	
주요 사업	
사업의 효율성	
개선 방안	

C

지방청소년정책 추진 체계의 정책 효과성

C1

6가지 지방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정책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 효과	
-------	--

C2

6가지 지방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중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재정투입이 시급한 영역에 대해 그 필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영역	
재정 투입이 시급한 영역	

C3

자치단체장의 청소년정책 예산투입 의지 및 청소년부분 정책추진 실적, 부족한 정책에 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투입 의지	
정책추진 내용	
부족한 정책 사유	

C4

그 밖에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내용과 지원 방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사례조사에 응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청소년사업 지원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욕구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형태의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현황의 경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율이 70.6%로 높았으나, 군 지역은 미설치가 58.5%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는 미설치 지방자치단체가 79.4%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광역시·도 37.5%, 기초자치단체 시 47.2%, 기초자치단체 군 36.6%, 기초자치단체 구 39.0%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청소년지도위원은 평균 57.9%로 높게 설치되어 있으나 광역시도의 경우 12.5%로 매우 낮았다.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운영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편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7.5%의 설립율을 보였다.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정책 재정 지원 및 운영 현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예산 구성을 보면 조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대비 청소년예산은 1.9%, 청소년소관부서 예산 3.78% 수준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5.4%임을 볼 때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은 평균 64,744백만 원으로 총예산 대비 4.5%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예산 1.9%에 비교하여 볼 때 청소년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학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 예산은 청소년사업 총예산이 13,700백만 원 대비 여성가족부 2,132백만 원,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1,784백만 원, 자체부담 9,88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도출된 핵심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인프라 강화방안으로는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담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적절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청소년정책이 점차 세분화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하고,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청소년육성 전담 기구를 전담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전문직 위제의 도입과 청소년직렬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을 도입하여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관련 시설의 경우 인건비·관리비·운영비 등이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재정 강화방안으로는 매칭펀드 사업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매칭펀드 비율을 조정하여 국비 부담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청소년정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학교 밖 청소년정책사업을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 지방정부, 청소년,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재정, 인프라

ABSTRACT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Local Government Youth Policy Promotion: Focusing on Finance and Infrastructure

This study identifies the status of the foundation for promoting youth polic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a fact-finding survey and suggest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lans to strengthen such foundation. It also presents a plan to secure finance in an active manner by analyzing the needs and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the financial resources for support youth projec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foundation for youth policy promotion, the installation rate of the youth development committee was high at 70.6% in all local governments, but the non-installation rate was high at 58.5% in counties (gun).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dedicated to youth development, the rate of local governments where such an organization is not installed was high at 79.4%.

The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s with public servants in charge of youth development policy is low at 37.5% i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47.2% in local self-governing cities, 36.6% in local self-governing counties (gun), and 39.0% in local self-governing districts (gu). The installation rate of the youth advisory committee was as high as 57.9% on average, but in the case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t was very low at 12.5%.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youth organization council, most local governments have not established this, and the establishment rate i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was 37.5%. Only 8.7% of local governments are raising and operating local youth development funds.

Second, in the case of financial support for and operation status of youth policies, analysis of the budget composition of local government by the item revealed that the youth budget compared to the total budget of local governments in the surveyed area was 1.9%, and the budget of youth departments was 3.78%; it is very lacking considering that the social welfare budget accounted for 35.4%. The average education budget of local governments was KRW 64,744 million, which is 4.5% of the total budget. Comparing this to the youth budget of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only for 1.9%, the investment of local governments in the youth sector is expanding, primarily focusing on schools. Of the total budget of KRW 13,700 million for government-supported youth projects, KRW 2,132 million was from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RW 1,784 million was from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KRW 9,887 million was paid by the local governments.

The key policy recommendations derived from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measure to strengthen the infrastructure for promoting local government youth policy, a dedic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and an appropriate amount of budget allocated to vitalize the operation of local youth development committees. As youth policies are gradually subdivided and advance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manpower and have full-time public officials dedicated to youth development organizations with professional experience. Treatment should be improved by implementing a

professional position system for public officials dedicated to youth development policies and introduce special job allowances for youth policy-related positions. In the case of youth-related facilities, the burden on local government is gradually increasing since labor, management, operation costs, and other expenses are not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hence,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youth development fund is needed. Second, as a method to strengthen the finances for local government youth policies, for the matching fund project, the government should pay a larger portion of the fund while reducing the burden of local governments by adjusting the matching fund ratio based on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It is also necessary to amend Article 3 of the “Regulations on Subsidies for Educational Expenses of Local Governments” to include out-of-school youth policy projects so that these subsidies can be used not only for projects improving school education conditions pursuant to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but also for related youth policies.

Keywords: Local government, Youth, Youth policy, Foundation for promotion, Finance, Infrastructure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황여정·임희진·오승근
연구보고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연구보고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연구보고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연구보고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연구보고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연구보고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연구보고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연구보고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연구보고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연구보고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연구보고22-일반03-01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지연·백해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
박광욱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김지연·백해정·김미향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
박환보·최종학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박광욱·이기연·이복실·안예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 홍성호·장수명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욱·오욱찬·조양진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연구보고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연구보고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연구보고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연구보고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 연구보고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 연구보고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 연구보고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워크숍 〉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포럼〉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콜로키움〉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기타 자료 집〉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70호 디지털 성범죄
- 71호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73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김 규 리 (김해시 의회사무국 · 입법정책 주무관)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02) 2273-1775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54-1 93330

연구보고 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54-1